

---

## 2014년도 시설장대외 및 정기총회

---

2014. 2. 26.(수) ~ 27.(목)  
서울올림픽파크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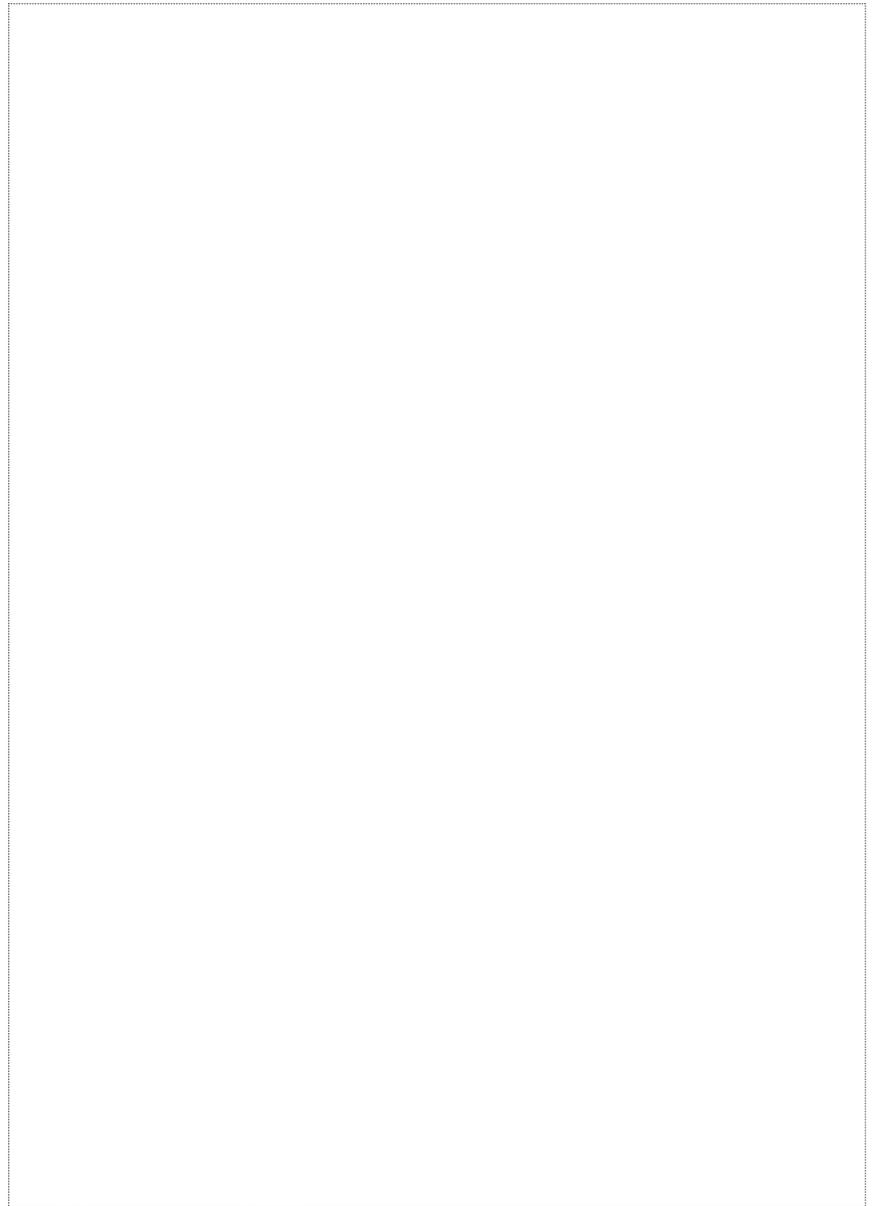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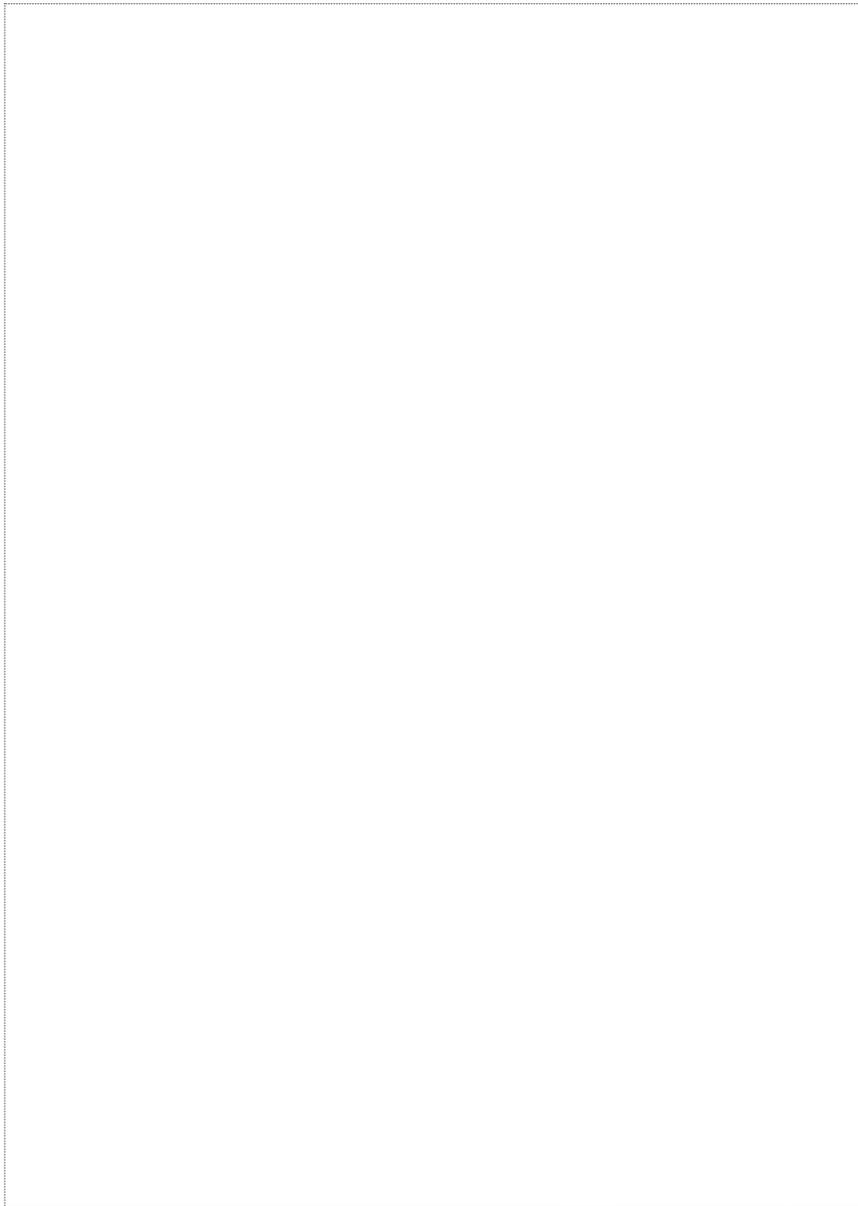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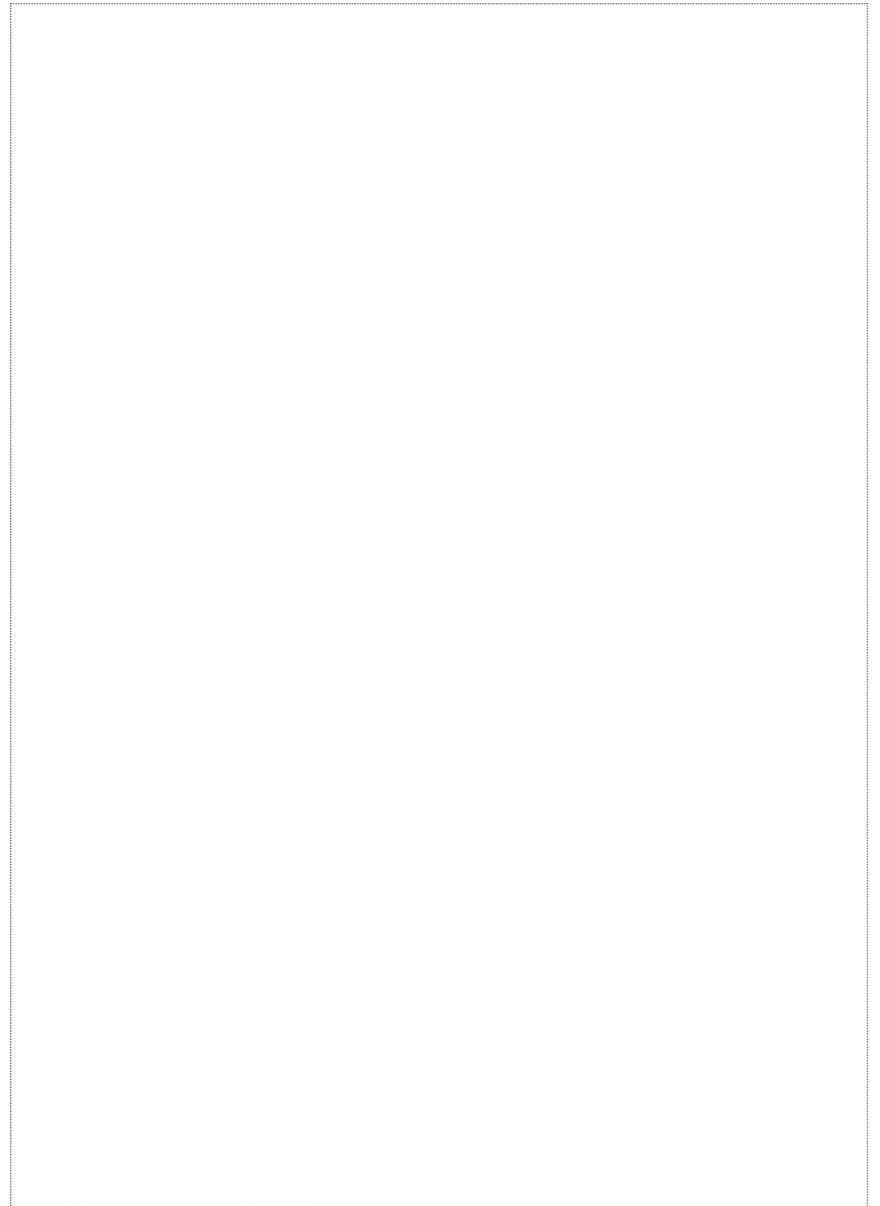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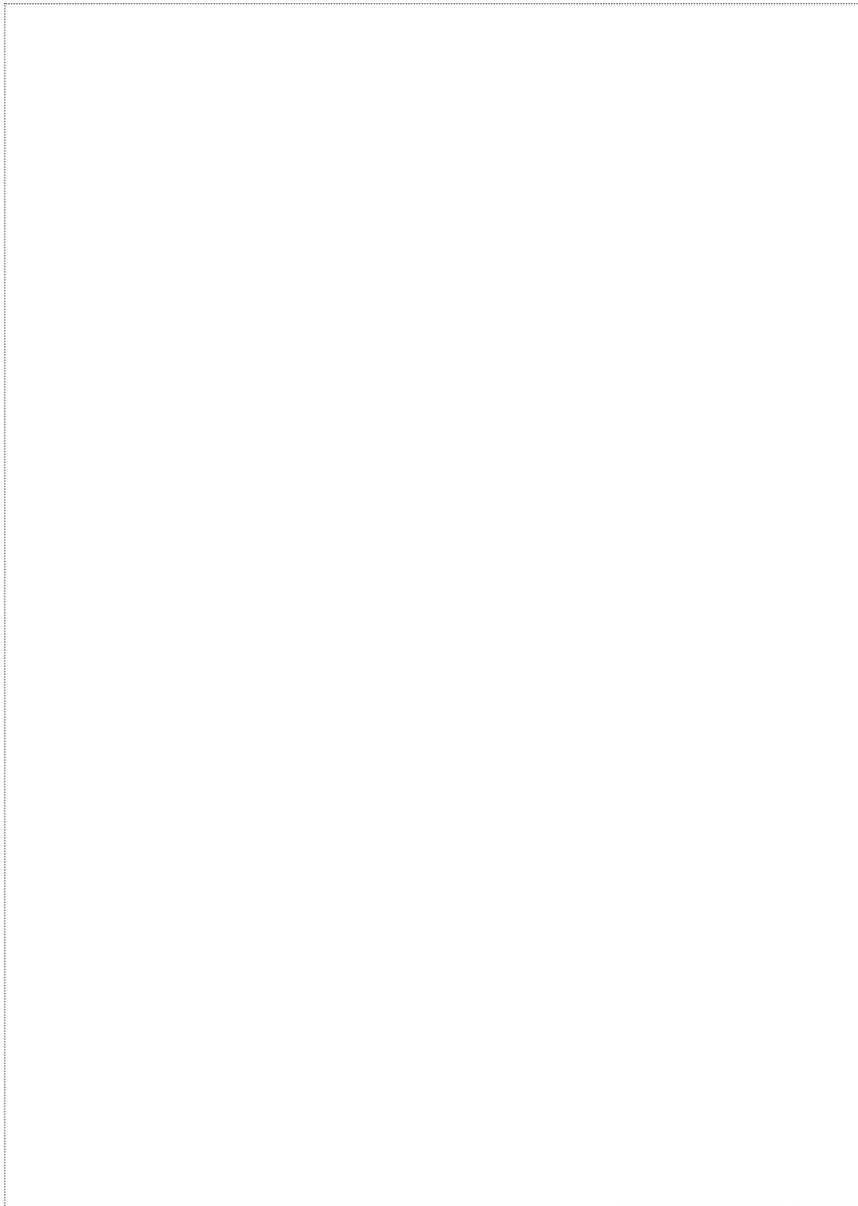
- 2014년도 시설장대회 및 정기총회 일정표 .....
- [정책설명] 2014년도 장애인복지정책 방향 .....
-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
  
- 2014년도 사)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시설장대회
  - ◇ 세션1) 한국 사회복지법인의 역사와 미래전망 .....
  - ◇ 세션2) 음악이 있는 하루 .....
  - ◇ 세션3) 소통과 공감의 유니버설 디자인 .....
  
- 2014년도 사)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기총회
  - ◇ 전차회의록 처리 .....
  - ◇ 감사보고 .....
  - ◇ 부의 안건 심의 .....
  - 제1호 의안 : 2013년도 사업평가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 제2호 의안 :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관한 사항 .....
  - 제3호 의안 : 정관 개정(안)에 관한 사항 .....
  - ◇ 보고사항 .....
  - 보고 1. 제규정 변경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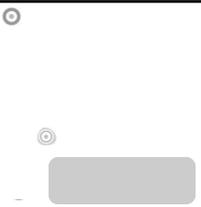
**2014년도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시설장대회 및 정기총회 일정표**

일 자	시 간	내 용	비 고
2. 26 (수)	14:00~14:30	접수 및 등록	- 부대행사 : 인권지킴이단 홍보물 전시
	14:30~14:50	개회식	- 개회사 : 임성현 협회장 - 축 사 : 보건복지부 국장 - 격려사 : 국회의원 1~2명
	14:50~15:20	보건복지부장관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5명
		국회보건복지위원회장상 표창	- 국회보건복지위원회장 표창 12명
		공로패	- 2013년 정년퇴임한 시설장 공로패
	15:20~16:00	보건복지부 정책 설명	- 2014년 보건복지부 정책 설명
	16:00~16:30	정책 설명	- 성년후견제도의 이해
	16:40~18:00	세션1) 한국 사회복지법인의 역사와 미래전망 (발표 : 김진우 교수)	
18:00~	석 식 (2층 아리랑)		
2. 27 (목)	08:00~08:50	시설장 대회	조 식 (1층 커피숍)
	08:50~09:30		세션2) 음악이 있는 하루 (발표 : 우광혁 교수)
	09:30~10:30		세션3) 소통과 공감의 유니버설 디자인 (발표 : 전미자 교수)
	10:40~11:30	정기총회	- 감사보고 - 1호 의안) 2013년 사업보고 및 결산 - 2호 의안)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 - 3호 의안) 정관 개정(안) - 보고사항
11:30~13:00	중식 (2층 아리랑) 후 귀가		



측사





2014년도 장애인복지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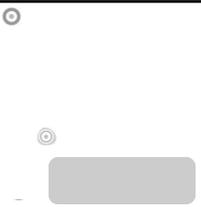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송인수 사무관

**M E M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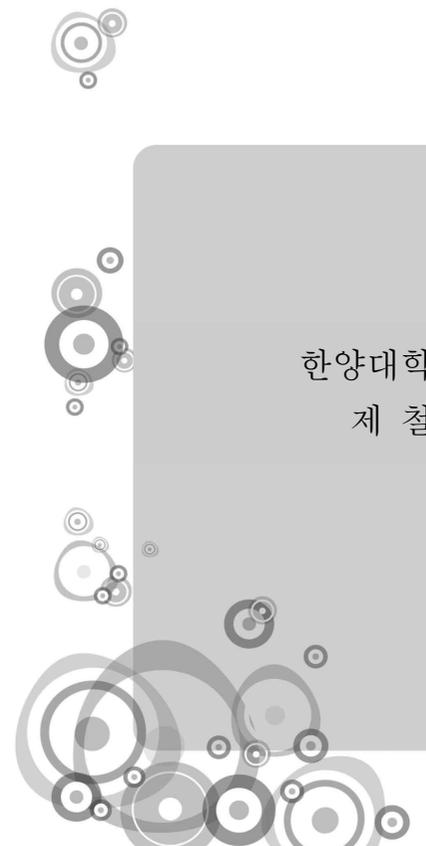


**M E M O**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한양대학교 법학대학  
제철웅 교수

##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

### Contents

- |  |   |  |
|--|---|--|
| <p><b>I</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인가?</li> <li>2. 후견제도의 유형</li> <li>3. 성년후견의 각 유형별 장단점</li> <li>4. 발달장애인과 후견 유형</li> <li>5. 후견유형별로 적합한 후견인</li> <li>6.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유형</li> </ol> | <p><b>II</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후견인 선임까지의 절차</li> <li>2. 후견인 선임까지의 중앙지원단 역할</li> </ol> | <p><b>III</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후견이 왜 필요한가?</li> <li>2. 후견은 사실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li> </ol> |
|--|---|--|

### I. 후견제도의 개관

1.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인가?
2. 후견제도의 유형
3. 성년후견의 각 유형별 장단점
4. 발달장애인에게 어떤 후견유형이 필요한가?
5. 후견유형별로 적당한 후견인?
6.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 유형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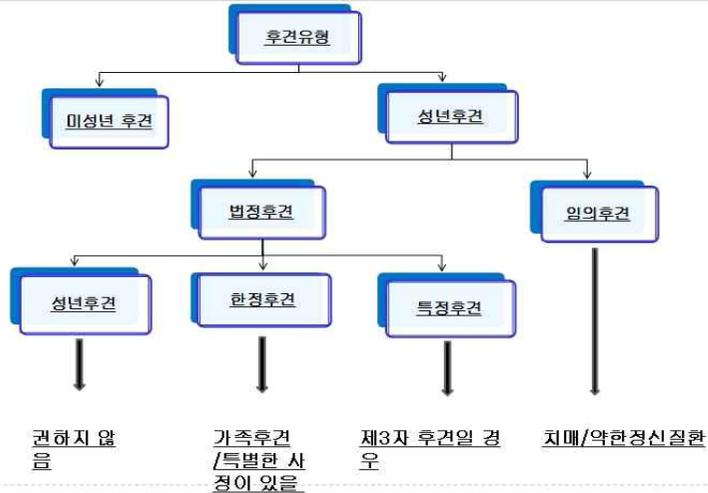
### 1.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인가?

- ◆ 발달장애, 치매, 정신질환, 뇌사고 등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후견입니다. 의사결정능력 장애로 인해 재산관리나 신상보호 등의 사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 후견인은 그 사무처리를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 ◆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월체어가 있으면 스스로 이동할 수 있듯이,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에게 후견인이 있으면 지역 사회에서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 후견인의 활동방식과 후견의 목표 】**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대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후견인의 활동방식입니다.

후견인의 기본적 활동목표는 피후견인이 주위로부터 확대·방임이나 경제적·정신적·신체적·성적으로 착취나 희생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피후견인 주위에 안전망을 형성해 주거나, 피후견인에게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손해를 배우는 일도 합니다.

## 2. 후견제도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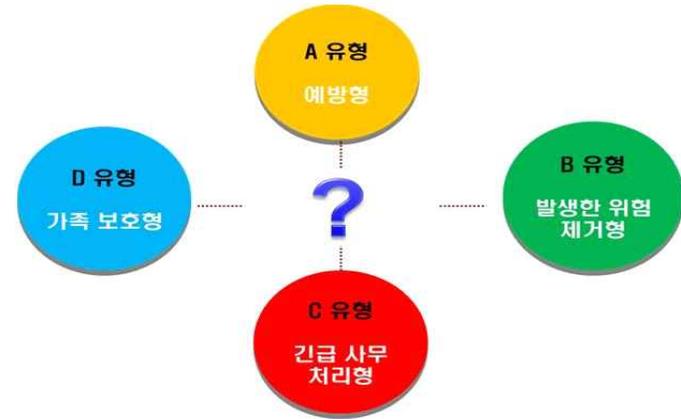


## 3. 성년후견의 각 후견유형별 장단점

- 성년후견**
  - 후견인의 권한이 너무 큼
  - 피 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정도도 크기 때문에 피해야 함
- 한정후견**
  - 지속적 후견
  - 발달장애인의 경우 사망 이외에는 종료 불가능
  - 가족후견이 아닌 경우는 가급적 피하도록 할 것
- 특정후견**
  - 일시적(2년, 3년 길어도 5년)인 후견
  - 기간 경과로 자동적으로 후견이 종료. 갱신은 가능
  - 시민공공후견인의 활동에 적합함



## 4. 후견 필요성과 중앙지원단의 활동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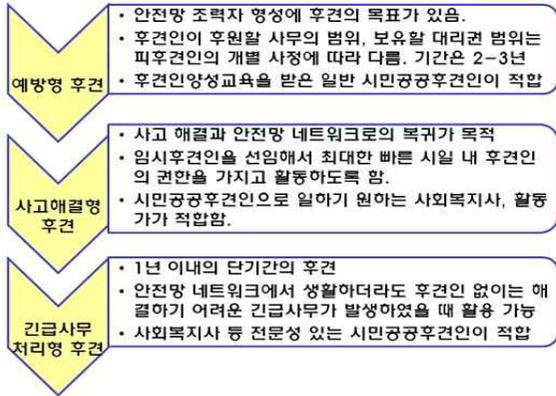


## 5. 후견유형별로 적당한 후견인은 누구일까요?

- 가족 - 주로 D유형
- 시민공공후견인 - A유형
- 시민공공후견인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사회복지사 등 - B유형 또는 C유형

◆ 그러나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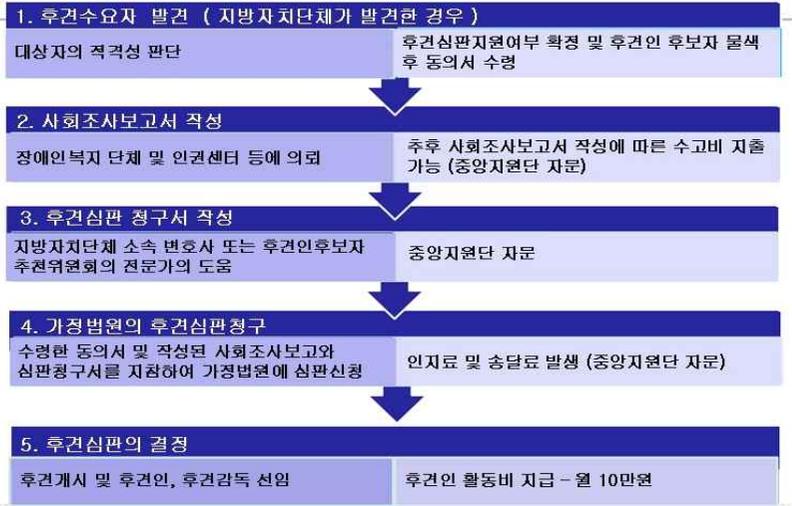
## 6.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유형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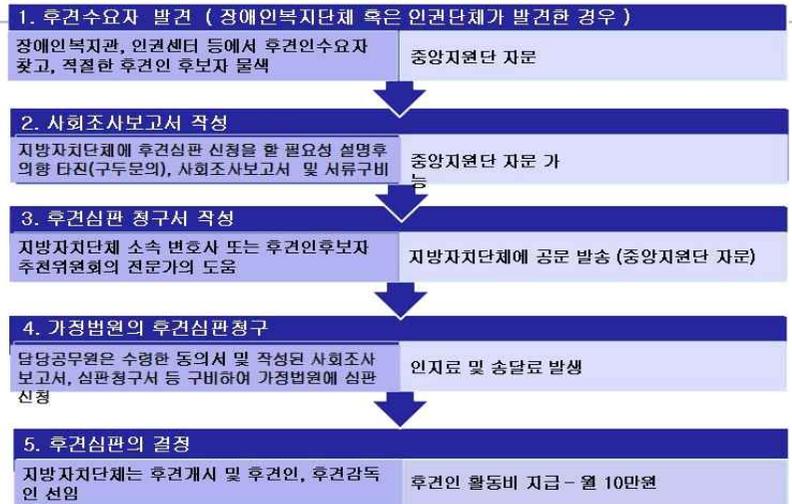
## II. 후견심판청구와 중앙지원단

1. 후견인 선임까지 절차
2. 후견인 선임까지 중앙지원단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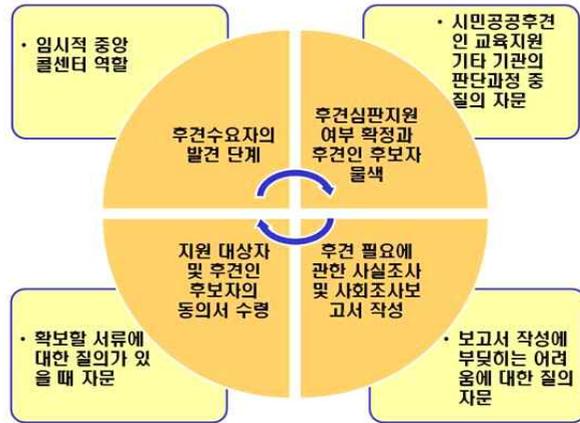
### 1-1. 후견인 선임의 절차 - 지방자치단체가 발견한 경우



### 1-2. 후견인 선임의 절차 - 장애인복지단체 혹은 인권단체가 발견한 경우



## 2. 후견인 선임까지의 증양지원단 역할



## III. 장애인 거주 시설과 후견제도

1. 국내외 동향
2. 후견은 시설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

## 1. 국내외 동향

선진국	헝가리는 그 동안 장애인을 대규모 수용 시설에 입소시켜 왔었는데, 최근 유럽연합의 재정지원을 받아 그룹홈(8인에서 12인), 거주 시설(최대 25인)로 분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유럽의 유명한 정신적 장애인 권리옹호 센터(Mental Disability Advocacy Centre)는 지역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형태의 시설은 그것이 그룹홈이라 하더라도 반대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호주는 시민을 양성해서 시설조사자(Visitors)역할을 맡김/미국은 P&A 기관이 있음.
일본	거주 시설이나 그룹홈에 있는 무연고자, 가족돌봄이 약한 거주자를 위해 가령 거주자 10명당 1명의 후견인을 선임해서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여러가지 어려움을 돌보아 주고 있음.
우리나라	- 거주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는 자주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음. - 거주 시설 측에서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정도의 개방용직임을 보여주지는 않음. - P & A 기관을 지정하여 시설에 접근한, 광범위한 조사 경우 반영하려는 운동이 있음.

## 2. 후견은 시설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

### 사회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음.

- 자기 정화노력이란 시스템 구축 없이는 불가능하고, 그 시스템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관여하는 구조 보장 없이는 마련될 수 없음.

시설 거주 장애인을 위한 후견인은 재가 장애인을 위한 후견과 다른 기능을 수행할 것임.

- 서비스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대칭관계에서의 균형자 역할

- 시설의 협력자로서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역할

- 거주자에게 합법적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위법요소의 불식

- 자립생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신뢰도 향상

후견을 통해 시설과 거주자가 Win-Win 할 수 있는 모델개발이 필요

- 한국형의 신뢰할 수 있는 거주 시설 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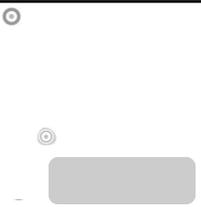
- 시설에 대한 신뢰도 향상은 시설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지원으로 이어질 것임.

---

# 감사합니다.

중앙지원단 연락처: 02) 2220-4241/4249  
이 메 일: support4241@hanmail.net  
페이스북: [www.facebook.com/adultguardian](http://www.facebook.com/adultguardian)

---



2014년도 시설장대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세션 1

# 한국 사회복지법인의 역사와 미래전망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우 교수

# 한국 사회복지법인의 역사와 미래전망

## 1. 경험, 그 사실과 진실 사이 그 어디쯤...

오랜만에 정권을 교체하고 집권한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어느 봄날 ‘국민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였다. 생중계하는 TV의 화면은 연신 바쁘게 움직였다. 이때 어떤 장애인 한 분이 손을 번쩍 들어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에바다 사건이 1996년말 언론에 보도되었음에도 그 해결이 지지부진한 안타까움을 대통령에게 호소한 것이다. 대통령은 ‘진상을 파악해 보고 조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필자는 주섬주섬 옷을 입고 사무실로 달려 나갔다.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 이미 알기에.... 그 사무실이라고 하는 곳이 보건복지부였다. 처음 발령받고 맡은 업무가 - 물론 그것만은 아니지만 - 경기도 평택의 에바다농아원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에 따른 후속조치였다. 도착하자마자 자료작성에 착수하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렸다. 내일 장관님께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라는...

그 때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면서 끊임없이 내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질문이 있었다. ‘사회복지법인은 해방이후 고생을 한 주체인가, 개혁을 해야 하는 대상인가?’ 지금도 분명하게 답을 내리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 둘의 성격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신뢰에 대한 회의( )’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약한 정부지원에 대한 미안함’이 함께 묻어 있다.

설마 에바다농아원만이였을까... 그 뒤로도 굵직굵직하게 신문과 언론의 앞뒤를 장식했던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인화학교 비리, 성람재단 비리, 석암재단 비리 등이 잇달아 드러났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역사적으로 그 간에 쏟아 부었던 희생의 시간과 현재의 비리간의 간극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엄격한 각종 법령과 규정에 얽매어 신명나게 복지사업의 장판을 벌이지도 못하고 그냥 묵묵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대다수의 사회복지법인과 비리의 온상으로 드러난 소수의 사회복지법인, 이 양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들에 대한 양가감정을 어떻게 털어내야 하는지, 그 고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이 고민을 풀

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도단체’ 사회복지법인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밝혀야, 그렇게 제도를 신설한 정부의 의도를 알아야 지금의 사회복지법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때문이다. 제도 신설 이후 역사적 과정에서 그리고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 사회복지법인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향후 우리 사회의 변화흐름에 비추어 볼 때 어떻게 그 역할이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래야만 오랜 시간동안 가져온 그 양가감정이 풀릴 것 같다 때문이다.

## 2. 『사회복지법인』 제도를 왜 만들었을까?

### 1) 이해의 필요성

사회복지법인은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업 전달체계로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보건복지부(2013)에 따르면 2011년 12월 기준 사회복지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시설법인이 1,475개, 동 사업을 지원하는 지원법인이 173개로서 총 1,648개에 이른다. 의료법인, 대학법인, 종교법인 등 다른 비영리법인들도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이지만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만 사회복지사업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복지행정에서 사회복지법인이 갖는 비중과 역할은 매우 크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7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을 통해서이다. 그 전에는 구호사업이라고 불렀던 사회복지사업을 민법상의 재단법인이나 개인이 수행해 오고 있었으나, 법 제정 이후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해 오던 민법상의 재단법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인정되었다<sup>1)</sup>.

이후 사회복지법인은 그 수가 늘어나고 사회복지사업 수행에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사회적 동의와 공감대의 폭이 매우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 전달체계 내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 아닌 가라는 논리가 아니라 역으로 ‘왜 기존의 민법상의 재단법인이 아니라 새롭게 사회복지법인

1)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부칙 제2항에서는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한국사회복지연합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라는 틀이 필요했던 것일까?’에 대한 질문은 현재적 시점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그러한 제도 도입의 배경이 탐색되어야 이후 그 제도가 어떠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 및 법인의 자생적인 속성에 의해 변화되어져 왔고, 또 현재의 사회복지법인의 모습,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정책기조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관련 학술적 분석에의 기초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사회복지사업 수행 근거

### (1) 후생시설설치기준 및 「후생시설운영요령」

한국전쟁 발발 이후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동년 10월에 한·미상호방호조약이 체결됨으로써 한미 양국은 단순한 양자관계를 넘어 동맹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어 체결된 1954년 11월의 「한미 합의의사록」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UN군 사령관에게 계속 귀속시키는 대신 한국에 대한 대규모 군사 및 경제원조 제공을 약속하였고 그 일환으로 「농업교역발전 및 원조법(PL 480)」에 의거 지원된 미국의 자금은 당시 한국 정부지출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였다(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2008: 4).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해방 후 급격히 증가한 고아 등을 수용·보호하는 시설 및 구호시설의 운영과 지도감독을 위한 준칙으로 1950년 5월 「후생시설설치기준」공포했으며 한국전쟁 발발 이후 전쟁고아 수용시설을 비롯한 전란으로 인해 혼란상태에 빠진 기존 구호시설의 운영과 지도감독을 위해 1952년 10월 4일자로 「후생시설운영요령」을 제정한 바 있다(구자현, 196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2: 91에서 재인용).

「후생시설설치기준」에 따르면 “국가·특별시·도·시·읍·면 이외의 자가 후생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재단법인 설립을 필한 뒤에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수용자의 수는 최소한 15명 이상의 수용능력이 있어야 하며 상시 수용인원이 30명을 넘도록 하였다. 시설 책임자는 사회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라야 하며 부모·교사는 상당한 자격자를 채용토록 규정하였는데 부모는 유아(乳兒) 5명당 1명, 유아(幼兒) 10명당 1명, 학령아동 이상 15인 내지 20인당 1명이 전담토록 하고 있다.

「후생시설운영요령」에서도 단순히 운영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설치와 관련된 사항도 기술하고 있다. 즉, “후생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국가 및 특별시 또는 도 이외의 자로서 후생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읍·면의 직영시설을 제외하고는 재단법인 설립을 필한 후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후생시설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시·읍·면이 경영하는 시설은

재단법인의 설립은 요하지 않으나 후생시설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후생시설의 설치에 재단법인 설립 후 시도지사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특별시 또는 도는 후생시설 설치인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곧 후생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의 각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조사하고 후생시설상황조사서를 작성 심사한 후 그 시설이 운영 및 수용자 보호상 충분히 안전할 때에 한하여 그 조사와 함께 신청서를 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게”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제7조에서는 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후생시설을 인가한 후에는 곧 인가완료보고서를 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는 사회부장관이 설치 전에는 사전 승인 여부를 통해서 개입하고 있었고 인가완료 후에도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행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구비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격 주체로서의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사회부장관의 개입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구호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면서 당해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적 개입이 가능하지만 운영책임을 사회부장관이 재단법인에게 물을 수 없어 행정집행 및 감독이 분절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 (2) 1958년 논의법률안과 1970년 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정배경을 다루고 있는 대다수의 선행연구(이상용, 2003; 남찬섭, 2006; 심재진, 2011)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제도 신설 논의의 최초 시발점을 1966년 김성철 제출법률안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0년사에서 김성철 제출법률안 이전에 사회복지법인 제도 신설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이 시도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2). 당시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전신인 한국사회사업연합회가 1955년 사회복지 전문지인 『사회복지』 창간사에서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기틀이 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고, 1958년에 보건사회부가 한국 최초로 성안된 사회복지사업법안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보건사회부 사회과가 주도하여 동 법안을 구성하고 법제실<sup>2)</sup>에 회부되었으나 제3대 국회가 종막을 내림에 따라 공포시행을 보지는 못했다.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2) 현재의 법제처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1실 3국 10과와 도서관으로 발족한데서 연유된다. 1954년 11월 29일 헌법 개정으로 국무총리제가 폐지됨에 따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는 법무부 법제실(장관급 기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60년 내각 책임제가 실시되어 국무원 사무처가 신설됨에 따라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으로 개편된 바 있다. 이는 1962년 12월 26일 헌법개정으로 대통령 중심제가 실시되어 법제처는 다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제정 이슈가 다시 제기된 것은 1966년이다. 1960년대 초반에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의 초안을 만들었는데 이를 정부안으로 하면 오랜 시일이 소요되므로 당시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성철 의원의 안으로 1966년 12월 5일에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제6대 국회말이 임박했고 다양한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제6대 국회의원 임기말로 자동폐기 되었다가 1968년 제7대 국회에서 보건사회위원회 소속의 윤인식 의원이 종전 법률안을 일부 손질해서 1968년 6월 26일자로 제안하여 법 제정으로 연결되기에 이른 것이다(오정근, 1969: 79).

검토컨대 제정법률로 직접 이어진 법률은 1968년 윤인식 의원안, 그리고 윤인식 의원안의 전신이었던 김성철 의원안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인식 의원안이 의회주도 법률안이었다기 보다는 정부에서 마련한 안을 법 제정에의 시기적 촉박함을 이유로 국회입법의 형식을 빌었던 것(남찬섭, 2006)이라는 점에 주목해 본다면, 결국 정부가 고안하였던 방안이 1970년 제정 사회복지사업법의 윤곽을 결정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크게 어긋남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정부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사회복지법인 제도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하며, 그런 점에서 사회복지법인 신설배경을 논의하면서 1958년의 법률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 3) 제도 신설 이유

1953년부터 「후생시설운영요령」에 따라 구호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작하면서 보건사회부에 의한 행·재정적 개입이 실질적으로는 작동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보여진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국가를 대신하여 요보호자를 재가가 아닌 시설에서 구호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재정지원 자체가 시설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그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책임을 대신하는 민간이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생계지원을 끊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설운영에의 책임을 지고 있는 민간 재단 및 사단법인에 대해서 보건사회부가 재정은 지원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책집행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는 점은 한계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보건사회부에 의한 개입은 구호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만 통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후생시설운영요령」에서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법인을 설립한 후에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도 보건사회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직접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건사회부장관은 행정지도

의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단 또는 사단법인을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하게 하고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신규 법인은 모두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도록 하여 시설운영사업에 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보건사회부는 후생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시작되었던 1950년대부터 사회복지법인 제도 신설을 통해 시설과 법인을 공히 행정지도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려는데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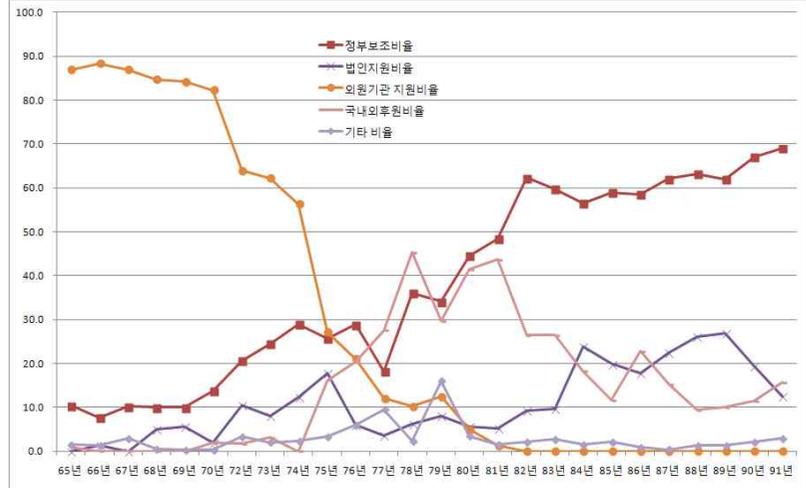
## 3. 사회복지법인의 공과에 대한 재평가

### 1) 재정조성적 측면<sup>3)</sup>

시설운영의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세입예산에서 크게 대별될 수 있는 것은 정부보조부문, 의원기관 지원부문, 재단수입 부문, 국내외 후원부문, 기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의원기관에서 기관의 이름으로 후원한 것은 의원기관 지원부문에 포함시키고, 해외에서 독지가가 자신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기부한 것은 국내외 후원부문에 포함시켜 기관단위 후원과 해외에서의 개인단위 후원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이는 의원기관에의 의존도 정도와 기관이 아닌 국내외 후원 부문의 상대적 비중을 살펴보기 위함 때문이었다.

이러한 세부 구성적 측면에서 볼 때 이사회 회의록이 남아 있는 1965년부터 살펴보면 첫째 의원기관보조가 전체예산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던 시기, 둘째 국내외 후원이 성장하여 의원기관보조 부문보다 그 절대적 금액이 더 커지는 시기, 셋째 정부지원이 점차 확대되어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된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그러한 시기 구분에 따라 해당 시기에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원을 넘어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융통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와 그 의미에 대해 재평가해 보고자 한다.

3) 본 연구에서 시설운영 재정적 측면을 고찰하기 위하여 『E 사회복지법인』의 협조 하에 1965년도부터 1990년대까지 이사회 회의록 원자료를 받아 세입예산의 절대적 규모와 그 내부구성에 있어서의 상대적 비중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일부 자료는 원자료에 연필로 가필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정확한 사실(facts)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이사회 회의 때 회부된 안건 원본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물론 원자료를 연필로 가필한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수정된 금액도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그림 1] E 사회복지법인 운영 시설 세입결산 세부구성비 추이

### (1) 외원기관 보조 절대적 우위 시기

1965년도 [E 사회복지법인 운영시설] 세입결산표에 따르면 전체 6,661천원 중에서 정부 보조비율은 10.4%에 불과한 반면, 외원기관 보조비율은 86.9%에 이르고 있어 외원기관 보조가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에는 개인에 의한 국내외 후원은 1%를 채 넘기지 못하고 있어 원조기관 차원에서 지원이 절대적이고 그 다음이 정부보조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 정부보조는 보조금과 보조미를 말하는 것으로서 생활보호법상에서의 생계급여에 해당한다.

이러한 추세는 1960년대를 지나서 1974년까지 계속된다. 즉, 1974년까지 전체 예산 총액의 50% 이상을 외원기관에서 보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전반적으로 외원기관들이 197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한국에 대한 지원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과 정부 지원의 확대라는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그 이후에도 물론 전체 세입예산의 50%를 넘지 않더라도 정부보조금액이나 국내외 후원금액보다 외원기관 보조금액이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75년 정부보조금은 2,545,155원이고 국내외 후원금은 1,607,815원이었으나 외원기관 보조금액은 3,694,106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76년에 들어서서는 매우 주요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외원기

관 보조금액이 3,763,427원으로 국내외 후원금액 3,650,323원보다는 높지만 정부보조금 5,151,955원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 1976년을 기점으로 처음으로 전체 예산에서 외원기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부보조금에 비해 낮아지는 분기점이라는 것이다.

### (2) 국내외 후원 성장 시기

1977년은 처음으로 국내외 후원금이 외원기관 원조금보다 많게 되는 원년으로 기록된다. 1977년 [E 사회복지법인 운영시설] 세입결산서를 보면 외원기관 보조금액은 9,449,918원인데 비해 국내외 후원금액은 13,178,750원으로 국내외 후원금이 보다 많게 나타났다. 이러한 국내외 후원금은 1977년에 1천만원을 훌쩍 뛰어넘은 이후 계속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구성비율에 있어서는 1977년과 1978년 두 해에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19년부터는 정부지원 비중이 커짐에 따라 그 절대적 우위를 정부지원 부문에 내주게 된다.

### (3) 정부지원 확대 시기

정부지원은 1965년에는 보조금과 보조미로 출발하고 있으며, 절대적인 금액은 690,182원 정도로서 전체 세입예산의 10.4%에 그치고 있다. 세입의 대부분은 외원기관의 지원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지원예산에서 주요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1970년이다. 한편, 정부보조의 세부항목과 관련하여 인건비가 처음 책정된 것은 1970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세입예산서에 인건비 항목이 처음 등장하는데 서울시에서 보조한 것으로 보인다. [E 사회복지법인 운영시설] 직원 중 보모와 간호사 7명에 대하여 월 1,500원이 수당 형식으로 책정된 것이다. 이는 당시 종사하던 직원들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장은 물론 직원의 절반 이상이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외원기관 보조금액으로 충당된 것이다. 직원의 수당은 연차적으로 점차 인상되었지만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임금이 제대로 책정된 것은 [E 사회복지법인 운영 장애인시설] 이 새롭게 운영되던 1980년에 들어서이다. 이 때 보모, 총무, 간호원, 지도교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촉탁의사에 대한 월급과 수당이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사자 급식비의 항목도 추가되었다. 원장에 대한 월급이 책정된 것은 1984년의 일이었다.

세입예산의 구성면에서는 정부예산이 세입부문의 카테고리별로 볼 때 절대적 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76년부터이다. 이후 정부지원예산은 해마다 정부보조의 세부항목들이 늘어나면서 증액의 폭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 세입예산에서의 절대적 비중이 지속적으로 최우위에 서게 된 것은 1976년 이후 1979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E 사회

복지법인 운영 장애인시설] 이 설립되면서 1인당 지원단가가 높게 책정된 탓에 정부지원 비중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나게 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세입예산에서 정부지원이 50% 이상을 차지하게 된 것이 1981년부터라고 보면 그 해부터 정부가 전체 사업예산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게 된 변곡점이 된 셈이다. 그러나 그러한 절대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과연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의 소요예산을 전액 부담한 것이 아니라 법인으로 하여금 전체 소요예산의 20%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여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사적으로 정부의 부족분을 메우는데 노력을 강요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울러 1982년부터 외원기관 지원분은 종료되었으며 법인지원비율과 국내외 후원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에서의 소요재원 조달분이 더 커졌으며, 1987년 이후부터는 법인이 20% 자부담을 지게 되면서 법인지원비율이 일정 정도 차지하게 되었고 정부지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 (4) 법인 자부담 의무 시절 그리고 그 이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국고보조금의 횡령, 유용 및 오사용의 사례가 없지 않다. 인권침해, 가족경영에 따른 억압적 분위기 조성, 차별을 조장하는 인프라 등으로 사망사고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다. 그 자체는 위법, 탈법사례로서 법적 관용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다 보면 과거에는 그러한 관행들이 정부의 지원부족에 의해 나타나거나 드러나는 현상에 불과한 측면도 없지 않다. 예를 들면, 정부의 지원이 없거나 미약한 시절, 사회복지시설 원장로서는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가족경영은 그 당시의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인건비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업을 일으키는데 무보수로 도와주는 형태가 불가피했을 것이다. 이제는 정부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만큼 반드시 가족경영에 의존해야 할 필요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그동안의 관행과 과정에 대한 재평가와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엄격한 잣대와 후속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실기한 느낌이 없지 않다.

사회복지법인이 부담해야 했던 자부담 20% 또한 매우 불합리한 부과조건이었다고 본다.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수행하는데 필요경비를 오히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주는 것이 논리상 합당하나, 현실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의무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전체 운영경비의 20%를 매년 충당하도록 한다면,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든지, 가지고 있던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운영경비로 산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합리한 부과조건으로 인해 사회복지법인은 자부담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력에 의한 경비마련이 어렵다면 이를 조정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해 양곡에 대한 민간후원이 많았다면 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보조미를 팔아서 자부담 분을 채우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가 적발되면 사회복지법인은 정부보조금을 손대는 파렴치법으로 낙인찍혀야 했고 마치 모든 사회복지법인에서 그러한 불법적인 공금 횡령과 유용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의심받아야 했다. 주어진 환경이 불법과 탈법의 유혹을 조장하는데 그 결과로서 나타난 현상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모두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이 감내해야 했다. 정부의 그릇된 정책방향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에 헌신하고자 그 소명 의식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을 범법자가 되도록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내가 한국사회사업시설연합회 회장으로 있던 1982년은 정부지원이 열악해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다. 시설 원장에게는 보수가 전혀 없는데다 법인 자부담률 20% 의무조항이 있던 시절이었다. 그 때문에 원장들은 곧장 '도둑 누명'을 뒤집어썼고 멀쩡한 시설이 종종 '비리의 온상'이라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되곤 하였다. 시설의 원장들은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 만들 시설에서 월급이라도 받지 못하며 봉사하고 있는 터에, 작은 일 하나를 침소봉대하는 언론의 태도가 문제였다(중략) 당시까지 아동, 노인, 부녀자, 부랑인, 정신질환자, 장애인 총 6개 부문의 각 사회복지시설에는 자부담 20%의 의무조항이 존재했다. 위 6개 부문의 중 하나에 속하는 시설의 경우, 운영은 24시간 정부의 보호아래, 정부보조금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20%의 비율이 고정적으로 존재했다. 바로 이 법인부담 20% 조항 때문에 시설원장들이 종종 신문지상에 등장하는 일이 생기곤 했다. 시설 원장들이 정부보조금을 떼어먹었다거나 장부에 허위 기재를 했다는 혐의와 부정적 의혹들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1970~1980년대에서 1990년대 들어서까지도 이런 일은 비밀비재했다. 실제 보조금을 횡령한 일이 없어도 '거짓 영수증' 등으로 자부담 20%를 메우다 보면 나중에 그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찰이나 검찰의 눈에는 명백한 사기 조작으로 비출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조규환, 2012: 144-145, 153-154).

법인 자부담 20%가 많이 힘들게 했지요. 거기에서 자유로운 법인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법인이라고 예외는 아니구요. 그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구요. 그러나 매년 새로운 금액을 전체예산의 20% 정도 확보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N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우리라고 예외겠어요? 자부담 20%를 담보하기 위해 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별도로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요. 아마 다들 그러셨을 거예요. 저희들이야 그래도 바깥 분이 방송

계통에 오래 계셔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었지요. 그 이후로도 계속 필요에 따라서 시설이 늘 때마다 돈이 들어갔지요. 그렇지 못한 법인에서는 아마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S 사회복지법인 전이사장).

이러한 법인 자부담은 1990년대말에 가서야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전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옳다는 논리가 현실에서 관철된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시설 이용자의 삶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자부담 대신 정부지원금이 상향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용자에 대한 1인당 할당 비용의 총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논리적으로만 필요예산의 전체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지, 실제 삶의 질적 수준 향상을 담보한 지원규모가 되지는 못한 것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의 1인당 지원다가 상향조정을 통해 2000년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장애인복지실천 지향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비는 예산편성항목에서조차 반영되어 있지 못하고 여전히 인건비와 관리운영비에만 국한되어 있다.

#### (5) 재정적 측면 총괄평가

정부가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전하게 된 것은 1970년이다. 1970년에 처음으로 인건비 보조가 시작된 것이다. 물론 그것도 중앙부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인 서울시 예산으로 지급된 것이다. 이후 1980년 세입예산 중 정부보조에 의해 보모, 총무, 간호원, 지도교사, 영영사, 물리치료사, 촉탁의사에 대한 월급과 수당이 지급된 것이다. 보모의 경우에는 전체 근무인원이 아니라 7명에 국한하여 지급되었다.

이러한 제한적 부문에서의 부분적 인건비 보조에도 불구하고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전체 경비 속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법인에서 재단전입금과 국내외 후원을 통하여 그 소요재원을 마련해야만 했다. 나아가 이사회 안건으로서의 예산서 상으로 정부 보조분으로 국고가 지원된 것은 1983년이며, 원장에 대한 월급이 처음 지급된 것은 1984년에 이르러서였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사회복지법인 제도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을 1970년에 제정하면서도 예전부터 가졌던 기본입장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행책임을 민간에게 전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전에도 그랬거니와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은 우선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비를 모두 지원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이 정부

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여윌돈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를 충당해야 하는 책임을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주체에 지우고 있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게 국가를 대신해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기껏해야 건물이나 전답에 불과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실제로 요보호자의 생명과 육구에의 충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를 기대했던 것 자체가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에의 책임을 실행해야 하는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임에도 결국 종국적인 책임은 사회복지법인에게 미루고 있어 논리적 책임과 현실적 책임간의 간극이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7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조항이 없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증진에의 책임을 규정한 것은 1983년에 이르러서야 동년 5월 21일에 개정된 법률안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와 그 시기를 같이 한다. 그 이전, 즉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라고는 생활보호 차원에서의 시설보호예산이 주를 이루던 1970년대에는 그러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거론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아닌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책임이 1983년 전까지는 사회복지법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2(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필요한 상담·작업치료·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시설운영의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사회복지법인의 연간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총당은 기본재산으로부터의 수입이 3/10, 기타 사업수입에서 5/10 이상이므로 최대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는 2/10 정도에 불과하다. 통상 당시의 정부지원의 비율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의 전체 소요예산의 20%인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예산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사회복지법인 재산을 통한 운영경비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김형수(2007)가 논하는 바와 같이 공공성과 엄격성을 담보한 규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결국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 놓고도 그 법인의 사업운영 자금은 기존의 재산으로부터의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할 때와 어떤 다른 차별성을 갖는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사회복지법인에서 수행하는 대신 위탁에 따른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위탁비에 내포되는 것은 법정( )에 의한 최저기준에 따른 처우를 의미한다. 물론 그 이상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적정기준의 운영재원은 사회에서 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이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정부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로서 업무위탁에 따른 최소한의 책임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그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한 것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보호조치의 수준이 법이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회적 요구에까지 이르는 것이 아닐진대,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허용 또는 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원으로 국가의 책임을 대신하게 하려는 구도는 법적인 기준과 사회적 기준, 최소한과 적정선 유지에 대한 자원마련의 갈래를 혼돈하였거나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민간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운영에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법에서 명문화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하기 전까지는 민간복지의 자발성과 자율성에 기초하여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대신해 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부역할 부재로 인해 기아로 고통받고 사회적으로 무관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요보호아동을 민간재단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일반인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사업을 꾸준히 수행해 온 것이다. 그러한 노력은 최근 정부지원이 확대되었다고 하여 잊혀지는 신기루가 아니라 사회복지 발전에의 초석을 놓은 엄연한 역사의 핵심적 내용에 해당하며, 그동안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헌신해온 점철된 과정의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노력과 헌신이 오늘날에 와서 몇몇의 과오와 잘못으로 모두 백지화되거나 평가절하 되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정부의 노력이 부재했던 공백기를 사회복지법인이 채워 온 공로에 대하여 정부는, 늦었지만 사회복지법인이 실천현장의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에서, 이를 제대로 평가하고 역사적 의미와 함의를 전승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2) 운영적 측면

시설 운영방식 및 수준적 측면에서의 민간 복지부문이 갖는 자율성과 신축성, 자발적 노력이 정부의 요구 또는 지원의 수준을 넘어, 정부가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부문에까지 민간 사회복지 실천현장이 주도해 나가고, 나아가 정책을 견인해 나가는 역할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노력을 살펴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다.

정부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일정 정도 운영비를 보조해 주면서 지원한 정부보조금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를 관련 지침(안내)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침(안내)에서는 예산집행기준에 관한 것과 시설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할 뿐이고 정작 제시해야 할 시설서비스에 대해서는 침묵해 왔고 현재도 침묵하고 있다. 최근에서야 서비스 최저기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장애인복지법에서 서비스 최저기준 관련 조문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이든, 아동 또는 장애인 관련법에서건 간에 시설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정부에서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물론 1999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이 법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어떠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라고 하는 정부의 요구사항이 명확하고 그 요구사항을 준수했는지, 요구한 수준보다 더 뛰어나게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평가해야 하는데 당초에 정부가 요구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평가하겠다는 발상을 하면서 지금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측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능하는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1999년 이전까지는 정부가 아동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중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은 요구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사회복지법인 운영시설]에서는 민간의 자율성과 자발적인 노력과 헌신에 기반하여 입소 아동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부에서 요구하지 않는 부분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오고 있다.

## 4. 어떻게 양가감정을 정리할 것인가?

그러므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것이 헌신과 사랑, 그리고 자발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노력이 감추어지거나 평가절하 되어서는 곤란하다. 봉사와 헌신이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겸손함을 당사자는 당연히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우리 사회가 겸손함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곤란하며, 그것은 별개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치 사회복지사업을 한다는 것이,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한다는 것이 치열한 경쟁사회에 끼여들지 못하기 때문에 온정과 희생의 이데올로기에 묶어 놓은 사회복지분야에 잔류하는 2등 시민으로 종사자들을 취급해서는 안된다.

나아가 정부가 여력이 없었을 때, 지원을 확대하였더라도 그 수준이 미약하여 제대로 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백방으로 뛰어서라도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그 분위기의 세월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묻혀서도 안 된다. 아흔 아홉 가지 노력이 있어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부족한 것을 책망하고 바로잡고 또 이를 수정·보완해 나가려는 자세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한 가지 때문에 아흔 아홉 가지의 노력과 성과를 폄하하거나 무시해서는 이 땅에 정의가 설 곳은 좁아지고 만다.

현재까지도 사회복지법인 자체의 운영을 지원하는 정부의 재정지원은 없다. 사회복지법인 소관의 여러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주체이며 법인의 설립이념을 좇아 시설운영방향을 결정하고 견인해 내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이의 업무를 처리하는 전담직원 인건비도 지원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사회를 하더라도 회의비와 운영비를 자부담으로 지급·지출할 수는 있으나 회의비가 공식적으로 책정되지 않는다. 또 다른 예를 들고자 한다. 우수한 사회복지법인에는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오기 마련이다. 시설을 소개하고 법인의 이념과 경영철학에 대해 귀담아 듣는 외국 사회복지계 인사들이 부쩍 늘고 있다. 그러한 업무에 대한 소요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는 것인가? 그러한 일들도 모두 민간의 책임이란 말인가? 민간에서 오는 손님을 잘 챙겨서 돌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예의라고 치부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사회복지정책을 펴는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수출하고 해외에 널리 홍보하는 일을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임에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하고 있다면 그러한 노력에 대해 정부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나아가서는 사회복지법인 자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이제는 논의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한편, 사회 일각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의 어두운 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996년 에바다복지회, 최근 들어 성람재단, 석암재단 등 굵직굵직한 시설비리들이 터져 나오면서 사회복지법인과 그 소관 시설들의 운영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보부조금을 횡령 및 유용한다거나 시설이용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들에게 철퇴를 내리는 것이 옳다. 비리와 인권침해로 얼룩진 사례에 대해서는 과감한 행정처분을 통해 환부를 도려내야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수준 그 이상의 서비스 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우리 사회가 존경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을 조성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옥석은 가려야 하는 것이지, 섞어놓고 모두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로 예비 비리집단인 양 바라보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러한 사회적 시선은 하루빨리 교정되어야 한다. 오히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회복지법인 전체에 대해 생기는 부정적 인식이 생길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나아가서는 오히려 그간 정부의 부재와 공

백, 그리고 미약한 지원에 따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사회복지법인의 노력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기초하여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이 갖는 자율성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정부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움직임을 사후적으로 추진하는 형식을 갖추어 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일부 사회적 모습에 따라 법과 제도가 움직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그 때 전국적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부가적 정책이 수립·집행되게 된다. 그렇다면 현장의 필요와 정책적 개입은 언제나 시차를 가질 수밖에 없다. 사회적 수요와 현장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 그 이상으로 새로운 이념과 새로운 접근방식 및 실천기술을 도입하여 발빠르게 움직여 나가야 한다. 정부는 그러한 노력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설사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실패와 불완전을 딛고 보다 완성된 대응전략을 수립·실천하도록 그러한 프론티어 정신을 적극 장려·지원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수준 이하나 미달의 경우에는 과감한 행정처분을,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서비스 질과 수준을 유지하거나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5.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1)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업무지원 기능 강화

현재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된 정책업무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에서 사무관 1명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련 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러한 관련 법들의 변화 및 동향에 대해 그 연혁을 꿰뚫고 있지 않으면 그 피해는 모두 고스란히 소관 시설에게 전가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자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법적 환경변화에의 대응이 늦으면 그에 따른 위법사항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 져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을 지원하고 환경 동향을 적시에 분석하고 이를 알려줄 수 있는 지원체제 강화는 매우 중요하며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련 연구기능과 자문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여기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위탁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 2) 정부보조금 운용의 융통성 부여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을 제외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에서는 법인 운영을 위해 소관 시설에 교부된 정부보조금을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순수하게 외부로부터 조달된 재원에 의존해야 하는 형편이다. 정부에 따라서는 법인 소재지를 소관 시설과 달리하도록 지도하는 경우도 있고 법인 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소속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일본의 경우 노동후생성의 사회복지법인 예산편성지침에서 정부지원금이라 하더라도 사회복지법인이 법인 운영비와 시설 운영비를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편성·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운영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도 수입금에 대해 일정 부분을 법인에서 노인복지사업에 국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일반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시설예산이 법인에 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불가능하여 향후에는 정부보조금 운용에의 융통성을 부여하거나 법인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방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운영보조금 없이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민간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제한을 두는 것은 과도한 행정비용을 법인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업무의 효율성 또한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 3) 사회복지법인 퇴출구조 마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에서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경우에는 과감한 퇴출조치와 법인의 합병 또는 타 목적으로의 사용방향에 대해 정부는 깊이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사회복지법인을 스스로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물론 사안은 그 맥락이 다르지만 최근 사립학교에 대한 대학구조조정에서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급속한 출산을 저하로 학령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대학정원 56만명을 2020년까지 40만명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 즉, 16만명, 현재 기준으로 약 30% 정도는 대학이 정원을 줄이고 그에 따라서는 문을 닫아야 한다. 더 이상 학교법인으로서의 존립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퇴출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가칭) 대학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sup>4)</sup>을 제정하여 대학폐쇄시 퇴출에 따른 학교재산 일부를 설립자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제까지 사회화된 재산인 법인재산 일부에 대해서라도 사적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법률이 될 전망이어서 법률적 논쟁이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법인에 있어서는 그 역사적 연혁이 오래된 경우에는 과거 선교사가 기증한 재산, 적산가옥을 싼 값에 불하받은 재산<sup>4)</sup>, 정부지원금으로 조성된 재산, 이러한 재산들의 가치가 증액된 부분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재산의 투여가 불가피했던 점을 감안할 때 퇴출 가능성 및 그에 따른 환산금액 산정방식 등에 대한 깊이있는 고민은 필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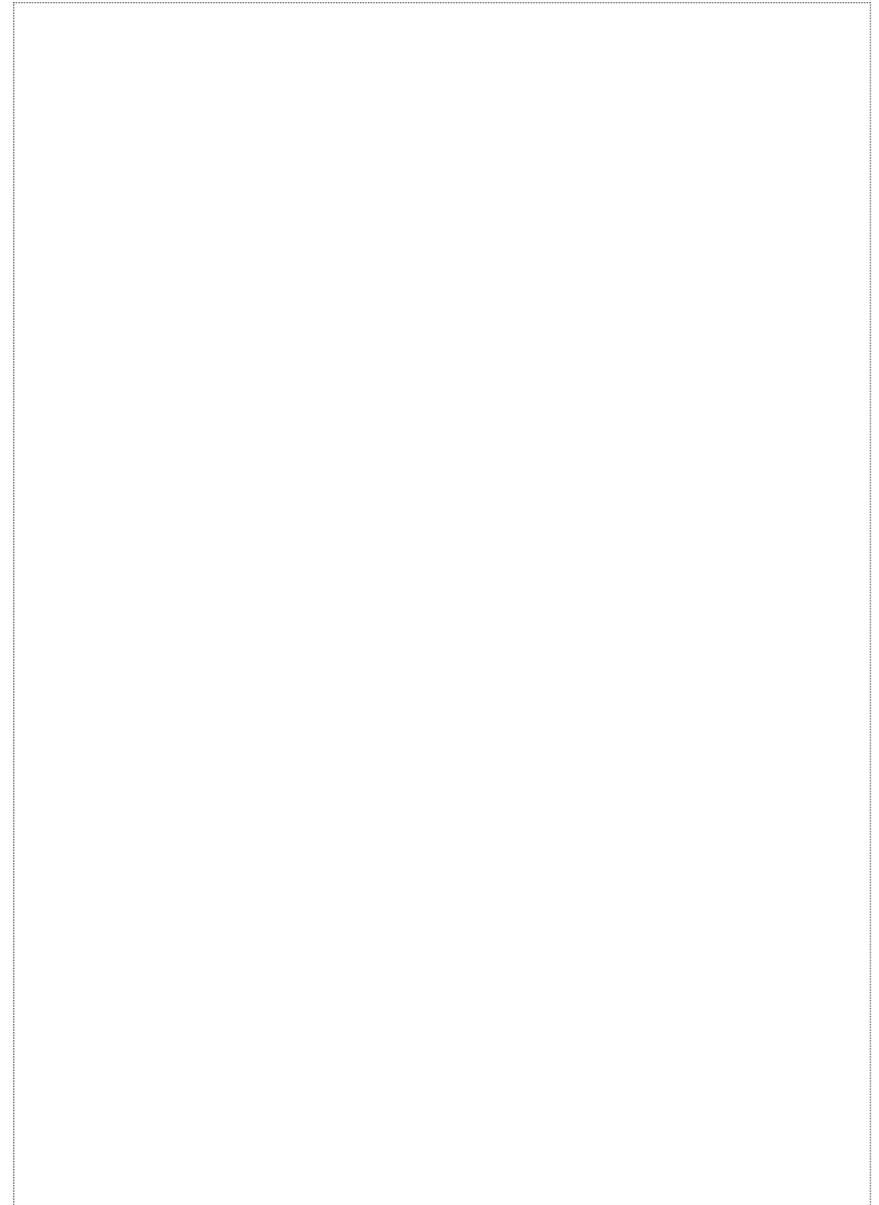
## 6. 글을 맺으며

사회복지법인은 영욕의 굴레를 모두 안고 살아가는, 사회복지정책의 운명공동체다. 온 집을 다 떠안고서 민소매에 한겨울 모진 찬바람을 온 몸으로 맞았지만 알아주는 이 없고, 또 알아달라고 하려는 마음도 없었음을 목격했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굴뚝같지만 꼭 참고 켜켜이 쌓인 뒷이야기의 페이지들을 추억처럼 들춰보는 마음과 정서를 모르지 않는다. 아니, 몰라서도 안 된다. 하지만 때로는 못내 놓지 못한 고마움의 눈길이 분노의 결눈질로 바꾸게 만드는 안타까운 소식이 대다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님을 알지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 또한 사회복지법인 이야기이며, 슬픈 자화상이다.

그러나 그러한 양면이 동 시대에 공존한다 하더라도 모두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편견은 사라져야 한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 때 적어도 정부에서의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 미흡으로 인해 제도적으로 몰염치를 양산하는 구조가 있다면 이는 바꾸어야 한다. 변화시켜야 한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의 미래지향적인 역할이 무엇이고(역할의 다기화), 그 역할을 수행하는

4) 물론 불하받기 위해 지불한 설립자의 지출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재산 가치를 환산함에 있어서 재물가액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구체적인 판단 등이 전제되어야 신뢰를 얻을 것이다.

데 필요한 현대화된(modernized) 행정구조가 무엇인지(행정역할의 고도화), 어떻게 해야 지속가능한 신뢰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지(운영의 선명성) 등에 대한 고민이 끊임없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세션 2

## 음악이 있는 하루

한국예술종합학교  
우 광 혁 교수

**M E M O**



**M E M O**



세션 3

## 소통과 공감의 유니버설 디자인

한국복지환경디자인연구소  
전 미 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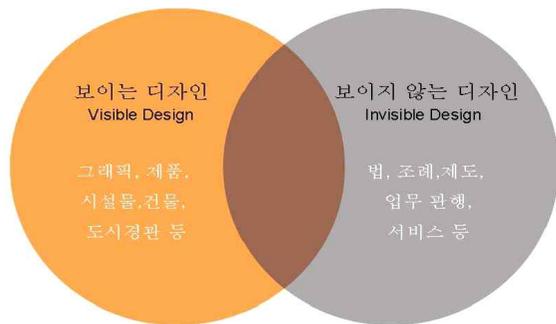
# 소통, 공감의 유니버설디자인

권비자

(사)한국복지환경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복지환경디자인연구소 소장

## 디자인의 주요 분야

보이는 디자인에서 보이지 않는 디자인으로 확대



A collage of various people's faces, including children, adults, and the elderly, representing diversity. The text '유니버설 디자인 UNIVERSAL DESIGN' is centered. Below it, there are two lines of text in yellow and white.

## 유니버설 디자인 UNIVERSAL DESIGN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를 배려하는 보편적인 디자인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누구나 쉽게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디자인

## 유니버설디자인



- 무장애디자인(Barrier free design)
- 접근가능한 디자인(Accessible design)
- 수용가능한 디자인(Adaptable design)
- 생애주기디자인(Lifespan design)



### 유니버설디자인의 7원칙

원칙1	공평한 이용 - 누구라도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일 것	Equitable Use
원칙2	이용에 있어서 유연성 - 폭넓은 사용자들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사용에 있어서 자유도가 높은 디자인일 것	Flexibility in Use
원칙3	간단하고 직관적인 이용 - 사용방법이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디자인일 것	Simple and Intuitive Use
원칙4	인지 가능한 정보 - 주변 상황이나 사용자의 감각능력에 관계없이 사용에 필요한 정보가 바로 전달되는 디자인일 것	Perceptive Information
원칙5	실수에 대한 관대함 - 위험한 상태나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인한 결과가 위험으로 연결되지 않은 디자인일 것	Tolerance for Error
원칙6	작은 신체적 노력 - 무리한 자세나 강한 힘을 필요치 않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일 것	Low Physical Effort
원칙7	접근과 이용을 위한 크기와 공간 - 사용자의 신체 크기(의 자세, 이동능력)에 관계없이 사용하기 편리한 치수와 공간으로 되어 있을 것	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Universal Design(보편적 설계)은 accommodation(조정)처럼 소극적이지도 않고, barrier-free design(무장애 설계)처럼 제한적이지 않다

-Universal design(보편적 설계)는 연령이나 신체적인 차이에 상관없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표가 있는 것이다.

###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 배리어프리(Barrier-free design )와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의 차이

	배리어프리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사용자 측면	장애인	모든 사람
개념적 측면	장애의 제거	추가적 디자인생성
환경적 측면	물리적 환경이미지	총체적 환경
과정적 측면	완결적	진행형
건축적 측면	수직적(특정건축물)	수평적(모든 건축물)
의미적 측면	기능중시	디자인중시
배경적 측면	복지적	상업적, 시장적

-UD은 사용하는 사람이 중심이어야 하고,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시장성이 높은 것을 목표로 하고, 디자인의 프로세스를 중시한다.

- UD은 소극적이지도 않고, barrier-free design처럼 제한적이지 않다

- UD은 연령이나 신체적인 차이에 상관없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표가 있는 것이다.

- UD은 배리어라는 마이너스요인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다른 플러스 면을 만들어내는 것이 요구된다. 즉, 끊임 없이 창조적으로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다루어 가는 것이다.

### 도시디자인 기본개념

#### 이야기가 있는 디자인

##### 콘텐츠를 활용한 디자인

이야기 거리가 있는 공간조성은 차별성이 부족한 공간을 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물리적 공간에 콘텐츠를 적용하여 재미가 있는 공간을 연출하도록 한다.

#### 사람을 배려하는 디자인

##### 유니버설디자인 (Universal Design)& 약자를 배려하는 디자인



고령자와 장애인, 그리고 비장애인 등 모든 사람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물리적배리어(Barrier, 장벽)를 제거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를 원칙으로 한다.

##### 자연과 호흡하는 디자인

##### 자연친화적인 디자인 (Eco Environment Design)

환경문제 의식이 대두되면서 '지속가능한(Sustainable)'을 주제로 친환경 윤리적 소비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친환경디자인은 트렌드를 떠나 소재, 스타일 및 심미적 기능이 환경친화성과 어우러진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 자연의 유기적 네트워크

접근이 용이한 친환경적 동선체계 구축을 통해 자연과 동화하고 호흡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네트워크 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 복지시설유니버설디자인

## 안전을 고려한 환경

### 진입로

- 보도에서 현관까지 단차와 턱이 없는 경사로의 휠체어 통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휠체어 사용자들 위해 진입로에는 보행을 돕는 핸드레일을 설치한다
- 야간 이용을 위해 안전한 보행을 위한 상시 조명을 설치한다
- 진입부 부터 현관까지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보행동선을 확보한다
- 추출입구에 캐노피 등 차양시설을 설치하여 우천시에 대비한다
- 구급차등 일시적으로 잠시 주차할 수 있는 승차 공간을 확보한다



△도로에서 정문까지 단차와 턱이 없는 경사로

## 시설적 느낌을 최소화하는 생활공간

거대하고 획일적인 공간계획은 차가운 이미지를 주거나 불안감을 줄 수 있으므로, 이용자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근감 있는 분위기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 즉, 인간적이면서도 편안함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물리적 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

### 가정적인 친숙한 환경

- 따뜻하고 친숙한 소재의 사용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장애인거주시설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가정적인 집과 같은 규모의 공간으로 친숙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한다.
- 집과 같은 환경으로 자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인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진이나 기념품 등을 장식할 수 있는 가구 등을 두어 자신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게 한다.
- 외부조명과 자연채광이 가능한 넓은 창을 둔다



##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환경

- 실내에 적극적으로 온실, 조경 등의 자연요소를 도입하여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 친환경적인 공간계획을 통해 생리적 활력소 및 영양소의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한다.
- 내부의 마감재는 기정적이고 따뜻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목재, 벽돌, 흙 등과 같은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한다.
- 기구는 목재와 같은 따뜻하고 이동을 용이한 가벼운 재료를 사용 하도록 한다.



## 알기 쉬운 공간구성

-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을 감안하여 공간을 식별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바닥과 벽, 또는 상력이 다른 장소에 대비가 높은 색을 사용하여 쉽게 구분, 질감의 차별화)
- 장애인들의 개인공간은 친밀하고 익숙한 환경으로 계획하여 자유환경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한다.
- 화장실의 문은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한 문의 형태로 하여 비상시에는 외부에서도 열 수 있도록 한다



### 물리적 장애가 없는 안전한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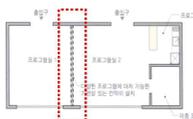
-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복도, 문턱의 바닥 단차를 해소하여 물리적인 장애를 제거한다.
- 가구의 모서리를 곡면 처리하거나 벽면의 킥 플레이트(보호대)를 설치한다.
-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로 적정한 탄력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광택이 있고 눈부심이 강한 재료와 복잡한 무늬로 시각에 혼란을 주는 형태의 재료는 지양한다 한다.
- 보행보조기, 휠체어등의 사용이 많으므로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 비상용의 통보장치를 화장실, 욕실등에 설치하고, 비상버튼이 손에 닿는 범위와 넘어졌을 때 누를 수 있는 장소에도 설치한다.



### 다목적 공간으로 변형 가능한 활동공간

- 가정과 같은 친숙함을 확보하고 폐쇄적인 공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간의 확보가 중요하다
- 가급적 연관되는 활동 및 프로그램을 근접 배치하여 공용의 공간을 구성하도록 한다.
- 공간의 용도에 따라 자연채광과 환기, 실외공간과의 연계, 조망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배치한다.
- 기능 및 활동프로그램에 따라 시각, 청각, 후각 측면에서 공간의 접근과 분리를 면밀하게 검토, 계획해야 한다.
-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각 공간은 다목적의 기능을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자재 및 도구의 보관을 위한 충분한 수납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 가변성 있는 다목적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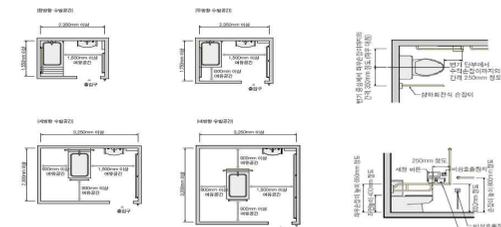
▲ 가변형파티션을 이용한 다목적 공간

### 위생공간

-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혼자서도 배변이 가능 할 수 있도록 크기, 설비가 다양한 화장실을 설치 한다
- 공용화장실은 직감적으로 인지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한 거실과 가까운 곳에 배치한다.
- 화장실 문은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잠금 장치를 설치하되 위급 시 밖에서도 열 수 있어야 한다
- 변기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 및 휠체어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가정과 같은 따뜻한 분위기의 색채와 마감재로 계획하고 미끄럼 방지가 가능한 바닥으로 마감한다
- 수전은 레버식 혹은 센서식으로 설치하며, 냉온수의 구별이 알기 쉽도록 하고 온도가정장치를 설치한다
- 손잡이를 설치할 때는 사실적인 느낌이 나지 않는 따뜻한 색과 재료를 사용한다



#### [ 주변 수납공간 확보에 따른 욕실 평면 형태 ]



- 수전은 레버식 혹은 센서식으로 설치하며, 냉온수의 구별이 알기 쉽도록 하고 온도고정장치를 설치한다
- 손잡이를 설치할 때는 사실적인 느낌이 나지 않는 따뜻한 색과 재료를 사용한다

##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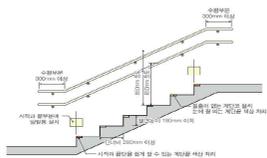
- 안전한 수평이동이 가능한 복도로 계획하고 바닥 단차 제거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재로 마감한다
- 복도의 양쪽에 연속하여 손잡이를 설치하며, 잠시 쉬어가는 휴식공간을 계획한다
- 손잡이는 낙상방지를 위해 손잡이를 따라 걸거나 손잡이의 연속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복도에서는 손잡이가 보행보조의 기능이 되도록 한다.
- 손잡이의 형태는 쥐기 쉽도록 직경32~38mm 정도의 원형단면으로 하고, 손잡이와 벽은 50mm의 이격을 두며, 120kg 이상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스테인레스 스틸은 지양하며, 목재 및 합성수지재 등 차갑지 않은 재질로 설치한다.



△ 잠시 쉬어가는 의자설치

## 계단

- 보행능력이 저하된 장애인은 계단의 이용 빈도가 낮지만, 긴급 시 안전한 대피로로 사용하기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 계단의 양측에는 연속하여 손잡이를 설치하며, 쉼면 높이는 180mm 이하, 디딤판 너비는 280mm 정도를 권장한다.
- 디딤판의 계단코는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돌출이 없고 다른 단과 구별할 수 있도록 색상을 달리하며, 특히 시작단과 끝단의 디딤판은 명확하게 구별되도록 배려한다
- 야간에도 디딤판이 잘 보이도록 발밑조명을 고려하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명 위치에 주의한다.



△ 깔라대바로 인해 안전성 노일

## 가구 및 수납

-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가구를 선택한다. 여의치 않을 때에는 모서리에 충격을 방지하는 부드러운 재질의 마감재를 덧대어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인다.
- 안전성을 고려하여 부딪쳐도 상처가 나지 않도록 목재나 부선소재 등 부드러운 재료를 사용한다.
- 프로그램실, 식당 등에 배치되는 의자는 넓고 배기 쉽도록 가벼워야 하며, 넓고 뺨 때 잡기 편하도록 손잡이나 홈이 있는 것으로 선택하면 좋다.
- 청소가 용이하도록 단순한 디자인과 재질을 적용한 가구를 선택한다.
- 가구, 비품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부딪쳐도 상처가 나지 않도록 목재 등 부드러운 재료와 옷자락 등이 걸리지 않는 형상이 좋다.
- 다양한 이용자의 신체사이즈를 고려하여 손잡이, 스위치, 버튼 등은 누구나 손에 닿아 작동할 수 있도록 중장점을 바닥으로부터 800~1200mm에 설치한다.



## 문과 창

- 실내 출입문을 천천히 닫히도록 도어체크를 설치하며, 무거운 현관문이나 주 출입구의 문에는 반드시 도어체크를 설치하고 회전문을 지양한다
- (반)자동문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열리는 속도를 빠르게 하고, 닫히는 속도를 천천히 한다.
- 유리문으로 마감된 자동문이나 기타 문일 경우 유리문을 인지 하지 못한 충돌사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시트지 등으로 처리하여 유리문이 있음을 알려준다.
- 복도,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관리공간의 실내 출입문은 내부 투시가 가능한 유리창이 있는 문의 설치를 권장한다. 작은 체구의 이용자도 볼 수 있도록 유리창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최소 500mm 이상으로 하여 안전유리로 설치한다.



### [ 다양한 문의 사례 ]

3 단 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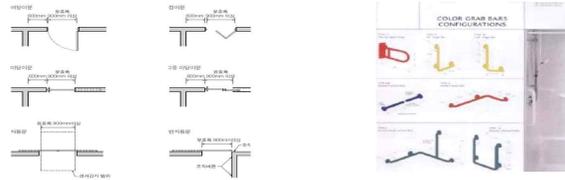
슬라이딩 도어



접이식 도어



**[ 문의 종류에 따른 설계 기준 ]**



**[ 문 손잡이의 종류 ]**

• 문손잡이의 종류는 손의 크기나 악력에 상관없이 열기 쉬운 레버형 혹은 일자형으로 설치하며, 청소관리실이나 조리실, 의료실 등 위생이 중요한 경우 누름식을 권장한다. 단, 노브형은 모든 문에 지양한다.



**조명**

-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과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시각에 의한 피로감이나 불쾌감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명의 양과 질을 배려하여, 적정 조도 수준, 조명방법, 조명기구 선택이나 배치를 결정한다.
- 하나의 조명방식으로 계획하는 것을 지양하고, 전반조명, 국부조명, 작업조명 등 다양한 조명방식을 적절히 혼합 구성한다.
- 비상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비상조명계획을 검토한다.
- 그림자가 발생하는 조명을 피하고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실에는 눈에 피로감이 없는 간접조명을 설치한다.
- 부드럽게 확산되는 전반조명을 주된 조명으로 하며, 스탠드나 벽부 등의 국부조명을 함께 사용한다.



△눈부심 방지를 할 수 있는 간접등

△간접조명을 이용한 천정 디자인

**사인**

**[ 픽토그램 예시 ]**



**[ 컬러 예시 ]**



**거주공간**

- A** 내추럴 색으로 자연스럽고 은화하며 또한 자유로우면서 친근감을 유발, 가족애, 안정감
- B** 스트레스 해소, 집중력 강화, 안정, 심리적 자극을 주지 않으므로 신경과 근육의 완화작용과 안정적 작용 또한 따뜻하고 화사하여 생활실이 주로 사용
- C** 우울하거나 초조한 기분은 완화시켜주며, 집중력향상, 식욕향상, 긍정적인 생각, 신뢰감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기총회



사단  
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회 순

### 개 회

- 회장인사
- 성원보고
- 개회선언
- 전차회의록 처리
- 감사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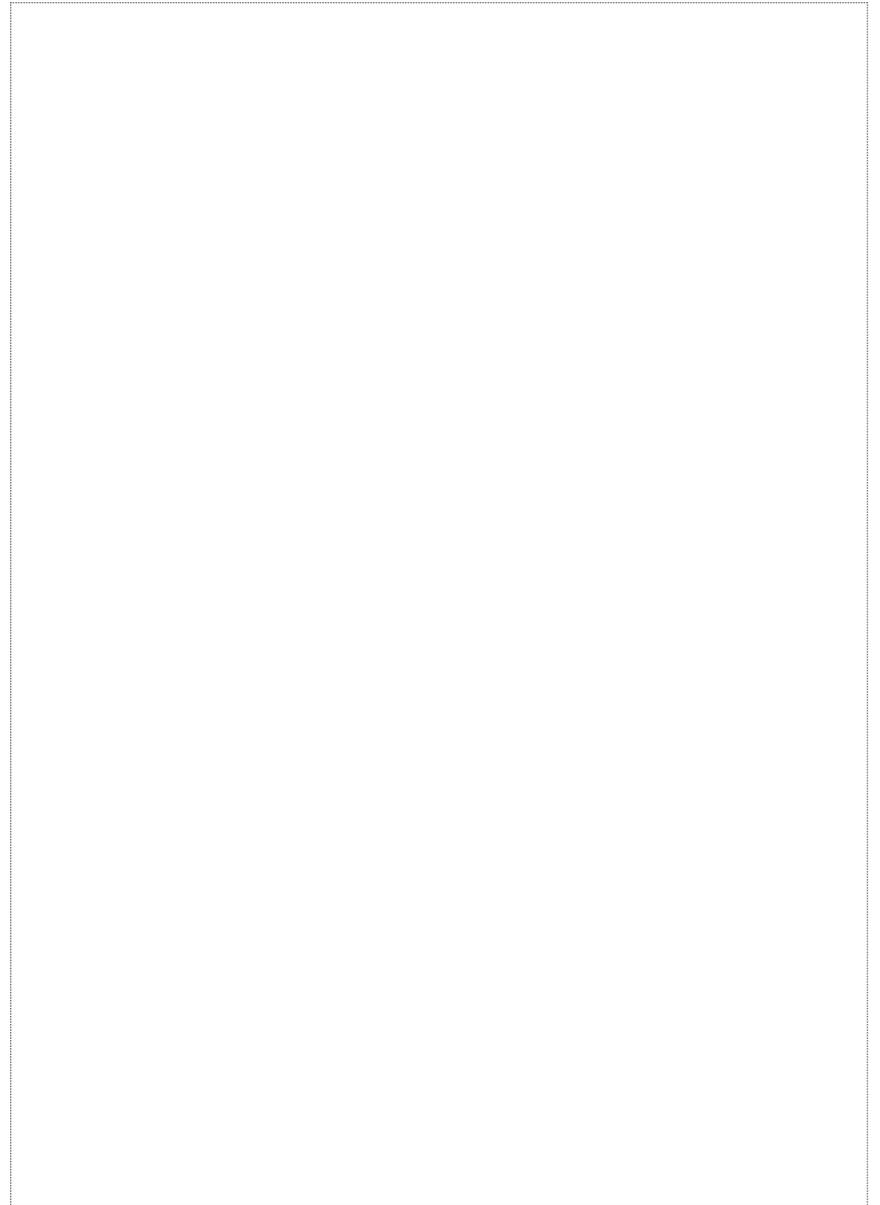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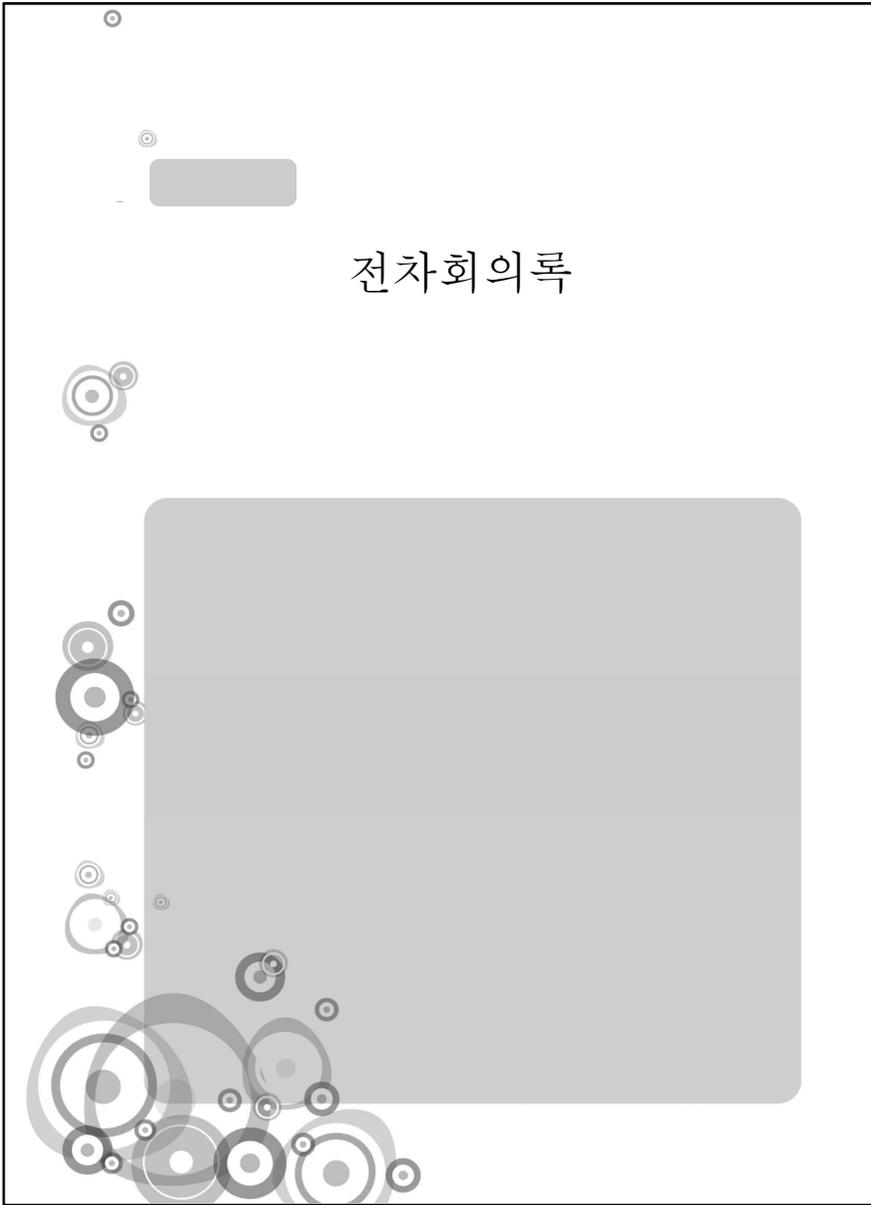
### 부의안건 심의

- 제1호 의안 : 2013년도 사업평가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제2호 의안 :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관한 사항
- 제3호 의안 : 정관 개정(안)에 관한 사항

### 보고사항

- 제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 폐 회



## 2013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1. 일 시 : 2013. 2. 19.(화) 16:20 ~ 2. 20.(수) 11:40

2. 장 소 :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홀

3. 참석자 : 재적회원 553명 중 참석 315명(위임 14명)

### 4. 개회 및 성원보고

가.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명세를 실시하다.

#### 나. 성원보고

사무총장이 재적회원 553명중 315명(참석 301명/위임14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 다. 개 회

협회장이 협회회원 315명의 참석으로 회원의 과반이상이 참석하여 총회 규정 제8조에 의거, 성원이 성립되었으므로 총회 개회를 선언하다.

#### 라. 회장인사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인원이 본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인사말을 갈음하다.

### 5. 전차회의록 처리

- 의 장 : 전차회의록을 상정하고 사회자에게 낭독을 요청하다

- 정 권 회원 : 전차회의록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다.

### □ 부의안건 심의

- 의 장 : 제1호 의안 2012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2호 의안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관한 사항, 제3호 의안 협회 중앙회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추천직 감사 2인 및 선거직 협회장 선임) 상정한 후 이외의 다른 안건상정에 대해 회원들에게 의견을 묻다.

- 회원일동 : 다른 안건이 없음을 동의 · 제청 하다.

- 의 장: 다른 안건이 없음을 확인한 후 본 회의 부의안건으로 상정하다.

### □ 제1호 의안 : 2012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의 장: 제1호 의안 2012년도 사업평가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내용은 사무총장에게 회의자료 및 PPT를 이용하여 설명할 것을 요청하다.

- 홍인식 회원 : 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1호 의안을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다.

- 회원일동 : 제청하다.

- 의 장 : 제1호 의안 2012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이견이 없는지 회원들에게 묻다.

- 회원 일동 : 이견 없음을 동의하다.

- 의 장 : 다수회원의 동의 · 제청에 따라 2012년도 사업결과 및 사업결산보고에 이의가 없으므로 제1호 의안이 승인 되어진 것을 선포하다.

### □ 제2호 의안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관한 사항

- 의 장: 제2호 의안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 정원석 회원 : 재청하다.
- 회원일동 : 재청하다.
- 의 장 : 다수회원의 동의·재청에 따라 전자회의록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선포하다.

**바. 감사 보고**

- 의 장 :2012년 협회 사업 및 회계에 대하여 법인 감사인 윤경렬 감사에게 감사보고를 요청하다.
- 윤경렬 감사 : 본 감사는 2013년 1월 16일 협회 사무실에서 민법 제67조 및 내부 예산회계규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국고회계, 자체회계, 자체특별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집행업무에 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였는바 감사결과는 불일과 같음을 이야기하고, 이하 감사내용은 2013년 정기총회 회의 자료와 동일하게 발표하다.
- 하정섭 회원 :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하다.
- 김정규 회원 : 재청하다.
- 의 장 : 감사보고에 대한 이의를 묻다.
- 회원일동 : 이의 없음을 이야기하다.
- 의 장: 다수회원의 동의·재청에 따라 감사보고에 대한 이의를 묻고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하다.
- 의 장: 올해로 임기가 완료되는 윤경렬 감사와 정학수 감사의 노고를 치하하고 박수로 감사의 뜻을 표할 것을 회원에게 요청하다.
- 회원일동 : 박수로 감사의 뜻을 표하다.



내용은 사무총장에게 회의자료 및 PPT를 이용하여 설명할 것을 요청하다.  
내일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가 결성되면 사업계획과 예산이 변경될 수 있음을 함께 설명하다.

- 사무총장 : 회의자료집을 참조로 2013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다.
- 홍인식 회원 : 내일 차기회장이 선출되면 2013년도 사업이 새로운 회장에 의해 본 의안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올해 특색있게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다.
- 사무총장 : 기업사회공헌팀과의 연계, 인권지킴이단의 운영활성화가 2013년도의 특색있는 사업임을 설명하고, 회의자료집을 참조로 예산에 관한 사항의 설명을 진행한다.
- 이만동 회원 : 유인물에 있는 내용 중 다르거나 차이가 있는 내용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 다른 내용이 없을 경우 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2호 의안을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다.
- 의 장 : 제2호 의안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관한 사항에 이견이 없는지 회원들에게 묻다.
- 회원 일동 : 이견 없음을 동의하다.
- 의 장 : 다수의 동의·재청과 함께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이의가 없으므로 제2호 의안이 승인 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3호 의안 : 협회 중앙회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 의 장 : 제3호 협회 중앙회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상정하고 내용을 설명하다.  
미리 공지한바와 같이 협회장 선출은 내일(2월20일) 본 자리에서 선출토록 하고 금일 회의에서는 추천적인 감사 두명을 선출하게 됨을 설명하다.  
임기가 만료된 감사(윤경렬 감사, 정학수 감사)에게 인사말을 요청하다.

- 윤경렬 감사 : 순서에도 없는 인사말을 갑자기 권하여 당황스럽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회원들에게 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인사말을 같음하다.
- 정학수 감사 : 끝까지 소임을 마칠 수 있고 그간 보여준 회원 여러분의 관심에 모두 감사드리며 회원들의 행복을 기원하며 인사말을 같음하다.
- 의 장 : 추천적 감사에 대한 회원들의 추천을 요청하고 추천되신 분에 대해 추천하는 분이 간략히 소개할 것을 함께 요청하다.
- 하정섭 회원 : 경북영친의 회장의 동지 박찬만 원장을 추천하며 공직생활을 오래 하였으므로 감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것으로 설명하다.
- 박찬만 회원 : 추천을 사양하다.
- 류영미 회원 : 동천요양원 이혜순 원장을 추천하다.
- 정학수 회원 : 지난번 감사로 소임을 수행하다 제주협회장으로 선출되어 감사 임기를 완료하지 못한 대전 행복누리 박광수 원장을 추천하다.
- 이만동 회원 : 후보는 몇 명까지 추천가능한지 의장에게 묻다.
- 의 장 : 추천인원에 제한은 없으며 오늘 선출해야 하는 감사는 2인 임을 이야기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일 경우 사전에 나누어준 투표용지를 이용하여 투표를 실시할 것임을 설명하다.
- 김경식 회원 : 감사선출을 투표보다 거수로 할 것을 제안하다.
- 이만동 회원 : 주간보호시설의 원장도 감사후보로 추천할 것을 이야기하다.
- 의 장 : 추천이 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이미 후보로 추천된 동천의집 이혜순 원장은 동천주간(단기)보호센터를 겸임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홍인식 회원 : 두 후보가 각계의 의견을 잘 반영한 분이라 생각하고 박수

- 로 감사를 선출할 것을 동의하다.
- 회원 일동 : 박수로 재청하다.
- 의 장 : 동천요양원 이혜순 원장, 행복누리 박광수 원장의 동의 • 제청을 회원에게 묻다.
- 회원 일동 : 동의 • 제청하다.
- 의 장 : 이견이 없는지 회원들에게 묻다.
- 회원 일동 : 이견 없음을 동의하다.
- 의 장 : 동천요양원 이혜순 원장, 행복누리 박광수 원장이 본 협회 감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다.

□ 정회선언(2013년 2월 19일 화요일 17:20)

- 의 장: 금일 회의안건을 모두 처리되었으며 내일(2월 20일) 본 자리에서 협회장 선출을 위한 안건을 처리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본 회의의 정회를 선언하다.
- 정회 : 17시20분

□ 개회선언(2013년 2월 20일 수요일 09:10)

- 의 장: 본 총회 속개를 선언하며 오늘 임원선출을 진행할 선거관리위원인 진북 자에두승원 손문열 원장, 경기도 엘리엘동산 권대관 원장, 강원도 춘천평화의집 이광일 원장, 충청북도 다래동산 김화수 원장, 부산 평화의집 한우섭 원장을 소개하다.
- 소개를 마치고 남은 일정의 진행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다.

- 손문엽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선거위원장)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제11대 협회장 선거 시작을 알린다.
- 사무총장 : 회의자료를 204페이지를 참조로 제11대 선거관리위원회 활동경과와 투표방법을 설명하다.
- 사무총장 : 각 후보 참관인을 소개하다.  
기호 1번 임성현 후보의 참관인 장봉혜팀재활원 이한영 원장  
기호 2번 이경학 후보의 참관인 창인단기보호시설 박용생 원장
- 사무총장 : 후보자별 찬조연설 시간은 각 5분이며 정견발표는 각 20분임을 공지하고 연설 중 5분이 남을 경우 직원이 풋말을 들어 잔여 시간을 알려줄 것임을 설명하다.
- 사무총장 : 1번 임성현 후보의 찬조 연설자인 교남 소망의집 황규인 원장의 찬조 연설을 요청하다.
- 황규인 원장 : 1번 임성현 후보의 찬조연설을 하다.
- 사무총장 : 2번 이경학 후보의 찬조 연설자인 행복한주간보호시설 이만동 원장의 찬조 연설을 요청하다.
- 이만동 원장 : 2번 이경학 후보의 찬조연설을 하다.
- 사무총장 : 1번 임성현 후보의 정견발표를 요청하다.
- 임성현 원장 : 정견 발표하다.
- 사무총장 : 2번 이경학 후보의 정견발표를 요청하다.
- 이경학 원장 : 정견 발표하다.
- 사무총장 : 회의자료를 참조로 본 회의장 연단 우측에 위치한 투표소에서 투표 방법을 설명하다.

- 회원 일동 : 투표를 실시하다.

□ 투표결과 발표

- 선거위원장 : 총 투표자 325명중 기호 1번 임성현 후보 201표, 기호 2번 이경학 후보 122표, 무표 2표로 부천혜림원 임성현 원장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제11대 협회장으로 당선되었음을 발표하다.

□ 폐 회(2013년 2월 20일 수요일 11:40)

- 의 장 : 2013년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 폐회 : 11시40분

회장권한대행 : 박 민 현

(인)

이 사 : 류 영 미

(인)

이 사 : 김 영 환

(인)

이 사 : 황 규 인

(인)

이 사 : 황 소 진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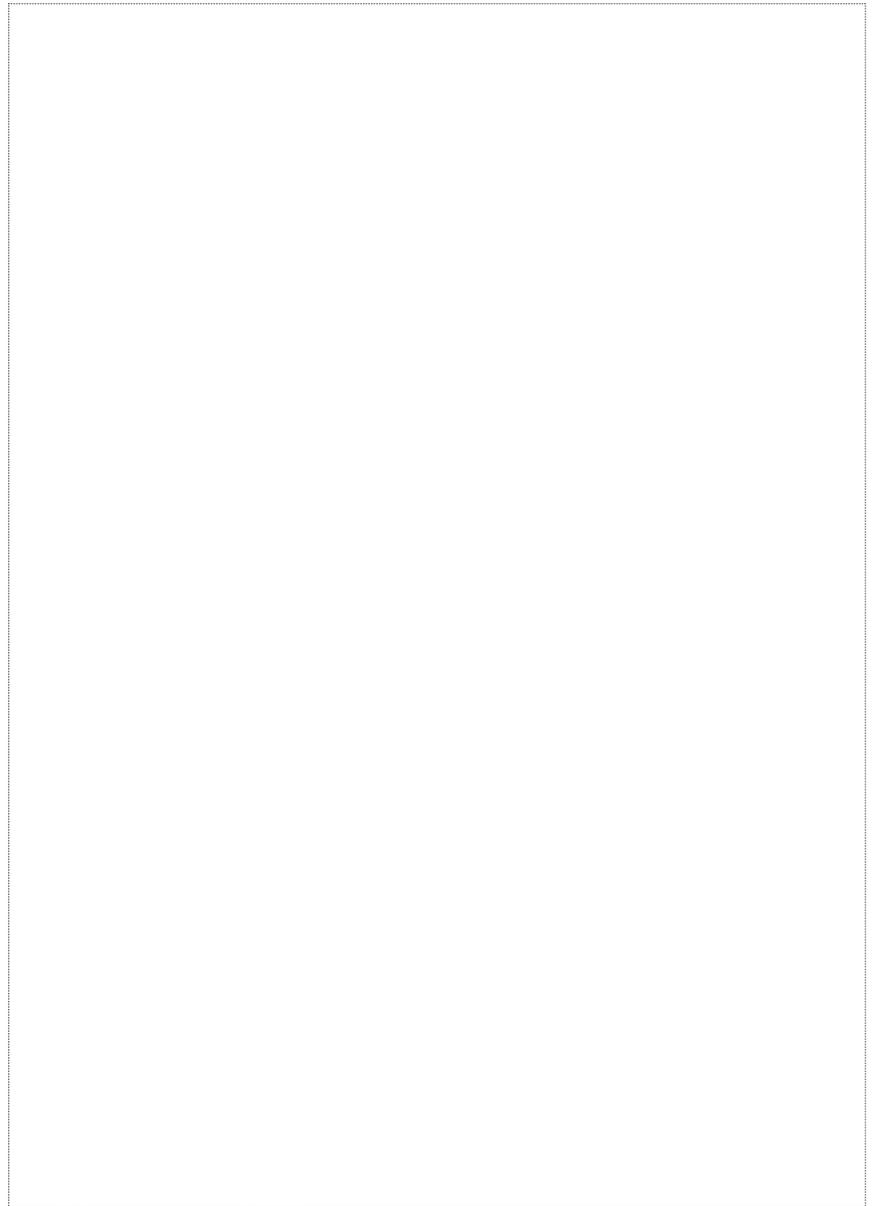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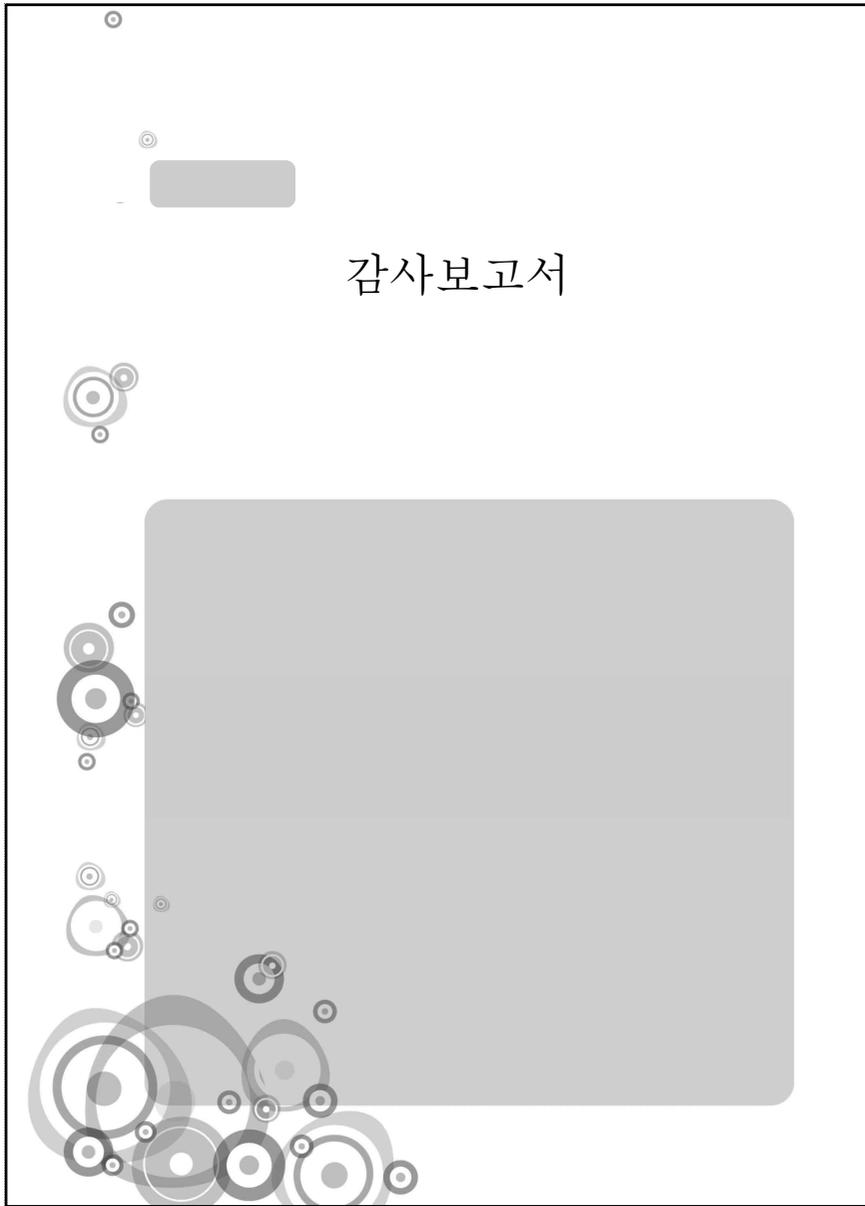
기록 확인 : 김 혜 정 기획실장 (인)

기 록 : 김 성 용 과장

(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13. 2. 20.



붙임)

## 감 사 내 용

신임회장의 출범과 함께 장애인복지 현안이 산재한 상황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성과를 이끌어 낸 집행부와 전 회원시설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반 업무(사업) 분야에서는 사무국 직원의 변동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사업계획에 의거 각종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원시설의 유형에 따라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연구모임을 위한 네트워크사업이 거주시설의 직종별(사회생활분야, 자원개발분야, 영양사분야, 간호사분야, 물리치료사분야), 유형별(주단, 단기, 공동생활가정)로 다양하게 진행이 되었고, 시설운영상의 애로사항과 고민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전문자문위원단을 중심으로 한 경영컨설팅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인권문제에 대해 인권지킴이지원센터를 통해 인권교육 강사양성, 인권지킴이단 담당자 교육 및 네트워크 구성, 소모임 활동, 온라인 및 전화상담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회원시설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외부자원 개발(기업후원금 9.25억원, 물품 6.2억원 등)을 통해 다목적 여가활동 공간 조성 지원, 겨울나기물품 지원, 힐러스캠프 지원, 시설프로그램비 지원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년의 세월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의 숙원이었던 시설예산에 대한 중앙정부로의 2015년 환원과 물가현실에 근접한 주부식비 인상 확정은 대단히 큰 성과로 파악됩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수십명의 국회의원 및 관련기관장들을 만나며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의 수행성과가 어느 장애인단체보다 우수하다는 평가와 함께 인센티브로 보조금이 1천만원 상승하였고, 더불어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산 1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계업무처리는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감사를 실시한 바, 총 2,371,315천원의 세입액 중 2,162,315천원이 지출되고, 209,000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감사들은 전체적인 평가에 있어 첫째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협회와 지방협회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사업계획이 공유되고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협회 규정 제19조에 의하면 지방협회의 사업계획 및 실적, 결산보고서 등을 중앙협회에 제출해야 함에도 이러한 서류가 중앙협회에 비치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으며, 둘째,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는 모두 구비되어 기재되고 있으나, 본 협회 정관 및 예산회계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야 함에도 예·결산서 편성 등이 이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회원시설의 지원과 협회사업 진행을 위해 외부지원사업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다 노력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끝.

## 감 사 보 고 서

본 감사들은 2014. 2. 6.(목) 협회 사무실에서 민법 제67조 및 협회 예산회계규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2013. 1. 1.부터 2013. 12. 31.로 종결되는 국고회계, 자체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제반 증빙서류와 통장 및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집행업무에 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였는 바 감사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 감사내용 1부.

2014 년 2 월 6 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감 사 : 이 혜 순 

감 사 : 박 광 수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귀하

## 검 토 보 고 서

본인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2013. 1. 1.부터 2013. 12. 31.로 종결되는 회계연도의 수지결산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검토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사)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에 의거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였습니다.

이에 동 협회의 2013년 회계연도의 수지결산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예·결산서 작성에 있어 국고사업과 자체일반사업을 구분하여 세입·세출과목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입·세출과목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권고하였습니다.

2014 년 2 월 5 일

세립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심 창 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귀하



부의안건 심의

의안번호	제 1 호	의 결 사 항
의결년월일	2014년도 정기총회 2014. 2. 27.	

제1호 의안 : 2013년도 사업평가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출자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임 성 현
제출년월일	2012. 2. 27.

제1호 의안 : 2013년도 사업평가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의결주문

- 본회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2013년도 본회 중앙회의 사업평가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의결 주문함

제안이유

- 2013년도 본회 중앙회의 사업평가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2014년도 정기이사회(2014.2.11.)를 통해 승인을 받고, 본 총회에 상정하게 됨

주요내용

- 2013년도 사업평가 및 결산서 붙임자료 참조

의결사항

- 협회 중앙회의 2013년도 사업평가 및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함

- 붙임 1. 2013년도 사업평가  
2. 2013년도 결산서

2013년도 사업평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2013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업평가

## I. MISSION

- 인권과 노말라이제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육성·발전을 통하여 장애인복지 증진과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

## II. VISION

- 장애인 권익강화와 자립지원
- 장애인 복지시설 정책 주도적 개발
- 회원의 전문성 및 변화대응을 위한 역량강화

## III. 2013년 운영목표

- 목표 1.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법인 및 사무국 운영
- 목표 2. 회원시설의 자조적 역량강화 및 전문화 지원
- 목표 3. 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
- 목표 4. 사회공헌단체와의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형성
- 목표 5. 장애인복지시설 정책·제도의 변화 선도
- 목표 6.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를 통한 이용자 인권 보장 강화

### 목표 1.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법인 및 사무국 운영

#### 1. 사업명 : 총회 및 이사회 운영

##### 가. 사업목적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개선과 발전 방안에 대한 생산적인 제안을 모색하고 협회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와 주요 현안을 처리하며 회원 간의 의견과 정보교류를 위함

##### 나. 세부사업내용 및 실적

사업명	목표	성과(실적)	세부평가
총회	○ 정기총회 1회	○ 정기총회 : 2월 19~20일, 경주 현 대호텔	○ 제11대 협회장 선거 진행함. ○ 사업계획에 의해 원활하게 진행됨
이사회	○ 정기이사회 1회, 요청시 임시이사회 진행	○ 정기이사회 : 1월 29일 ○ 제1차 임시이사회 : 4월 11일 ○ 제2차 임시이사회 : 12월 18일	○ 법인 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의견개진이 있었음

##### 다.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총회 및 시설장대회는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었으나, 이사회 개최 횟수가 많아 안건 및 개최시기에 대한 사전 고려 및 조정이 필요함

## 2. 사업명 : 사무국 운영

### 가. 사업목적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법인 및 사무국 운영을 통해 사무국 운영의 안정성 도모 및 시도협회와의 연대 강화, 회원의 체계적 지원

### 나. 세부사업내용 및 실적

사업명	목표	성과(실적)	세부평가
이취입식	1회	○ 제11대 협회장 취임식 : 3월 14일, 서울여성프라자	○ 총155명 참석 (내빈35명, 회원시설80명, 기타40명) 원활하게 진행됨.
입원 연수및교육	3회	○ 제11대 임원 워크숍 : 5월 22~23 ○ 제11대 회장단 일본 연수 - 7월 11~13일, 장소 : 일본 기타규슈육성회 ○ 긴급 부회장단 회의 : 8월11일	○ 협회 정책 운영 방향 모색 및 임원단합의 기회가 되었음.
법인등기관련	1회	○ 법인입원 신임·중임 변경 및 분사무소 이전등기	○ 중임등기 : 21인, 신임등기 : 14인, 법인분사무소 이전 등기 8개소 변경함.
법인감사	1회	○ 정기감사 - 회계감사 : 1월11일 회계사 : 심창호 - 내부감사 : 1월16일 감사: 윤경렬, 정학수	○정기감사 1회 실시
시도협회 운영비지원	1회	○ 11개 시도협회 운영비 지급 1회	○기존에는 11개 시도협회에 지원금의 형태로 개별 지원되었으나 16개 시도협회 간사 해외연수로 진행됨
시도협회 간담회	2회	○ 1차 사무국간담회 : 3월 22일 ○ 2차 사무국간담회 : 7월 02일	○ 지방협회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교류의 기회가 되었으며 점차적으로 횡수를 늘려 진행할 필요가 있음.

사업명	목표	성과(실적)	세부평가
신규회원가입	62회	○ 신규회원가입 62회	○ 지속적인 회원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주간, 단기 공동생활가정의 회원가입이 많았음.
인사위원회	12회	○ 신규채용 11회, 승진 1회	○ 직원 채용에 따른 신규채용 11회, 승진 1회 등 내부규정에 의해 인사위원회 12회 실시하였음
직원연수	4회	○ 2013년 사무국 직원 연수 :3월26~27일 ○ 신입직원 교육연수 : 4.15~16. ○ 사무국 직원연수 : 5.29~30. ○ 2013년 장애인거주시설 거주모형 개발을 위한 독일 연수 : 7월19~27일	○ 신입직원교육으로 협회 전반적인 현황 및 사업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사무국직원의 의사소통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연수가 진행됨.
협회일정관리	52회	○ 협회주요일정 보고 ○ 협회장 업무 지원	○ 매주 협회 주요일정을 회장에게 전송하여 일정 진행의 원활함을 도모 ○ 협회주요일정을 스마트폰과 동기화 하여 실시간 정보전달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홈페이지 및 인트라넷 관리		○ 협회 홈페이지와 인트라넷 개선 및 지속적 관리 ○ 관련 업무 활용도 증가와 업무방식 체계화	○ 서버 용량 확대 변경 ○ 인트라넷 오류 사항 수정
회원시설 지원		○ 협회 홈페이지에 접수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민원상황과 욕구를 파악하여 신속히 대응	○ 회원시설 민원업무 처리 ○ 시설정보관리 신청관리
			○ 영역별로 세분화 하여 답변함.

### 다.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협회 사무국과 시도협회의 의사소통 및 정보교류를 위하여 시도협회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분기별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보다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인트라넷관리 어려움으로 오류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 치 체계 변경이요하며, 도로명 주소 개정에 따른 회원시설 및 후원자 자료에 대한 보완 필요

**목표 2. 회원시설의 자조적 역량강화 및 전문화 지원**

**1. 사업명 : 이용정보제공시스템 운영**

**가. 사업목적**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장애인거주시설 정책 및 제도 수립의 기초 자료화

**나. 세부사업내용 및 실적**

사업명	목표	성과(실적)	세부평가
이용정보제공시스템 운영	- 이용정보제공시스템 운영	○ 이용정보제공시스템 오픈	○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로 인해 오픈 시기 지연됨.

**다.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지자체별 장애인거주시설 담당자 연락처 및 담당부서 추가 삽입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이용정보제공시스템 링크
- 회원가입 및 정보입력 안내

**2. 사업명 : 장애인거주시설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가. 사업목적**

- 시설경영컨설팅을 통해 회원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나. 세부사업내용 및 실적**

사업명	당초목표	성과(실적)	평가
장애인거주시설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 시설경영컨설팅 운영 100건	○ 분야별 경영지원자문위원 구성 ○ 온라인241건, 오프라인 25건 ○ 장애인거주시설 복지환경디자인 적용연구'복지환경디자인컨설팅 사례집'제작 ○ 온라인 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a href="http://suppor.kawid.or.kr">http://suppor.kawid.or.kr</a> )	○ 분야별 전문 자문그룹 구성과 온라인 경영지원센터 구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경영컨설팅 진행 ○ 디자인 사례집 제작을 통한 향후 기능보강사업 등 시설환경 개선 사업 지원가능(복지환경디자인+유니버설디자인)

**다.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시설운영에 대한 온라인 상시자문이 가능하게 되었고, 전문가의 확충과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경영자문체계가 구축됨
- 온라인 경영지원센터 구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영자문이 가능하게 되어 회원시설들의 민원요청에 편리성 마련
- 협회 내 자문단과 온라인 경영지원센터 활용에 대한 홍보 필요
- 복지환경디자인적용사례집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복지시설의 환경적인 변화 및 인식개선과 이용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기대

**3. 사업명 : 정책 및 분과위원회 운영**

**가. 사업목적**

- 장애인복지정책 변화에 따른 시설의 대응 방안모색과 지역별 다양한 정보공유와 정책제안을 통한 시설의 현실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협회의 정책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나. 세부사업내용 및 실적

사업명	당초목표	성과(실적)	평가
정책위원회	○ 1회	○ 4회 진행 ○ 정관 및 체규정 개정을 위한 회의 진행	○ 시설의 인권문제 관련한 다수의 언론보도, 정부와 국회등의 시설운영관련 지적에 따른 협회 내 자정기능 방안 마련
생활시설분과위원회	○ 2회	○ 1차 회의 : 6.19~20, 대전행복마을 ○ 2차 회의 : 10.29~30, 다소미집	○ 계획에 의해 원활하게 진행 ○ 지침개정안 마련을 위한 효과적으로 진행됨
주간, 단기, 공동생활가정분과위원회	○ 각 2회(6회)	○ 1차 회의 : 5.3~4, 양지파인리조트 ○ 2차 회의 : 8.29~30, 다소미집 ○ 3차 회의 : 12.3~4, 서울여성프라자 ○ 4차 회의 : 12.26~27, 아산온천호텔	○ 3개 분과가 분리회의 하지 않고, 전년도처럼 공동으로 회의 진행 ○ 위원 2명 추가 선임 ○ 분과위원의 회의참여가 요구됨 ○ 지침개정안 마련과 주간매뉴얼개발을 위한 회의가 효과적으로 진행됨 ○ 지역별 종사자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이루어짐

다.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시설 서비스 개선, 이용장에 대한 인권보장과 시설의 윤리적 운영을 위한 정관 개정안 마련을 위해 계획보다 많은 정책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실효적인 정관 개정안 마련에 기여
- 정책 및 제도, 지침 등에 대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도를 분과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협회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분과위원회 운영 유도
- 분과위원의 참석율을 제고하고, 시설간 교류도 활성화 되도록 협회 지원

4. 사업명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네트워크사업

가. 사업목적

-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 영역별, 시설유형별 종사자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제도 개선 및 영역별 교육계획 수립.진행, 연구 등 실무자의 주도적 활동을 통해 회원의 자조적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

나. 세부사업내용 및 실적

사업명	목표	성과(실적)	세부평가
직무영역별, 시설유형별 종사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대상 : 간호, 물리치료, 사회생활재활, 영양, 자원개발 네트워크 위원 40명 ○ 실적 - 네트워크 모임 횟수 총41회 - 네트워크 모임 인원 683명 *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표준 매뉴얼 자료 배포70부: 2/5 * 위원장 사전회의(1회): 4/26 * 1기 해단식(1회): 5/10 * 2기 위촉식(1회): 7/18 - 네트워크 모임 횟수 총25회 - 네트워크 모임 인원 총175명 ○ 목표 - 네트워크 모임 횟수 총25회 - 네트워크 모임 인원 총175명 ○ 내용 - 각 직무영역,시설유형별 종사자 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 정보공유 - 제도관련 제언 및 연구	○ 대상 : 간호, 물리치료, 사회생활재활, 영양, 자원개발 네트워크 위원 40명 ○ 실적 - 네트워크 모임 횟수 총41회 - 네트워크 모임 인원 683명 *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표준 매뉴얼 자료 배포70부: 2/5 * 위원장 사전회의(1회): 4/26 * 1기 해단식(1회): 5/10 * 2기 위촉식(1회): 7/18 * 간호모임(3회): 9/6, 10/29, 11/15 * 물리치료 모임(5회): 8/26, 9/24, 10/29, 11/20, 11/22 * 영양사 모임(4회): 9/13, 10/7, 11/6, 11/8 * 사회·생활(2회): 10/4, 10/31~11/1 * 자원개발(1회):9/5~6 * 광주시 직종별 네트워크(1회) : 12/16 * 주간기,공동생활가정 지역별 네트워크(16회): 7/26, 8/24, 9/10, 10/11, 10/24, 10/25, 10/29, 11/15, 11/27, 12/3, 12/11, 12/17, 12/18(2곳), 12/19, 12/27	○ 2012년에 준비한 매뉴얼 제작이 완료되어 발간·배포하였음. ○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면서 1기위원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네트워크 진행을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었음 ○ 직무별 네트워크 위원들이 직접 해당 영역의 종사자 교육을 기획 진행하여 교육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교육의 질을 높임 ○ 하반기에 2기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었음 ○ 자원개발분야 등 활동물이 적조한 네트워크에 대한 독려 필요

다.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종사자 간 원활한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었음
-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표준 매뉴얼 배포 및 네트워크 위원들의 주도하에 직무영역별 교육이 진행되어 각 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었음
- 2014년에는 2기 네트워크로 새롭게 구성된 네트워크 위원들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직무 영역과 시설유형에 따른 종사자의 역할 정립 및 연대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로도모하고자 함

5. 사업명 : 장애인권리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이용자참여축제

가. 사업목적

- 시설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이용자 참여 및 표현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시설의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축제를 통한 사회통합의 계기 마련

나. 세부사업내용 및 실적

사업명	목표	성과(실적)	평가
2013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참여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지역주민 등</li> <li>○ 목표: 1회</li> <li>○ 내용: 지적발달장애인 권리표현/예능표 현대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지역주민 등</li> <li>○ 실적 1회: 1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가팀 9팀</li> <li>- 공연참가 및 관람 총 22개 기관, 228명</li> </ul> </li> <li>○ 내용: 음악분야/무용분야/기타예술분야 총9팀 경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이용장애인의 권리 및 자기표현의 기회가 제공되었음</li> <li>○ 문화예술 표현과 함께 9개팀 참가팀간 교류의 시간이 됨</li> <li>○ 시설장애인의 문화 참여 기회확대로 질 높은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의 계기가 됨</li> <li>○ 대학생 및 시민의 참여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되었음</li> </ul>

다.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시설 이용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여 노래·풍물·연극·자기주장발표·춤·동영상 등의 방식을 활용, 장애인이 직접 자신의 권리를 표현하며 매년 그 방식이 다양화 되어가고 있음
- 단발성으로 끝나는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1회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본 대회 참여 및 수상을 목표로 각 시설에서는 장애인 자기계발을 위한 노래·풍물·연극 등 다양한 지원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중앙협회에서 치러지는 축제인 만큼 전국 장애인복지시설의 참여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목표 3. 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

1. 사업명 : 종사자 상시 교육

가. 사업목적

- 장애인복지시설 현장 욕구에 기반 한 교육과정으로 시설 간, 혹은 종사자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전문성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나. 세부사업내용 및 실적

사업명	목표	성과(실적)	세부평가
교육기관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li> <li>○ 목표: 2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li> <li>○ 시기 : 5.16, 7.3, 12.24</li> <li>○ 실적 : 3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복지 실천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연계성 확립 및 기관별 특성에 부합한 교육 진행 계획 수립이 가능하였음</li> </ul>
직급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거주시설 CEO교육</li> <li>○ 대상: 장애인거주시설장</li> <li>○ 목표: 2회/ 80명</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장애인복지패러다임과 환경의 변화, 장애인 인권과 서비스 이용보장,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적용방안, 인사노무관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장</li> <li>○ 시기 : 4.8~4.10 / 9.4~6</li> <li>○ 실적 : 2회 / 62명</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협력진행</li> <li>-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으로 연계진행</li> <li>- 새로운 장애인복지패러다임과 환경의 변화, 장애인 인권과 서비스 이용보장,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적용방안, 인사노무관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부터는 인력개발원 교육과정이 보수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른 대안교육이 필요함. 시설장 대상의 교육을 계획하되, 인력개발원의 교육과 차별화 되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공동생활가정, 주간, 단기거주시설 시설장 교육</li> <li>○ 대상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주간, 단기거주시설 시설장</li> <li>○ 목표 : 1회 / 80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주간, 단기거주시설 시설장</li> <li>○ 시기 : 10.10~11</li> <li>○ 실적 : 1회 / 59명</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문학, 복지요결, 장애인거주시설 정책 동향,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 실천관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가자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후 교육에서는 시설의 정책 현안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음.</li> <li>○ 교육 일정을 구성할 때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식사시간을 피하여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함.</li> <li>○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하여 장애인 주간단가공동생활가정 네트워크 지원이 필요.</li> </ul>

사업명	목표	성과(실적)	세부평가
장애인 주간, 단기,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장애인 주간, 단기, 공동생활가정 종사자</li> <li>○ 시기 : 11. 21~22</li> <li>○ 실적 : 1회 / 20명</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사회사업 이론, 실천사례 토론 등 종사자의 사회복지 마인드 및 가치와 철학 정립</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단위에 장애인 주간, 단기거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의 집합교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부산에서 진행하게 됨.</li> <li>○ 참가 대상자들의 근무조건상 집합교육 참여에 어려움이 따랐음.</li> <li>○ 소규모시설 종사자들의 집합(외부)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개입이 필요함.</li> </ul>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향상 위한 시설장 아카데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시설장</li> <li>○ 시기 : 8.27~29</li> <li>○ 실적 : 1회 / 8명</li> <li>○ 내용: 복지요결, 야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과정에 참여할 인원 모집 시 사전에 진행방식, 내용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모집안내 및 접수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함.</li> </ul>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설장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시설장</li> <li>○ 시기 : 11.26</li> <li>○ 실적 : 1회 / 39명</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사회사업 이론,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가치와 윤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현장 사례로 한 과정으로 선정하여 복지요결이 현재 제도, 정책 속에서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계기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월평빌라 박시현 국장)</li> </ul>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실무자(사무국장) 연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사무국장</li> <li>○ 목표 : 1회 / 200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장애인거주시설 사무국장</li> <li>○ 시기 : 5.21~22</li> <li>○ 실적 : 1회 / 241명</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거주시설 현재와 향후방향,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효율적인 평가 대응 전략 및 질의응답</li> <li>- 2013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사업 안내 및 정책방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수회 계획 수립 시 사전답사, 일정구성, 업무분장, 예산사용 등 다소 철저하게 계획하여 사업 진행하도록 함. 또한 연수회 준비 전 시도별 담당자 의견을 토대로 진행하였으나, 추후에는 전국 회원시설 사무국장단의 의견 및 육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li> <li>○ 지리적 접근성의 이유로 대전지역에서 연수회를 개최하였으나, 향후에는 사무국장단의 원활한 네트워크 및 쉽 여유를 위한 일정과 그에 부합하는 장소를 선정하여 진행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제주, 강원 등) 참가인원 구성 시 협회 회원시설 수에 비례하여 인원계획 구성. 회원시설의 60% 정도로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사료됨</li> </ul>

사업명	목표	성과(실적)	세부평가
장애인 거주시설 물리치료사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 물리치료사</li> <li>○ 목표 : 1회 / 100명</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거주시설 물리치료사업무관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물리치료사</li> <li>○ 시기 : 11.21~22</li> <li>○ 실적 : 1회 / 102명</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거주시설 물리치료사 업무관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1회 진행되는 직무별교육인만큼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음.</li> <li>○ 직무별네트워크에서 주도하여 계획하고 진행하므로 원활한 운영이 가능 하도록 지원 할 필요가 있음.</li> <li>○ 특히 교육시기가 11월로 집중되면 바쁜 시설일정과 중복되는 등 시기에 대한 불편한 호소가 있었으므로, 2014년에는 보다 앞당겨서 진행할 필요가 있음.</li> </ul>
직무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 간호사</li> <li>○ 목표 : 1회 / 100명</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거주시설 간호사 업무관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간호사</li> <li>○ 시기 : 11.14~15</li> <li>○ 실적 : 1회 / 113명</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거주시설 간호사 업무관련</li> </ul> </li> </ul>	
장애인 거주시설 영양사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 영양사</li> <li>○ 목표 : 1회 / 100명</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거주시설 영양사 업무관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 영양</li> <li>○ 시기 : 11.7~8</li> <li>○ 실적 : 1회 / 122명</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거주시설 영양사 업무관련</li> </ul> </li> </ul>	
장애인거주시설 인권관점 실천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li> <li>○ 목표 : 2회 / 80명</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관점 실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li> <li>○ 시기 : 4.22~24</li> <li>○ 실적 : 1회 / 18명</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인권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관점,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관점 실천 사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부터는 인력개발원 교육과정이 보수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른 대안교육이 필요함.</li> <li>○ 서비스 최저기준 적용을 위한 과정의 경우 교육보다는 각 시설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교류 및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li> </ul>
장애인거주시설 최저서비스 기준 실천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li> <li>○ 목표 : 2회 / 80명</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거주시설 최저서비스기준과 실천과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li> <li>○ 시기 : 4.24~26</li> <li>○ 실적 : 1회 / 24명</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최저기준의 이해,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최저기준 적용,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최저기준 적용사례 및 실천과제</li> </ul> </li> </ul>	

사업명	목표	성과(실적)	세부평가
장애인가주시설 실천현장 희망연수	○ 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 목표 : 7회 / 280명 ○ 내용 - 시설 사회사업 이론, 실천사례 토론 등 종사자의 사회복지 마인드 및 가치와 철학 정립	○ 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 시기 : 3.12~15, 4.23~26, 9.3~6 ○ 실적 : 3회 / 91명 ○ 내용 -시설 사회사업 이론, 실천사례 토론 등 종사자의 사회복지 마인드 및 가치와 철학 정립	○ 충분한 토론과 참여가 가능하도록 경력과 직급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모집 및 운영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복지시설사회복지사를 위한 복지요령 강좌	-	○ 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 시기 : 3.12, 3.19, 3.26, 4.2, 4.9 ○ 실적 : 5회 / 19명 ○ 내용 -시설사회사업 적용 등 장애인복지의 실천 가치와 시설 및 직원의 정체성 확립	
주 제 별 교 육 실 시 장애인가주시설 힐러스 캠프	-	○ 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시기:3.27~29,5.29~31,9.25~27, 10.23~25, 11.23 ○ 실적 : 5회 / 375명 ○ 내용 -종사자의 심리적 정서적 회복 기회의 과정 구성	○ 외부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하였기 때문에2014년 지속여부는 불투명함. 업무관련 주입식 강의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휴식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교육에 만족도가 높았음.
장애인복지시설생활예술지도자아카데미	-	○ 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 시기 : 8.21~21,12.11~13 ○ 실적 : 2회 / 148명 ○ 내용 -생활예술 감수성 향상과정, 악기를 통한 이용자 간의 소통과 화합의 know-how	○ 예산지원 규모가 컸기 때문에 2014년에 그대로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종사자들의 쉽고 재충전을 위한 교육의 형태는 유지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장애인가주시설 내부 사업 평가 사례발표 및 설명회	-	○ 대상 : 시설 종사자 ○ 시기 : 11.28 ○ 실적 : 1회 / 21명 ○ 내용 -내부평가 월평빌라 사례 및 정보교류	○ 2013년에 시범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시설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음. 2014년에 정규 교육과정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다.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교육실시기관과의 원활한 유대.협력관계 유지로 교육 구성의 다양화 및 연계 강화가 가능하였음.
- 각 직급별, 직무별, 주제별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업무와 관련된 지식정보 및 종사자간 교류뿐만 아니라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시간으로 구성되어 운영한 교육도 마련되어 만족도 높은 양질의 종사자 교육연수가 이루어졌음.
- 2014년에는 보다 구조화된 교육체계 구축방안 마련 필요: 해마다 진행되는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종사자별 특성과 전문성 정도에 따라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되어야 종사자들의 소진을 예방하고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음.

2. 사업명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

가. 사업목적

- 회원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유지 지원 및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문교육으로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 향상 도모

나. 세부사업내용 및 실적

사업명	목표	성과(실적)	세부평가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 및 시도협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원	○ 대상 :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 목표 : 1,000명(20회) ○ 내용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승인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교육 운영 - 16개 시도협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원	○ 대상 :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 시기 : 3월 ~ 12월 ○ 실적 : 1,413명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총 29 과정 운영 - 참가자 1,413명 이수 완료 - 서울, 경기, 광주, 전북, 강원, 경북지역 시도협회 보수교육 운영	○ 2013년 상반기까지는 보수교육 참가비를 중앙협회에서 관리하였으나 하반기부터는 각 지방협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 진행관리, 수수료 등의 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 전체 관리는 중앙협회에서 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실무, 문서작성 및 관리(결과보고, 변경신청 등) 등은 지방협회에서 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철저한 점검과 지원이 요구됨.

다.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시도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각 해당 시도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협회는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서 시도협회에 행정상의 지원 및 중앙협회 교육을 보수교육으로 연계 운영하도록 함
- 보수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시도별 장애인복지시설협회 보수교육 운영상의 통일성 확보
- 수시로 시도협회 및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 관련 의견 수렴

3. 사업명 : 국외 전문가 초청세미나

가. 사업목적

- 장애인복지 선진국의 정책 및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 연계를 통한 국내 장애인거주시설 발전방안 모색

나. 세부사업내용 및 실적

사업명	목표	성과(실적)	세부평가
2013년 국외전문가 초청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이용자 및 보호자, 장애인복지에 관심 있는 시민 등</li> <li>○ 목표: 연1회 / 300명</li> <li>○ 내용: 미국, 영국, 독일 등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 및 거주서비스 지원체계에 대한 심포지움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이용자 및 보호자, 장애인복지에 관심 있는 시민 등</li> <li>○ 실적: 연1회(12/3~6)/총 405명</li> <li>○ 장소: 서울, 부산</li> <li>○ 주제: 장애인서비스를 주도하는 흐름</li> <li>○ 강사: 마이클 J. 켈드릭 (국제컨설팅 전문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인간중심, 개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 가치와 철학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li> <li>○ 선진국의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향후 장애인복지시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음</li> </ul>

다.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를 대비한 개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 제시가 가능하였음.

-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관계형성, 적용방법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음
- 2014년에는 장애인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 직능단체 등 유관 기관, 학교, 부모회 등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

4. 사업명 : 한·일·중 국제 장애인교류대회

가. 사업목적

- 한국, 일본, 중국 3국간의 장애인복지 정책 및 정보 교류를 활성화 하고 상호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기회 마련

나. 세부사업내용 및 실적

사업명	목표	성과(실적)	세부평가
2013년 한중일 당사자 국제교류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학계전문가 등</li> <li>○ 목표: 연1회</li> <li>○ 내용: 한국·중국·일본 장애인복지 심포지엄 및 장애인교류대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학계전문가 등</li> <li>○ 실적: 연1회(10/29~11/1)/총 34명(장애인당사자 17명, 종사자 8명, 학계전문가 2명, 협회 임직원 6명, 통역 1명)</li> <li>○ 장소: 중국 남경</li> <li>○ 내용: 국제장애인심포지엄 '장애인의 취업지원과 서비스', 당사자교류대회 '남경에서 손을 잡고, 꿈의 날개를 펼치자' (한국측 3팀 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자교류대회 발표를 통한 한중일 문화교류 및 역량강화가 되었음</li> <li>○ 한중일 장애인 당사자간 친목도모 및 교류확대의 기회가 제공되었음</li> <li>○ 한중일 장애인복지 정보 공유 및 협력강화의 계기가 마련되었음</li> </ul>

다.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2013년 3회째 맞이하는 한중일 당사자국제교류대회로 3개국의 장애인복지 사업 교류 및 장애인 당사자간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음
- 당사자교류대회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에 의한 퍼포먼스와 자기표현으로 한중일 장애인

- 및 실무자, 중국 국민들 등이 함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었음
- 장애인 스스로가 소질과 재능을 한 국가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으로 자존감과 역량강화의 기회가 되었음
- 국제장애인복지심포지움으로 '장애인의 취업지원'에 대한 3개국 전문가들의 의견과 토론을 통해 각국의 장애인복지 현황과 향후 방향 등에 대해 교류·공유할 수 있었음
- 한중일 장애인교류대회가 아시아 장애인복지발전의 토대가 되도록 지속적인 관계유지 및 연계

#### 목표 4. 사회공헌단체와의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형성

### 1. 사업명 : 결연후원 및 자원개발

#### 가. 사업목적

- 결연후원의 체계화를 통한 후원자 및 수원자 관리 효율성 증대 및 후원자원 개발 증대
- 자원개발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 및 이용 장애인의 지원체계 강화로 장애인시설 운영상의 복지증진

#### 나. 세부사업내용 및 실적

사업명	목표	성과(실적)	세부평가
후원자 개발 · 관리 및 결연후원금 지원	-국세청과 홈페이지를 활용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방식 변경 -후원자 감사서신 발송 (1회) -결연후원자-수원자간 라포형성을 위한 직접 연계(1회)	○ 신규 후원자 20명 ○ 결연후원자 관리 - 연간후원자 : 2,982명 - 실후원자 : 363명 - 연간수원자 : 3,688명 - 실수원자 : 457명 ○ 결연후원금 지급 - 결연후원금 50,610,900원 ○ 후원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 후원자 지도 발송 (매월) ○ 후원자 감사서신발송 (14'1월)	○결연후원자 개별기관으로 이관작업 약 30%진행, 이로 인해 후원자 및 후원금 지급 목표 대비 감소. ○결연후원자에 대해 해당 기관이 보다 현실적인 관리를 위해 기관 으로 이관작업 지속 필요.
기업사회 공헌 연계	- 후원시설에 후원물품 배분 10회	○ 후원물품지원사업실적 : 기부처(자) 19곳, 배분 25회 - 현대제철 : 재래시장상품권 - 메트라이트 : 응원이벤트 초청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롯데월드자유이용권, 곤충체험전 초대권, 제습기, KT SkyLife - 예술의전당 : 사진전 초대권 - 한국장애인개발원 : 음악회초대권 - 국립공원관리공단 : 자연나누리 초대권 - 해양경찰청 : 요트대회 초대권 - 서울시민영화제한국경중 : 찾아가는 영화제 - 금호시트 : 시트지 - (주)E1 : 워킹화, 점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과자, 의류 - 한아아이엔티 : 의류 및 신발 - (주)스엔코 : 유모차 - 박영주 : 온열매트	○후원물품배분 횟수 및 품목의 다 양화로 회원시설의 참여도가 높았음.

사업명	목표	성과(실적)	세부평가
기업사회 공헌 연계	-기업사회공헌 프로그램 사업지원 5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지원사업 시행 : 총 925,000,000원</li> <li>- (주)롯데 : 교육, 정책, 시설운영지원 / 200,000천원</li> <li>- (주)E1 : 시설 프로그램비지원 / 105,000천원</li> <li>- KB금융지주 : 다목적 여가활동 공간조성 지원 / 100,000천원</li> <li>- 현대제철 : 인권강사양성 지원 / 70,000천원</li> <li>- CJ CGV : 영화관람지원/10,000천원</li> <li>- 두산 : 힐러스캠프 지원/100,000천원</li> <li>- 아산사회복지재단 : 생활예술아카데미사업 지원 / 48,000천원</li> <li>- 한국에너지재단 : 겨울나기물품지원 / 292,000천원</li> <li>○ 지원사업 관련 협회 홈페이지 공지 및 회원시설 업무연락</li> <li>○ 기업재단과의 관계자 미팅</li> <li>○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자료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 외부 지원 사업의 다양화로 회원 시설의 욕구에 부합 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음.</li> <li>○ 기업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는 기업 욕구와 협회의 욕구에 맞는 지원사업 아이템의 다양성 및 참신성이 필요함에 대한 협회와 회원시설의 의견을 취합 및 정리할 필요 있음</li> </ul>
	-기업사회공헌지원사업 운영사례발표회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실시 : 2014년 사업계획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 사회공헌 지원단체 8개 사업 사업비 대비 83%가 2014년 3월에 사업종료 됨에 따라 발표회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2014년 실시로 변경.</li> </ul>

### 다.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결연후원자에 대해 해당 기관이 보다 현실적인 관리를 위해 기관으로 이관작업 지속 필요
- CJ CGV 객석나눔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통합에 기여
- 결연후원금 및 다양한 후원금(품)-재래시장상품권, 롯데월드자유이용권, 사진전, 응원초청권, 음악회 초대권, 요트대회 및 국립공원자연나누리 초대권 등의 지원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의 경제적, 정서적, 문화적 활동 증진
- E1 포인트 적립은 통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21개소 개별기관에 자체별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수혜기관별 만족도 증진
- KB금융그룹 및 후원금(품)지급 등 배분기관 선정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심사 및 현장심사,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해 전국 장애인복지시설의 공정하고 투명한 배분 지원으로 시설운영의 복지 증진

## 목표 5. 장애인복지시설 정책 · 제도의 변화 선도

### 1. 사업명 : 장애인복지정책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

#### 가. 사업목적

-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시행으로 인해 변화되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개정된 법 규정의 적용과 집행, 해석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며 회원 및 회원시설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욕구를 파악하여 정책변화 및 회원시설들의 욕구에 신속히 대응

#### 나. 세부사업내용 및 실적

사업명	당초목표	성과(실적)	평가
지역별 장애인복지시설 정책 및 지원현황 모니터링 사업	○ 장애인복지시설 지원현황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 전국 장애인복지시설 지원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발간 및 배포</li> <li>○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중앙환원 확정 (13.09.24 정부발표)</li> </ul>	○ 지속적 사업수행으로 지역별 편차자료 제시를 통해 중앙환원을 이끌어내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냄
정책인론 모니터링 및 주간정책동향 작성 배포	○ 모니터링 결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1회 주간정책동향 제작</li> <li>○ 홈페이지 업로드 및 회원시설 메일발송</li> </ul>	○ 정기적으로 장애인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계 전반의 현황을 회원시설과 공유함으로써 정책현안에 신속히 대처

### 다.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2015년 중앙환원에 대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정책 상향평준화를 위한 정책대응 추진
- 지역별 장애인 복지시설 정책 및 지원현황 모니터링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으로 2015년 중앙환원 이후 정책평가를 위한 근거자료 마련
- 정책·인론 모니터링 및 주간정책동향 공유하여 사회변화에 신속히 대처

## 2. 사업명 : 정책 및 교육 자문위원회 운영

### 가. 사업목적

- 협회 정책연구사업 및 교육연수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자문

### 나. 세부사업내용 및 실적

사업명	당초목표	성과(실적)	평가
정책 및 교육 자문위원회 운영	○ 정기회의 2회 ○ 입시회의 : 위원장 및 협회장 요구서, 온라인을 통한 상시 자문	○ 정기회의 : 2013.5.10 ○ 협회 내 전문자문위원회 구성 ○ 정책자문위원회 명단 : 김용득, 김동기, 백은령, 서동명, 이광원, 이승기, 양희택 ○ 장애인거주시설 중앙환원을 위한 개정안 자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 ○ 정기회 1회, 온라인 수시 진행	○ 우리나라의 장애인관련 최고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구성함 ○ 대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한 자문단 역할 수행

### 다.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협회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자문회의의 수시 자문기능 강화 필요
-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중앙환원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추진
- 시설의 인권침해 등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의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3. 사업명 : 정책연구사업

### 가. 사업목적

-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발의,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서비스체계 개편으로 인해 변화하는 장애인복지환경속에서 장애당사자의 권리에 기초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정책적 · 실천적 방향 모색

### 나. 세부사업내용 및 실적

사업명	당초목표	성과(실적)	평가
한국사회복지법인의 역사와 사회적 기여에 관한 연구	○ 장애인복지제도 및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역량강화	○ 예산관계로 보류	○ 2014년 사업으로 반영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종합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장애인거주시설 유형개편으로 변화된 정책내용을 반영한 매뉴얼 개발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종합매뉴얼 개발 ○ 2014년 3월 중 최종보고회시 자료배포 예정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전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함으로써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서비스 질 향상 도모

※ 1차 임시이사회에서 사업변경

### 다.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법,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서비스 최저기준 등 기 개발된 관련 매뉴얼의 비교, 검토 작업을 통해 포괄적이고 실용적인 매뉴얼 제작
- 현장전문가 참여로 활용도 높은 매뉴얼을 개발하였기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장 및 실무자들이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식, 정보, 실천방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것으로 기대

## 4. 사업명 :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정책 건의

### 가. 사업목적

-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발의 등 장애인복지환경의 빠른 변화 속에서 장애당사자의 권리에 기초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정책적 · 실천적 방안에 대한 정책 건의 실시

나. 세부사업내용 및 실적

사업명	당초목표	성과(실적)	평가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부(국회) 정책건의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건의 및 협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안 작성 및 건의	○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 내 개정 예정
	○장애인거주시설사업안 내 및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개정(안)건의	○정부에 제출 및 건의 ○국회에 관련 정책 건의 (최동익의원실, 김정록의원실) ○주요건의내용 - 근로기준법에 적법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 종사자 인력배치 추가 - 후원금 적·간접비 비용 삭제 - 후원금에서 자산취득비 사용 - 직종별 탄력적 종사자 고용 - 시설장 교육 강화 - 관리운영비 지원대상 추가 - 법인설립자 정년연장 - 기능보강사업단가 인상 등	○ 회원시설로부터 개정 건의안 의견수렴과 분과위원회의 지침개정안 회의, 협회의 정책자문을 통한 개정안 마련 ○ 국회의원을 통한 정부 설득 노력
	○장애인복지시설관련 정책건의	○ 주부식비 인상 1,583원→2,069원(486원 인상) ○ 2015년 중앙환원 정부발표 - 2013. 9. 24. 정부합동기자회견 ○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운영비 확보 - 1억원(장애인단체지원금 특화사업비)	○ 국회의원과 지역시설장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대 국회활동 -보건복지위원회 : 이목희, 김정록, 최동익, 이언주, 양승조, 김명언 -안전행정위원회 : 유승우 -예결위 : 최재성, 나성린, 김도읍, 류성걸, 김학용, 장윤석, 박법계, 김광림, 이근현, 이장우 -박병석의원, 김기현의원, 김상희의원, 원혜영의원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부(국회) 정책건의	○장애인복지시설관련 정책건의	○ 주부식비 인상 1,583원→2,069원(486원 인상) ○ 2015년 중앙환원 정부발표 - 2013. 9. 24. 정부합동기자회견 ○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운영비 확보 - 1억원(장애인단체지원금 특화사업비) ○ 근로기준법에 적법한 종사자원을 위한 정책건의 ○ 중앙환원 후속 법령개정 건의 -단기거주, 공동생활가정 포함을 위한 정책건의(김선미의원실, 유승우의원실, 김정록의원실, 이학영의원실)	○ 국회의원과 지역시설장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대 국회활동 -보건복지위원회 : 이목희, 김정록, 최동익, 이언주, 양승조, 김명언 -안전행정위원회 : 유승우 -예결위 : 최재성, 나성린, 김도읍, 류성걸, 김학용, 장윤석, 박법계, 김광림, 이근현, 이장우 -박병석의원, 김기현의원, 김상희의원, 원혜영의원 ○ 협회 추진사업을 회원시설들이 신속히 알 수 있도록 문자, 협회홈페이지, 소식지 발행(1,2,3호)

다.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국회의원과 지역 시설장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협회 현안관련 정책건의를 진행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둠(향후,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성 및 관리 필요)
-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개정에 대해 회원시설의 의견수렴과 국회를 통한 정부 설득
-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신속하게 회원시설에 전달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소식지 발송, 문자발송, 홈페이지활용 등을 통해 정보교류를 확대하여 회원시설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협조체계가 이루어짐 추진
-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 소규모화와 최저서비스기준이 시설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과 후속법령개정이 추진

5. 사업명 : 17개 시·도 지역별 정책간담회

가. 사업목적

- 전국 16개 지역별로 구분하여(세종특별시는 충청남도에도 포함)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시행으로 인해 변화되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과 지원방식, 지역별 현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회원시설 간 논의의 장 마련

나. 세부사업내용 및 실적

사업명	당초목표	성과(실적)	평가
17개 시도 지역별 정책간담회	○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별 간담회 실시 ○ 지역별 현안 및 장애인복지정책 변화에 대한 논의 진행	○ 2013년 11개 협회 11회 정책세미나 개최, 총 985명 참석(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남, 제주) ○ 2014년 5개 협회 5회 정책세미나 개최예정, 총 420명 참석예정(서울, 대구, 충북, 전남, 제주)	○ 지역별 수요를 만족시키는 정책세미나 진행을 위하여 각 시도협회에서 지역별 현안에 따른 자율적 주제선정과 주도적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금을 재배분하는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여 본 사업에 대한 회원시설의 자발적 참여 유도

다.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장애인복지정책 및 지역현안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협회 및 지역대표자(시·도 협회장) 간 논의와 협력을 위한 장 마련
- 공무원, 학계, 시설현장종사자들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정책을 공유하여 일관성 있는 장애인복지정책 실현

6. 사업명 : 장애인복지 정책세미나

가. 사업목적

-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시행 이후 변화되는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와 회원시설의 의견수렴을 통한 현실적인 정책제안의 장 마련

나. 세부사업내용 및 실적

사업명	당초목표	성과(실적)	평가
3교대 도입방안 마련 토론회 및 긴급시설장 대회	○ 변화된 장애인복지 정책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현실에 맞는 정책 제안	○근로기준법에 적합한 시설운영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3교대 도입 방안 마련 토론회 및 긴급시설장 대회 개최 (2013.07.17, 서울여성플라자) ○전국 회원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200여명 참석	○정부지침에 의한 2교대 근무제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3교대 도입을 주제로 국회의원, 전문가, 종사자 간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대통령 공약이행과 정부의 제도개선 촉구

다.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정책현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현실적인 주제발굴과 회원시설 욕구파악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체계적 장애인복지정책세미나 진행

목표 6.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를 통한 이용자 인권 보장 강화

1. 사업명 :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인권지킴이단'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교육 및 네트워크

가. 사업목적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시설별로 조직·운영되고 있는 인권지킴이단 네트워크를 통한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 도모

나. 세부사업내용 및 실적

사업명	목표	성과(실적)	세부평가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교육 및 네트워크	시도별 '인권지킴이단' 교육 및 네트워크 진행	○시도별 '인권지킴이단' 교육 및 네트워크 회의 진행(총 17회 진행, 531명 참여) 1. 서울 : 5.28, 40명 2. 대전 : 7.23, 28명 3. 경기남부 : 8.29~30, 35명 4. 인천 : 9.3~4, 26명 5. 부산 : 9.9, 26명 6. 울산 : 9.10, 32명 7. 대구 : 9.10, 28명 8. 경기북부 : 9.12~13, 22명 9. 경남 : 9.27, 61명 10. 강원 : 9.30, 26명 11. 충남 : 10.7, 27명 12. 충북 : 10.21~22, 31명 13. 광주 : 10.24~25, 22명 14. 전북 : 10.30~31, 28명 15. 전남 : 11.4~5, 29명 16. 경북 : 11.20, 48명 17. 제주 : 12.11~12, 22명	○ 인권지킴이단 담당자 대상의 교육 진행으로 네트워크 장 마련 ○ 참여형·토론식 인권교육 방식을 제시 ○ 교육 과정에 인권지킴이단 운영 모범사례 발표소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인권지킴이단 운영 방안 제시 ○ 시도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포함하여 교육 내용의 실효성 제고
	시도별 '인권지킴이단' 운영 모범 사례 공유	○ 시도별 교육에서 인권지킴이단 운영 모범사례 공유 및 시도 공무원 간담회 진행	

다.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와 인권지킴이단 담당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꾀하기에 일회성 교육에는 한계 존재,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인권지킴이단 대상 교육 필요
- 인권지킴이단의 실질적 활동을 담보하기 위해 시설장 대상의 인권교육 필요

2. 사업명 :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가. 사업목적

- 전국 지자체의 인권지킴이단 운영 지원 현황을 파악하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인권지킴이단 지원방안 모색

나. 세부사업내용 및 실적

사업명	목표	성과(실적)	세부평가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진행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모색	○ 16개 시도 협회를 중심으로 인권지킴이단 운영 현황 및 지자체의 지원 내용 등 실태조사 진행  ○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16개 시도 협회 인권지킴이단과 보건복지부 간담회 진행	○ 인권지킴이단 설치 이후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의식향상, 이용자 중심의 시설운영으로 변화되었다는 긍정적 평가 ○ 추가 인력 없이 기존 종사자가 인권지킴이단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서 오는 업무 과중의 문제가 있음 ○ 16개 시도 중 1개 지역에서만 인권지킴이단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다.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지원을 위한 인권지킴이단 전담인력 배치, 체계적인 업무 매뉴얼 마련, 지방정부의 예산지원 편성 등 개선점들이 요구됨
- 인권지킴이센터를 16개 시도에 설치하여 인권지킴이단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3. 사업명 : ‘인권지킴이단’ 수퍼비전 제공을 위한 워크숍 및 소모임 구성 운영

가. 사업목적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담당 종사자의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통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인권보장에 기여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의 소모임 구성 및 활성화를 통해 시설이용자의 인권상황을 교차 점검하고, 지원필요 사례에 대한 대안을 통한 시설이용자의 인권옹호에 기여

나. 세부사업내용 및 실적

사업명	목표	성과(실적)	세부평가
‘인권지킴이단’ 워크숍 및 소모임	6개시도를 대상으로 인권지킴이단 역량강화 워크숍 진행	○역량강화 교육 총8회 진행, 215명 참여 1회 : 경기남부(8.29~30), 35명 2회 : 인천(9.3~4), 26명 3회 : 경기북부(9.12~13), 22명 4회 : 충북(10.21~22), 31명 5회 : 광주(10.24~25), 22명 6회 : 전북(10.30~31), 28명 7회 : 전남(11.4~5), 29명 8회 : 제주(12.11~12), 22명	○인권지킴이단 담당자의 역할, 업무과중 등의 고충에 대한 정보 교류 ○인권지킴이단 모범 운영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의 장 마련
	6개시도에 역량강화 교육 이후 인권지킴이단 소모임 구성·운영	○5개시도 인권지킴이단 소모임 구성 (경기, 인천, 충북, 전남, 전북)	

다.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소모임이 지속되며 딜레마 사례, 시설의 구조적 문제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나, 심도 있는 논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수퍼바이저 필요

4. 사업명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교육 강사 양성

가. 사업목적

-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강사 양성

나. 세부사업내용 및 실적

사업명	목표	성과(실적)	세부평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교육 강사 양성	2013년 인권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 진행	○장애인거주시설 인권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 진행 1차 : 4.1~4(29시간) 2차 : 4.22~25(25.5시간) 3차 : 4.29~5.1(18.5시간) ○총 73시간 교육 진행, 31명 이수	○ 사전 기획회의(강의방식, 내용 결정)를 통해 일관된 흐름의 교육진행 ○ 인권활동가의 인권교육 가치, 내용, 진행방식 등을 벤치마킹하여, 시설 내 인권교육에 활용하는 등의 파급효과
	인권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심화 교육 진행-기본, 심화 총 100시간 이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교육 강사양성 심화과정 진행 1회 : 10.15~18(27시간), 30명 2회 : 11.11~14(27시간), 29명 ○27시간 심화교육과정 2회 진행, 59명 수료	○ 심화과정을 통해 기본과정 수료 후 본인의 교육경험공유가 가능해짐 ○ 심화과정을 통해 기본과정 수료생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 마련

다.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2013년 강사양성 과정 참가자 선정 과정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진행하였으나 2012년과 유사하게 진행되어 변별력을 높이기 어려웠음. 이에 논술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참가자를 선발함. 2014년에는 참가자 선정 방식의 변경 필요
-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들이 시설 내부에서 인권적인 관점으로 변화를 시도하며 좌절의 경험을 하고 있음. 기본과정 수료자들이 시설 내부에서 인권관점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좌절을 경험하거나, 시설을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교육 수료자들에게 대한 지지체계 구축 필요
- 심화과정이 인권교육 강의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의 완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도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있어 '심화과정'이라는 용어보다는 '2차 교육' 등의 대안적 용어 사용 필요
- 심화교육과정 이후 양성된 인권교육 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향후 보수교육 계획이 필요.

5. 사업명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인권보장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분석

가. 사업목적

-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인권현황 점검 및 향후 지원방안 모색

나. 세부사업내용 및 실적

사업명	목표	성과(실적)	세부평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인권보장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분석	보건복지부 지침 내 '이용자 인권현황 점검지표(종사자용)'지표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인권현황 점검	○ 전국 인권지킴이단 담당 종사자에게 실태조사 실시 ○ 설문지 351부 회수 ○ 전체 인권보장 실태 : 5점 만점에 평균 4.04	○ 복지부 지침 중 '거주시설 이용장애인 인권보장 세부 가이드라인 및 점검 기준'을 인권지킴이단 담당 종사자에게 적용하여 시설 이용자 인권보장 현황 파악 ○ 실태조사 분석 결과 인권보장 정도가 4.04점으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나 인권보장 항목에 따른 지역별 편차가 있었음. 이후 교육에서 각 지역에서 낮게 나타난 항목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다.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효율적인 시설 이용자 인권현황 점검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적 및 발달 장애인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점검도구 개발이 필요.
- 설문 결과 분석을 통해 지역별 인권교육 지원 및 정책제안의 근거로 활용 가능

6. 사업명 : 인권지킴이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홍보

가. 사업목적

-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 및 이용인 인권 관련 상담 사례 지원 기능 강화

나. 세부사업내용 및 실적

사업명	목표	성과(실적)	세부평가
인권지킴이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홍보	인권지킴이단 운영과 이용인 인권옹호 관련 상담 및 지원 기능 강화	○ 온오프라인 상담 209건 진행	○ 상담 중 시설 입소 관련 건의 비율이 높음
	인권지킴이지원센터 기능, 역할, 사업 내용에 대한 홍보	○ 한장협 소식지, 한장협 홈페이지, 인권지킴이지원센터 홈페이지, 보도자료 배포 및 기사화, 인권지킴이단 교육사업 등에서 인권지킴이지원센터 홍보 진행	○ 인권지킴이단 운영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대한 상담 건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센터 홍보가 더 이루어져야 함.

다.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인권지킴이지원센터에 의뢰되는 상담건수는 늘고 있으나 인권지킴이단 운영이나 이용자 지원서비스 방안 등의 상담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홍보 필요
- 현재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지킴이단 운영 지원 체계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인권지킴이지원센터가 유일함. 전국 개별 시설의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상담 체계 강화와 홍보 필요

2013년도 결산

2013년 결산총괄표(국고+자체+외부지원사업+특별)

(단위:천원)

항 목	세 입			세 출					
	계	국고	자체	항 목	계	국고	자체		
							소계	차지일반	외부지원사업
세 입 총 계	2,371,315	313,000	2,058,315	세 출 총 계	2,182,315	313,000	1,869,315	753,154	1,086,162
1. 국고보조금		313,000		1. 일반비	76,805		76,805		
가, 국고보조금		313,000		2. 인건비	482,135	189,000	302,135		
나, 국고보조금 이월금				3. 업무추진비	182,942		182,942		
2. 회비수입			552,135	4. 재산조성비	29,902		29,902		
3. 후원금수입			854,576	5. 결의후원 및 지원개발사업	758,567	29,000	729,567	54,571	674,997
가, 지원후원금			806,464	6. 교육연구사업	287,834	32,000	255,834	92,058	163,776
나, 지원후원금(결의)			44,662	7. 정책연구사업	92,602	14,000	78,602	4,376	74,226
다, 비지정후원금			3,540	8. 시설운영지원사업	135,125	52,000	83,125	8,462	74,663
4. 잡수입			237,174	9. 인건관리지원센터	115,772	5,000	109,772	1,270	108,501
가, 교육 및 행사비 수입			215,622	10. 잡지출	633		633		
나, 기타수입			21,722	11. 예비비					
5. 이월금			414,431	차년도 이월금	209,000		209,000	182,150	16,850
가, 원인이월금			399,904	- 경성비이월금	182,783		182,783	182,783	
나, 결의후원금			15,507	- 사업비이월금	16,850		16,850		16,850
				- 결의후원이월금	9,368		9,368	9,368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과 목 전 용 조 서

(단위 : 원)

과목				전용 연월일	예산액 (1)	전용액 (2)	예산현액 (1+2=3)	지출액 (4)	불용액 (3-4)	전용 사유
관	항	목	세목							
자체 일반	운영비	운영비	진산사 이트관 리비	2013.4.16.	1,380,720	251,460	1,632,180	1,632,180	0	예산초과
자체 일반	교육 사업	교육사 업	사회복 지사보 수교육 지원	2013.5.1.	3,000,000	22,000,000	25,000,000	24,780,360	219,640	예산초과
자체 일반	교육 사업	교육 사업	기타 교육 연수사업	2013.5.1.	60,000,000	58,000,000	118,000,000	66,466,752	51,533,248	예산초과
자체 일반	정책연 구사업	정책연 구사업	정책 세미나	2013.7.3.	0	3,828,590	3,828,590	3,828,590	0	예산미배정
자체 일반	운영비	운영비	법인등 기 수수료	2013.7.15.	2,200,000	300,000	2,500,000	2,405,080	94,920	예산초과
자체 일반	외부지 원사업	외부지 원사업	kb금융 그룹	2013.8.30.	0	100,000,000	100,000,000	97,689,000	2,311,000	예산미배정
자체 일반	운영비	제세 공과금	환경 개선 부담금	2013.9.16.	81,390	36,820	118,210	118,210	0	예산초과
자체 일반	운영비	제세 공과금	신원보 증보 혐료	2013.10.2.	64,400	38,640	103,040	103,040	0	예산초과
자체 일반	운영비	운영비	운영 감비	2013.10.31.	2,300,000	444,250	2,744,250	2,621,830	122,420	예산초과
자체 일반	업무 추진비	기관 운영비	사무국 업무 추진비	2013.11.22.	21,600,000	4,000,000	25,600,000	23,674,410	1,925,590	예산초과
자체 일반	운영비	공공 요금	사무실 관리비	2013.12.2.	22,800,000	92,724	22,892,724	22,892,714	10	예산초과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예금잔액차이 명세서

2013.12.31기준

번호	분류	응도	계좌번호	통장잔액	장부잔액	차액	비고
1	국고	국고	176-910002-45704	83,336	-	83,336	국고사업에 배운 여가 수입(합 83,336원) 2014년도 반환예정
2	자체 일반 사업	지체일반	(하나-) 176-910002-43404	83,177,555	151,607,015	- 68,429,460	2013년 액 사정할 경우(합 200,000원) 2014.01.06 당월 2013년 11월 지체회계수입(합 1,188,110원) 2014.01.07 계정(제) 2013년 12월 지체회계수입(합 3,793,390원) 2014.01.07 계정(제) 2013년 11월 부가경 통장(합 200,000원) 2014.01.07 계정(제) 2013년 12월 부가경 통장(합 200,000원) 2014.01.07 계정(제) 보수교육(연회) : 248,600원 보수교육(연회) : 248,600원
3		행사비	(하나-) 176-910002-49204	31,125,537	31,175,537	- 50,000	
4		후원금	(하나-) 176-910002-41104 기타 후원금 통장 (씨티은행 외 9개)	76,777,150	9,367,690	67,409,460	* 후원금 통장잔액 중 2013년 11월~12월 지체회계 및 복지장부등록 2014.1.7. 지체(합 2,254,460원) * 2014년도 통장이 발행 : 2013.09.06(합 2,254,460원) / 11.27. 10월분 지체회계 관리할 과는 없음 * 기타 후원금 통장 : 2013.09.06(합 2,254,460원) / 11.27. 10월분 지체회계 관리할 과는 없음
5		비보의나눔지원사업	(하나-) 176-910002-35004	16,075	16,075	-	지정기부회(비보의나눔지원사업-비보의나눔지원사업)
6		한국에너지재단	(하나-) 176-910005-63304	800	800	-	지정기부회(비보의나눔지원사업-한국에너지재단)
7		메트라이프지원사업	(하나-) 294-910003-41504	17,981	17,981	-	지정기부회(비보의나눔지원사업-메트라이프지원사업)
8		현대제철사업	(하나-) 176-910008-31304	10,336,004	10,336,004	-	지정기부회(비보의나눔지원사업-현대제철지원사업)
9		이산재단지원사업	(하나-) 176-910002-34304	2,036,694	2,036,694	-	지정기부회(비보의나눔지원사업-이산재단지원사업)
10		CGV후원금지원사업	(하나-) 176-910007-55504	1,702,105	1,702,105	-	지정기부회(비보의나눔지원사업-CGV후원금지원사업)
11		사실운영지원사업	(국민) 813001-04-031050	422,444	422,444	-	지정기부회(비보의나눔지원사업-사실운영지원사업)
12		KB금융그룹	(하나-) 294-910001-49004	2,317,579	2,317,579	-	지정기부회(비보의나눔지원사업-KB금융그룹)
13		자 체 일 반 사 업	예수금	(하나-) 176-910007-86304	17,944,075	-	-
14	책자판매금		(하나-) 176-910007-12704	-	-	-	
15	결연후원(하나)		(하나-) 140-099634-00104	125,000	-	-	
16	결연후원(하나)		(하나-) 294-810015-91905	110,000	-	-	
17	보수교육(서울)		(하나-) 294-910014-48104	-	-	-	
18	보수교육(경기)		(하나-) 294-910014-49804	2,000	-	-	
19	보수교육(경북)		(하나-) 294-910014-50804	48,000	-	-	
20	결연후원지급관련		(하나-) 176-910002-40504	-	-	-	
21	카드대금(공공요금)		(하나-) 176-910002-47004	-	-	-	
22	조달통장		(하나-) 176-910005-47404	-	-	-	
23	미사용통장		(하나-) 294-910001-47704	-	-	-	
24	미사용통장		(하나-) 294-910001-81804	-	-	-	
25	E1오랜지포인트사업		(하나-) 294-910002-82204	-	-	-	
26	2014년제안행기책사업 안건모니터링		(국민) 813001-04-031063	-	-	-	
<b>계</b>				<b>226,242,335</b>	<b>208,999,924</b>	<b>- 986,664</b>	

의안번호	제 2 호	의 결 사 항
의결년월일	2014년도 정기총회 2012. 2. 27.	

제 2 호 의안 :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관한 사항

제출자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임 성 현
제출년월일	2012. 2. 27.

제2호 의안 :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관한 사항

의결주문

- 본회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2014년도 본회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것을 주문함

제안이유

- 2014년도 본회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2014년도 정기이사회(2014.2.11.)를 통해 승인을 받고 본 총회에 상정하게 됨

주요내용

- 붙임의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안) 참조

의결사항

- 협회 중앙회의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함

- 붙임 1. 2014년도 사업계획  
2. 2014년도 예산서

2014년도 사업계획(안)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2014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운영계획

## I. MISSION

- 인권과 노말라이제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육성·발전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과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

## II. VISION

- 장애인 권익강화와 자립지원
- 장애인 복지시설 정책 주도적 개발
- 회원의 전문성 및 변화대응을 위한 역량강화

## III. 2014년 중점추진방향

- 목표 1. 회원시설의 자조적 역량 및 책무성 강화
- 목표 2. 장애인복지시설의 전문성 및 서비스 질 향상
- 목표 3. 시설이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 목표 4. 시설 정책·제도 변화의 적극적 주도
- 목표 5. 사회복지직능단체에서의 중추적 역할
- 목표 6. 적극적 자원개발에 따른 회원시설 지원
- 목표 7.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무국 운영

## IV. 2014년 사업목록

목표	사업명	목표량	시 기	담 당	
1. 회원시설의 자조적 역량 및 책무성 강화	1-1. 시설유형별 분과위원회 운영	거주시설분과	4회	분기	정책지원실
		주간시설분과	4회	분기	정책지원실
		단기시설분과	4회	분기	정책지원실
		공동생활가정분과	4회	분기	정책지원실
	1-2. 종사자 네트워크 사업	-사회생활, 간호, 물리치료, 영양, 자원개발	72회	분기	교육연수
		-주·단기, 공동생활	24회	분기	교육연수
		1-3. 전문자문위원회 운영	4회	분기	기획실
		1-4. 회원시설 경영자문 지원	200건	연중	기획실
		1-5. 시설장 전문성 교육	2회	상하반기	기획실
	2. 장애인복지시설의 전문성 및 서비스 질 향상	2-1.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 직급별 교육	7회	연중
- 직무별 교육			5회	연중	교육연수
- 주제별 교육			9회	연중	교육연수
- 보수교육			16회	연중	교육연수
- 기타 교육연수			1회	연중	교육연수
2-2. 이용자참여 확대지원사업		- 이용자참여촉제	1회	10월	교육연수
		- 한중일 국제교류	1회	10월	교육연수
3. 시설이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3-1. 이용자 학대예방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	1회	상반기	인권센터	
	3-2. 인권지킴이단 모범운영사례발표회	1회	3월	인권센터	
	3-3.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모니터링	1회	연중	인권센터	
	3-4. 인권포럼(소모임)	16회	연중	인권센터	
	3-5. 이용자 인권보장 모니터링 결과보고 발표회	1회	11월	인권센터	
	3-6. 인권지킴이단 역량강화를 위한 변호사 지원	1회	연중	인권센터	

목표	사업명	목표량	시 기	담 당
3. 시설이용자 인권보장을 위 한 지원체계 강화	3-7. 인권교육강사 양성(기본과정)	3회	상반기	인권센터
	3-8. 온라인 및 전화상담 지원	상시	연중	인권센터
	3-9. 인권지킴이단 담당직원 인권교육	1회	5월	인권센터
	3-10. 인권지킴이단 장애당사자위원 역량강화교육	1회	10월	인권센터
	3-11. 인권지킴이단 네트워크(소모임)	8회	연중	인권센터
	3-12. 인권지킴이단 컨설팅 지원	10개소	연중	인권센터
	3-13. 인권지킴이단 지원사업 결과발표회	1회	11월	인권센터
4. 시설 정책· 제도 변화의 적극적 주도	4-1. 시설지원현황 모니터링	2회	5,10월	정책지원실
	4-2. 주간정책동향 작성	52회	매주	정책지원실
	4-3. 17개시도 지역별 정책간담회	8회	연중	정책지원실
	4-4. 정책세미나	1회	9월	정책지원실
	4-5. 정책연구(사회복지법인의 역사와 기여에 관한 연구)	1회	하반기	정책지원실
	4-6. 정책연구(SRV모텔 사례집)	1회	하반기	정책지원실
	4-7. 이용자 만족도 조사	1회	2월	정책지원실
	4-8. 장애인복지관련 법안 및 지침개정	수시	연중	정책지원실
5. 사회복지적 능단체에서의 중추적 역할	5-1. 사회복지적능단체와의 협력 및 공동추진사업	수시	연중	정책지원실
6. 적극적 자원 개발에 따른 회원시설 지원	5-1. 후원자 개발 및 관리	수시	연중	자원개발
	5-2. 장애인복지시설 맞춤형 자원연계	수시	연중	자원개발
	5-3. 기업사회공헌지원사업 운영사례 발표회	1회	10월	자원개발
6. 투명하고 계 계적인 사무국 운영	6-1. 총회 및 이사회 운영	3회	연중	기획실
	6-2. 사무국 운영	수시	연중	기획실
	6-3. 회원관리사업	수시	연중	기획실
	6-4. 16개 시도협회와의 연계 강화	4회	분기별	기획실

## 목표 1. 회원시설의 자조적 역량 및 책무성 강화

### 1-1. 사업명 : 시설유형별 분과위원회 운영 (■ 기존사업 □ 신규사업)

1. 목적 : 장애인복지시설간 정보공유와 네트워크를 통한 자조모임 활성화와 장애인복지실천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 모색과 제도개선을 위한 시설현장의 네트워크 구성과 지원 필요

2. 대상 : 시설유형별 분과위원

3. 실행시기 : 분기 1회, 총 12회(거주, 단기, 주간, 공동분과 × 3회)

4. 담당자 : 정책지원실

### 5. 세부 사업내용

- 1) 거주·주간·단기·공동생활가정 분과위원회 회의가 분기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 2) 분과위원회가 시설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체성 제고
- 3) 분과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단기·공동생활가정 분과의 경우 위원의 추가 선임
- 4) 협회의 지원과 아울러 분과위원회의 자생적 운영을 위한 역량강화 유도

6. 소요예산 : 10,0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산출근거	소요예산	비고
합계		10,000	
시설유형별 분과위원회 운영	- 회의비, 대관료, 식대 등	10,000	

1-2. 사업명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네트워크사업(■ 기존사업 □ 신규사업)

1. 목적 :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영역별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활성화

2. 대상 :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 영역별 네트워크 위원

- 사회, 생활 분야 / 간호분야 / 물리치료분야 / 영양분야 / 자원개발분야
- 주단기, 공동생활가정 분야

3. 실행시기 : 연중

4. 담당자 : 기획실 교육연수

5. 세부 사업내용

- 1)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 회의 : 직무영역별, 시설유형별 종사자 네트워크 정기 모임을 통한 정보교류 및 공유
- 2) 각 연1회 직무영역별 종사자 교육 계획 수립 및 진행
- 3) 연 1회 직종별 네트워크 연합 워크숍 진행
- 4) 직무 관련 제도·정책 제언, 전문성 향상과 정보공유를 통한 각종 연구·조사 등 직무별 종사자의 자조적 활동 지원
- 5)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을 통하여 서비스 영역에 대한 정보교류 및 코칭

6. 소요예산 : 46,800천원(보조금 30,0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산출근거	소요예산			비고
		보조금	자부담	계	
합계		30,000	-	30,000	
종사자 네트워크 사업	- 직무영역별 종사자 네트워크 회의비 2,400천원 × 5개	12,000	-	12,000	
	- 직무영역별 종사자 네트워크 연합 워크숍 1,000천원 × 5개	5,000	-	5,000	
	- 주단기 지역별 종사자 네트워크 회의비 2,000천원 × 5회	10,000	-	10,000	
	- 주단기 지역별 종사자 네트워크 진행비 600천원 × 5회	3,000	-	2,000	

1-3. 사업명 : 전문자문위원회 운영(■ 기존사업 □ 신규사업)

1. 목적 : 각 사업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며 협회 사업지원 및 자문, 그리고 참여를 통한 시설 전문성 향상 도모

2. 대상 : 각 분야 전문자문위원

- 경영지원자문위원회 / 윤리인권자문위원회 / 정책자문위원회 / 언론홍보자문위원회 / 교육자문위원회 / 자원개발자문위원회 / 법인공약추진위원회

3. 실행시기 : 연중

4. 담당자 : 기획실

5. 세부 사업내용

- 1)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 회의 : 협회 사업운영과 관련된 사업지원 및 자문활동 수행
- 2) 분야별 관련제도 및 정책 제언,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각종 연구 및 조사

6. 소요예산 : 6,400천원(보조금 6,4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산출근거	소요예산			비고
		보조금	자부담	계	
합계		6,400	-	6,400	
전문자문위원회 운영	- 회의비 32명×4회×50,000원	6,400		6,400	

1-4. 사업명 : 회원시설 경영자문 지원(□ 기존사업 ■ 신규사업)

1. 목적 : 각 사업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자문단을 운영하며 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시설의 시설운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함.
2. 대상 : 경영지원자문위원
  - 시설운영/개별 서비스/노무관련/정책지원/윤리인권/교육상담/언론홍보/자원개발 등
3. 실행시기 : 연중
4. 담당자 : 기획실
5. 세부 사업내용
  - 1) 협회 홈페이지와 연결되는 '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 완료함.
  - 2) 회원시설들의 시설운영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과 물음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문제를 해결

6. 소요예산 : 4,000천원(보조금 4,0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산출근거	소요예산			비고
		보조금	자부담	계	
합계		4,000	-	4,000	
경영자문 지원	- 자문비 200건×20,000원	4,000		4,000	

1-5. 사업명 : 시설장 전문성 교육(□ 기존사업 ■ 신규사업)

1. 목적 : 시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설장의 전문성 및 윤리의식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기에 시설장에 대한 전문성 교육을 실시함.
2. 대상 : 회원시설 시설장
3. 실행시기 : 상·하반기 1회씩
4. 담당자 : 기획실
5. 세부 사업내용
  - 1) 회원시설 시설장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명시된 인권교육에 같은 교육을 진행함.
  - 2) 보다 많은 시설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와의 협조체계 마련
  - 3)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심화교육이 가능하도록 진행
6. 소요예산 : 종사자역량강화사업 예산에 포함

**목표 2. 장애인복지시설의 전문성 및 서비스 질 향상**

2-1. 사업명 :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 기존사업 □ 신규사업)

1. 목적 :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과 종사자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시설장'과 '종사자'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장애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대상 : 본 협회 회원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3. 실행시기 : 연중

4. 담당자 : 기획실 교육연수

5. 세부 사업내용

- 1) 교육 관련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연간 교육 내용에 반영
- 2) 직급별 교육
  - 연6회 장애인복지시설 CEO교육 및 핵심리더 교육
  - 연1회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실무자(사무국장) 연수회
- 3) 직무영역별 교육
  - 연4회 직무별(물리치료사/간호사/영양사/자원개발) 교육
  - 연1회 주단기,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교육
- 4) 주제별 교육
  - 연5회 장애인복지시설 실천현장 희망연수
  - 연1회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를 위한 복지요결 강좌
  - 연2회 장애인복지시설 내부 사업평가 사례발표 및 설명회
  - 연1회 장애인복지시설 모범 운영사례 발표 및 토론회
- 5) 사회복지 보수교육

- 연 16회, 16개 시도협회와 연계하여 사회복지 보수교육

6. 소요예산 : 178,000천원(보조금 33,000천원, 자부담 145,0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산출근거	소요예산			비고
		보조금	자부담	계	
합계		33,000	145,000	178,000	
종사자 교육연수	- 직급별 교육 7회 × 6,000천원	12,000	30,000	42,000	
	- 직무별 교육 5회 × 8,000천원	10,000	30,000	40,000	
	- 주제별 교육 9회 × 5,000천원	10,000	35,000	45,000	
	- 사회복지보수교육 16회×3,125천원	-	50,000	50,000	
	- 기타 교육연수	1,000	-	1,000	

2-2. 사업명 : 이용자참여 확대 지원 사업 (■ 기존사업 □ 신규사업)

1. 목적 : 국내·외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증진 및 네트워크 형성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개발 능력과 삶의 질 향상

2. 대상 : 본 협회 회원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학계전문가 등

3. 실행시기 : 10월~11월

4. 담당자 : 기획실 교육연수

5. 세부 사업내용

- 1) 이용자참여촉제

- 연1회 전국 회원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함
  - 회원시설별 이용자참여축제 참가 접수(16개 시도협회 대회 수상자 우선 접수)
  - 음악, 무용, 자기표현 등의 분야에서 경연 형태의 예능발표회를 가짐
  -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의 자문 및 심사 요청
- 2) 한·중·일 당사자 국제교류대회
- 국제교류대회 협력 : 중국-강소성장애인연합회, 일본-기타큐슈시손을잡는육성회
  - 2014년 개최국: 일본
  - 한중일 사전협의를 통한 국제교류대회 계획
  - 2013년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참여축제 수상자를 우선으로 참가신청접수
  - 주요내용: 스피치대회, 퍼포먼스 대회, 심포지엄 주제발표 등

6. 소요예산 : 72,000천원(보조금 17,000원, 자부담 55,0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산출근거	소요예산			비고
		보조금	자부담	계	
합 계		17,000	55,000	72,000	
이용자참여 확대지원 사업	- 이용자참여축제 35,000천원×1회	15,000	20,000	35,000	
	- 한중일 당사자 국제교류대회 1,000천원 × 37명	2,000	35,000	37,000	

### 목표 3. 시설이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 3-1. 사업명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학대예방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

(□ 기존사업 ■ 신규사업)

1. 목적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시설 종사자들에게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행위와 기준을 교육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배포함.

2. 대상 :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3. 실행시기 : 2014년 1월 ~ 6월

4. 담당자 : 인권지킴이지원센터

5. 세부 사업내용

- 1) 학대예방 교육 자료집 제작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운영
- 2) 장애인복지법 상 '학대'와 '금지행위'로 규정된 행위에 대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자료를 e-book으로 제작하여 보급

6. 소요예산 : 9,6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산출근거	소요예산			비고
		보조금	자부담	합계	
합계		9,600	-	9,600	
이용자 학대예방 교육자료 제작	- 기획회의 10명x4회x80천원	3,200	-	3,200	
	- 기획회의 진행비(다과, 식사 등) 400천원	400	-	400	
	- 자료집 제작비(삽화, 편집) 6,000천원	6,000	-	6,000	

3-2. 사업명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모범 운영 사례 발표회

(□ 기존사업 ■ 신규사업)

1. 목적 :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지킴이단 모범 운영 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함으로써 시설에 인권지킴이단 운영 방안을 제시, 인권지킴이단의 기능을 강화함.
2. 대상 :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담당자 80명
3. 실행시기 : 2014년 3월
4. 담당자 : 인권지킴이지원센터
5. 세부 사업내용
  - 1) 인권지킴이단 교육(인권지킴이단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
  - 2) 인권지킴이단 운영 사례 발표
  - 3) 이용자 인권상황 점검지표 동영상 상영 및 제작 과정 소개
6. 소요예산 : 9,598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산출근거	소요예산			비고
		보조금	자부담	합계	
합계		-	9,598	9,598	
모범 운영 사례 발표회	- 기획회의비 70천원x3명 - 회의비 100천원x5명 - 진행비(다과, 식사 등) 11천원x8명	-	798	798	
	- 발표회 진행(강사비, 다과비, 대관비 등) 8,800천원	-	8,800	8,800	

3-3. 사업명 :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모니터링

(□ 기존사업 ■ 신규사업)

1. 목적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인권현황 점검(인권지킴이단 의무 사업)을 위한 모니터링 도구 개발과 모니터링 결과 분석을 통한 전국 인권지킴이단 자정기능 강화 및 모니터링 제도화 방안 마련
2. 대상 :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1000명
3. 실행시기 : 2014년 1월 ~ 12월
4. 담당자 : 인권지킴이지원센터
5. 세부 사업내용
  - 1) 시설이용자 인권현황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도구 개발 및 분석을 위한 기획위원회 운영
  - 2) 시설이용자 인권현황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도구 개발 (FGI 진행으로 의견 반영)
  - 3) 인권지킴이단 등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포럼'을 구성하여 이들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교육하여 모니터링을 진행
  - 4) 전국 16개 시도 시설이용자 1,000명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 5) 모니터 진행 후, 평가회의를 거쳐 모니터 요원의 의견을 결과분석에 반영·최종 결과 분석에 대한 발표회(혹은 토론회) 진행

6. 소요예산 : 63,16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산출근거	소요예산			비고
		보조금	자부담	합계	
합계		63,160	-	63,160	
이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모니터링	- 기획회의 8회x4명x100천원 - 진행비(다과, 식사비) 8회x4명x10천원	3,520	-	3,520	
	- 조사도구 개발비 2명x800천원x8월 - 삽화비 2,000천원	14,800	-	14,800	
	- 통계 및 분석비 2명x800천원x2월	3,200	-	3,200	
	- 모니터링 요원 교육 1,290천원x3회 - 자료집 제작 1,560천원 - 기타 진행비 170천원	5,600	-	5,600	
	- 모니터 요원 조사비 1,000명x30천원 - 모니터 참가자 선물 1,000명x2.5천원 - 진행비 3,540천원	36,040	-	36,040	

3-4. 사업명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포럼(소모임)(□ 기존사업 ■ 신규사업)

1. 목적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종사자들이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보 및 이용자 지원방안 공유, 발전적 대안 모색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결과적으로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시설이용자 인권보장 향상에 기여하게 함.
2. 대상 :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담당자
3. 실행시기 : 2014년 1월 ~ 12월
4. 담당자 : 인권지킴이지원센터

5. 세부 사업내용

- 1) 지역별 인권지킴이단 종사자들을 네트워크하여 소모임 구성
- 2) 지역별 인권지킴이단 소모임을 지속적으로 지원함

6. 소요예산 : 8,84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산출근거	소요예산			비고
		보조금	자부담	합계	
합계		-	8,840	8,840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포럼 운영비	- 회의비 2회x100명x30천원 - 진행비(다과, 식사비) 2회x100명x3천원	-	6,600	6,600	
	- 기타 진행비(출장비, 교통비 등) 2,240천원	-	2,240	2,240	

3-5. 사업명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인권보장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발표회  
(□ 기존사업 ■ 신규사업)

1. 목적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인권보장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발표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이용장애인 인권보장 현황을 보고하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한 시설의 자정기능 필요성을 인식 시키고자 함.
2.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인권보장에 관심 있는 사람
3. 실행시기 : 2014년 11월 ~ 12월
4. 담당자 : 인권지킴이지원센터
5. 세부 사업내용
  - 1) 전국 17개 시도 시설이용자 1,000명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결과에 대한 발표회 또는 토론회 진행

6. 소요예산 : 2,4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산출근거	소요예산			비고
		보조금	자부담	합계	
합계		2,400	-	2,400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발표회	- 발표비 200천원×2명=400천원 - 자료집 제작 15천원×100권=1,500천원 - 진행비 500천원	2,400	-	2,400	

3-6. 사업명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역량강화를 위한 변호사 지원

(□ 기존사업 ■ 신규사업)

1. 목적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이 지원해야 하는 시설이용자 관련 사례에 법률자문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지원하여 인권지킴이단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함.

2. 대상 :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3. 실행시기 : 대한변호사협회와의 MOU 체결에 따라 진행

4. 담당자 : 인권지킴이지원센터

5. 세부 사업내용

- 1)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와 MOU 체결을 통해 전국 대한변협에 소속된 변호사와 회원시설의 신청을 받아 1:1로 연결함.
- 2) 변호사의 인권지킴이단 연계를 통해 시설이용자의 인권옹호를 위한 법률 자문 진행, 인권지킴이단 운영 지원

6. 소요예산 : 없음

3-7. 사업명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교육 강사 양성(기본과정)

(■ 기존사업 □ 신규사업)

1. 목적 : 장애인거주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인권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강사양성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강사양성

2.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 30명

3. 실행시기 : 2014년 1월 ~ 5월

4. 담당자 : 인권지킴이지원센터

5. 세부 사업내용

- 1) 장애인거주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인권교육 강사양성을 위한 교육커리큘럼 개발
- 2) 개발한 교육커리큘럼에 의한 70시간 강사양성 교육과정 진행 및 수료자 배출

6. 소요예산 : 35,0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산출근거	소요예산			비고
		보조금	자부담	합계	
합계		-	35,000	35,000	
인권교육 강사양성 (기본)	- 교육생 선발과정(심사위원 다과, 식사, 심사비 등) 1,266천원	-	1,266	1,266	
	- 교육커리큘럼 개발(다과, 식사, 회의비 등) 5회x8명 x111천원	-	4,440	4,440	
	- 교육진행(강사비, 대관비, 식사비 등) 3회 29,294천원	-	29,294	29,294	

3-8. 사업명 : 전국 인권지킴이단 운영 및 시설이용자 인권 관련 사례 지원을 위한 온라인 및 전화 상담 지원

(□ 기존사업 ■ 신규사업)

1. 목적 :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지킴이단'에서 겪는 운영상의 어려움과 시설 이용장애인의 인권 관련 사례를 지원하기 위해 인권지킴이지원센터에서는 상담 핫라인 1899-0420과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www.1899-0420.co.kr](http://www.1899-0420.co.kr)을 통해 상담을 받고 관련 자문 제공
2. 대상 :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3. 실행시기 : 상시 운영
4. 담당자 : 인권지킴이지원센터
5. 세부 사업내용
  - 1) 전국 시설의 '인권지킴이단' 운영상의 고충 및 관련 정보 제공
  - 2) 시설이용자의 인권관련 사례에 대한 수퍼비전 및 전문 자문 제공
6. 소요예산 : 없음

◎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운영사업 (국고신청사업으로 3월 확정)

3-9. 사업명 : 인권지킴이단 담당 종사자 인권 교육

(□ 기존사업 ■ 신규사업)

1. 목적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시설별로 조직 운영되고 있는 인권지킴이단 종사자 교육을 통해 인권감수성 강화, 시설 간 이용자 인권관련 사례 지원 방안 공유
2. 대상 : 1개 지역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담당종사자
3. 실행시기 : 2014년 3월 ~ 5월
4. 담당자 : 추후 논의
5. 세부 사업내용
  - 1) 인권교육, 인권적 서비스 지원 방안 관련 등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강사 섭외
  - 2) 비숙박 2일 교육으로 교육과 동시에 종사자들이 네트워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
6. 소요예산 : 2,1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산출근거	소요예산			비고
		보조금	자부담	합계	
합계		2,100	-	2,100	
인권지킴이단 역량강화 교육 (종사자)	- 강사비 4명×250천원 - 대관비 400천원 - 기타 진행비 700천원	2,100	-	2,100	

3-10. 사업명 : 인권지킴이단 장애 당사자 위원 역량강화 교육

(□ 기존사업 ■ 신규사업)

1. 목적 : 인권지킴이단 장애 당사자 위원을 대상으로 장기간 인권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적인 상황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인권침해 사전예방 및 즉각적 지원요청에 영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
2. 대상 : 1개 지역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장애 당사자 위원
3. 실행시기 : 2014년 4월 ~ 10월
4. 담당자 : 추후논의
5. 세부 사업내용
  - 1)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 TFT 구성·운영
  - 2) 인권지킴이단 장애당사자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6회 진행(비숙박)
6. 소요예산 : 10,0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산출근거	소요예산			비고
		보조금	자부담	합계	
합계		10,000	-	10,000	
인권지킴이단 역량강화 교육 (장애 당사자)	- 커리큘럼 개발 회의비 110천원×6회×5명	3,300	-	3,300	
	- 교육 강사비 270천원×10명	6,700	-	6,700	
	- 대관비 400천원×6회 - 기타 진행비 1,600천원				

3-11. 사업명 : 인권지킴이단 네트워크(소모임)

(□ 기존사업 ■ 신규사업)

1. 목적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종사자들이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보 및 이용자 지원방안 공유, 발전적 대안 모색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더 나아가 시설의 인권적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고 제작하여 인권지킴이단 발전에 기여함
2. 대상 : 1개 지역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담당종사자
3. 실행시기 : 2014년 4월 ~ 12월
4. 담당자 : 추후논의
5. 세부 사업내용
  - 1) 인권지킴이단 종사자들을 소모임으로 구성하여 연 8회 소모임 회의 진행
  - 2) 소모임을 통해 각 시설의 이용자 인권 보장 방안 및 각종 의사소통, 교육 자료 등을 공유하여 자료화
6. 소요예산 : 11,5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산출근거	소요예산			비고
		보조금	자부담	합계	
합계		11,500	-	11,500	
인권지킴이단 네트워크	- 회의비 80천원×8회×15명 - 자문비 100천원×3회 - 기타 진행비 1600천원	11,500	-	11,500	

3-12. 사업명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컨설팅 지원

(□ 기존사업 ■ 신규사업)

1. 목적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에 전문적 컨설팅과 자문을 밀착 제공함으로써 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 딜레마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고 딜레마적 상황이 인권침해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함.
2. 대상 : 1개 지역 장애인거주시설 10개소
3. 실행시기 : 2014년 3월 ~ 12월
4. 담당자 : 추후논의
5. 세부 사업내용
  - 1) 인권 관련 교수, 단체 활동가, 시설 관계자 등으로 전문 자문위원단 구성
  - 2) 자문위원단을 신청 시설에 파견하여 인권지킴이단 운영, 이용자 인권 관련 사례 등에 대한 컨설팅 및 수퍼비전 등을 직접 지원
  - 3) 개별 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필요한 외부인사 회의비(교통비) 등 지원
6. 소요예산 : 42,9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산출근거	소요예산			비고
		보조금	자부담	합계	
합계		42,900	-	42,900	
인권지킴이단 컨설팅	- 컨설팅 회의비 100천원×3명×4회 - 기타 진행비 100천원	1,300	-	1,300	
	- 자문비 200천원×10개소×4회×3명 - 기타 진행비 1600천원	25,600	-	25,600	
	- 개별 시설 인권지킴이단운영비 지원 40개소×2회×200천원	16,000	-	16,000	

3-13. 사업명 : 인권지킴이단 지원 시범사업 결과 발표회

(□ 기존사업 ■ 신규사업)

1. 목적 :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한 인권지킴이단 지원사업 결과 발표회를 통해 대중에게 지역별 인권지킴이지원센터의 설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함.
2.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관심 있는 사람
3. 실행시기 : 2014년 11월 ~ 12월
4. 담당자 : 추후논의
5. 세부 사업내용
  - 1) '인권지킴이단 장애 당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인권지킴이단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자료, 컨설팅 지원 결과물 자료집화
  - 2) 1년간의 사업 진행 결과에 대해 각 사업 참가자 대표의 발표
6. 소요예산 : 3,5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산출근거	소요예산			비고
		보조금	자부담	합계	
합계		3,500	-	3,500	
시범사업 결과 발표회	- 발표비 150천원×5명 - 대관비 300천원 - 자료집 15천원×100부 - 진행(식사, 다과) 10천원×80명 - 기타 150천원	3,500	-	3,500	

**목표 4. 시설 정책·제도 변화의 적극적 주도**

4-1. 사업명 : 장애인복지시설 지원현황 모니터링(■ 기존사업 □ 신규사업)

1. 목적 : 지역별 장애인복지시설 정책 및 지원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발전방향 모색

2. 대상 : 전국 16개 시도별 모니터요원

3. 실행시기 : 연중 2회(5월, 10월)

4. 담당자 : 정책지원실

5. 세부 사업내용

- 1) 전국 16개 시도별 모니터요원에게 연중 2회 설문조사 실시(세종시는 충청남도예 포함)
- 2) 설문결과를 토대로 전국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인건비, 운영비 등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대비 시도별 지원현황 파악
- 3) 장애인복지사업 지방이양(2005년) 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기준' 미준수로 떨어진 시도별 지원편차 비교
- 4) 결과보고서 작성 및 배포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중앙환원 대비 및 지원기준 상향평준화에 근거자료로 활용

6. 소요예산 : 5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산출근거	소요예산			비고
		보조금	자부담	합계	
합계		0	500	500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현황 모니터링	- 모니터요원 수당 또는 자료정리 유급봉사자 25,000원×16명 또는 50,000원×8일	0	400	400	
	- 결과보고서 제작비 100,000원	0	100	100	

4-2. 사업명 : 주간정책동향 작성

(■ 기존사업 □ 신규사업)

1. 목적 : 장애인복지 관련 정부·국회 정책동향, 언론보도 내용 등을 모니터링하여 장애인복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2. 대상 : 회원시설 및 장애인복지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

3. 실행시기 : 연중 52회(주1회 제작 및 배포)

4. 담당자 : 정책지원실

5. 세부 사업내용

- 1) 국회 및 보건복지부 등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언론사 홈페이지 확인
- 2) 공지사항, 보도자료 중심으로 새로운 소식 및 링크 취합
- 3) IT업체에 주간정책동향 웹페이지 형식으로 제작의뢰
- 4) 협회 홈페이지 업로드 및 회원시설 메일발송

6. 소요예산 : 3,0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산출근거	소요예산			비고
		보조금	자부담	합계	
합계		0	3,000	3,000	
주간정책 동향 작성	- 제작 및 유지보수비 3,000,000원	0	3,000	3,000	

4-3. 사업명 : 17개 시·도 지역별 정책간담회

(■ 기존사업 □ 신규사업)

1. 목적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자 간 일원화된 장애인복지정책 시행 및 적용으로 업무불편 최소화 및 장애인복지정책 발전 도모
2. 대상 : 장애인복지 관련 담당 공무원 및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3. 실행시기 : 연중 8회
4. 담당자 : 정책지원실
5. 세부 사업내용
  - 1) 강의주제 결정 및 강사섭외, 일정확인, 장소예약
  - 2) 16개 시도협회와 연계하여 인력 및 사업수행관련 지원 협조
  - 3) 시도별 정책세미나 개최하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간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정보공유 및 소통의 장 마련
  - 4) 사업평가 및 결과정리

6. 소요예산 : 20,0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산출근거	소요예산			비고
		보조금	자부담	합계	
합계		10,000	10,000	20,000	
17개 시·도 지역별 정책간담회	- 강사비 및 원고료 500,000원×8회	2,000	2,000	4,000	
	- 대관료 및 부대시설 1,000,000원×8회	4,000	4,000	8,000	
	- 자료인쇄 및 현수막 500,000원×8회	2,000	2,000	4,000	
	- 다과비 및 진행경비 500,000원×8회	2,000	2,000	4,000	

4-4. 사업명 : 장애인복지정책세미나

(■ 기존사업 □ 신규사업)

1. 목적 :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의 정비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역할 재정립과 회원시설의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의 장 필요
2. 대상 : 전국 회원시설
3. 실행시기 : 9월 중
4. 담당자 : 정책지원실
5. 세부 사업내용
  - 1) 세미나주제 선정 및 발제, 토론자 섭외 및 사업홍보
  - 2) 2011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된 후, 3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장 중점인 장애인복지시설 소규모화가 정부예산 부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3) 장애인복지시설 소규모화에 대한 현실적 모순과 정책의 시행착오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의 장 마련

4) 정부, 실천현장, 학계, 전문가 그룹이 토론의 장을 통한 합리적 대안 모색

6. 소요예산 : 6,0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산출근거	소요예산	비고
합계		6,000	
장애인복지정책세미나	- 대관료 등	2,000	
	- 강사비 및 원고료	1,500	
	- 자료집 제작 및 진행경비	2,500	

4-5. 사업명 : 한국사회복지법인의 역사와 사회적 기여에 관한 연구(예정)

(□ 기존사업 ■ 신규사업)

1. 목적 :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부분을 찾아내고, 향후 장애인복지시설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

2.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3. 실행시기 : 6개월(5월~10월)

4. 담당자 : 정책지원실

5. 세부 사업내용

- 1) 책임연구원 선정 및 연구용역
- 2) 문헌조사, FGI, 전문가자문 등
- 3) 연구결과물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활용
- 4)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의 역할재정립 및 정책건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6. 소요예산 : 20,0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산출근거	소요예산	비고
합계		20,000	
한국사회복지법인의 역사와 사회적 기여에 관한 연구	- 연구용역비	20,000	

4-6. 사업명 : SRV 모델개발 및 사례집 보급 (예정)

(□ 기존사업 ■ 신규사업)

1. 목적 :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장애인당사자의 선택과 결정권을 기반으로 하는 당사자 주의로 전환되었고, 또한 장애인의 사회적역할가치(SRV)는 권한부여와 역할제공에 따라 가치가 부여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시설이용자에 대한 한국적 모델을 개발하고 시설에 적용할 필요성 증대

2. 대상 :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SRV 적용 사례

3. 실행시기 : 6개월(5월 ~ 10월)

4. 담당자 : 정책지원실

5. 세부 사업내용

- 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시도되고 있는 SRV에 대해서 발굴하고, 전국 시설로 보급할 수 있는 모델 개발
- 2) 개발된 모델을 사례집으로 엮어 시설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보급
- 3) SRV모델 개발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16개 시·도를 권역으로 하여 사례 발굴
- 4) 발굴된 사례를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에 적용하고, 보급가능 하도록 모델화 작업과 학계 등 전문가그룹을 통한 자문

6. 소요예산 : 11,0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산출근거	소요예산	비고
합계		11,000	
SRV모델개발 및 사례집 보급	- 회의비 및 자문비	2,000	
	- TF팀 운영비	2,000	
	- 진행경비 1,000천원, 감수비 등 1,000천원	2,000	
	- 사례집 제작비 500부×10,000원	5,000	

4-7. 사업명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 기존사업 □ 신규사업)

1. 목적 :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 실태를 자체 평가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
2. 대상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
3. 실행시기 : 연중 1회
4. 담당자 : 정책지원실
5. 세부 사업내용
  - 1) 본 협회 회원 가입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2014.01.22.~01.29 조사시행)
  - 2) 조사자료 입력 및 분석
  - 3) 결과보고서 작성
  - 4)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자료제공
6. 소요예산 : 없음.

4-8. 사업명 : 장애인복지 관련 법안 및 지침개정

(■ 기존사업 □ 신규사업)

1. 목적 : 장애인복지환경의 빠른 변화 속에서 장애인당사자의 권리에 기초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정책적·실천적 방안에 대한 정책건의 필요
2. 대상 : 정부, 국회 등
3. 실행시기 : 수시
4. 담당자 : 정책지원실
5. 세부 사업내용
  - 1)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정책개발
  -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위한 개정안 마련 및 정부와 협의
  - 3) 국회 등을 통한 법, 지침 등의 개정 추진
6. 소요예산 : 10,0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산출근거	소요예산	비고
합계		10,000	
장애인복지 관련 법안 및 지침개정	- 업무추진비 10월×1,000	10,000	

**목표 5. 사회복지직능단체에서의 중추적 역할**

5-1. 사업명 : 사회복지직능단체와의 협력 및 공동추진사업

(□ 기존사업 ■ 신규사업)

1. 목적 : 사회복지현장의 변화를 위해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직능단체들간의 유기적 관계 및 협조가 중요함에 따라 본 협회가 이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2. 대상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직능단체
3. 실행시기 : 수시
4. 담당자 : 정책지원실
5. 세부 사업내용
  - 1)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직능단체간의 연계 및 관계 설정
  - 2) 사회복지현장의 주요 이슈(법인설립자에 대한 대책, 근로기준법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여건 마련 등)에 대한 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
6. 소요예산 : 없음

**목표 6. 적극적 자원개발에 따른 회원시설 지원**

6-1. 사업명 :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기존사업 □ 신규사업)

1. 목적 : 체계적인 후원자 개발 및 관리를 통한 후원자원 효과 및 개발 증대
2. 대상 : 후원자, 이용자, 장애인복지시설
3. 실행시기 : 연중
4. 담당자 : 기획실 자원개발
5. 세부 사업내용
  - 1) 후원자 개발 및 관리를 통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장애인에 대한 결연후원금 분기별 지원
  - 2) 후원자와 이용장애인 직접 연결을 위한 결연후원사업 이관작업 실시
  - 3) 전체 후원자를 대상으로 후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서신 발송
  - 4) 결연후원자-수원자간 서신 왕래를 통한 관계 형성 지원
6. 소요예산 : 70,0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산출근거	소요예산			비고
		보조금	자부담	합계	
합계		5,000	65,000	70,000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후원개발 및 관리사업	5,000	15,000	20,000	
	- 결연후원금 지급 12,500천원×4회	-	50,000	50,000	

6-2. 사업명 : 장애인복지시설 맞춤형 자원연계

(■ 기존사업 □ 신규사업)

1. 목적 : 자원개발을 통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체계 강화 및 이용장애인의 복지증진

2. 대상 : 개인 및 기업 사회공헌팀, 이용자, 장애인복지시설

3. 실행시기 : 연중

4. 담당자 : 기획실 자원개발

5. 세부 사업내용

- 1) 장애인복지시설 및 이용장애인 욕구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자원 연계
- 2) 기 진행중인 기업사회공헌팀 및 새로운 기업처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예산 확보 및 사업 지속 운영 추구

6. 소요예산 : 901,0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산출근거	소요예산			비고
		보조금	자부담	합계	
합계		-	901,000	901,000	
장애인복지시설 맞춤형 자원연계	- 외부지원사업 확보	-	901,000	901,000	

6-3. 사업명 : 기업 사회공헌 지원사업 운영사례 발표회

(■ 기존사업 □ 신규사업)

1. 목적 : 발표회를 통한 기업 사회공헌 지원사업의 효과성 홍보 및 사업 지속성 확보

2. 대상 : 기업 사회공헌팀, 이용자, 장애인복지시설

3. 실행시기 : 10월

4. 담당자 : 기획실 자원개발

5. 세부 사업내용

- 1) 기업 사회공헌 지원사업 효과성 홍보 및 사업 지속성을 위한 사례발표회 진행

6. 소요예산 : 5,0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산출근거	소요예산			비고
		보조금	자부담	합계	
합계		5,000	-	5,000	
기업사회공헌 운영사례 발표회	- 발표회 제반비용(대관료, 강사비, 전시대, 자료집 등)	5,000	-	5,000	

**목표 7.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무국 운영**

7-1. 사업명 : 총회 및 이사회 운영 (■ 기존사업 □ 신규사업)

1. 목적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개선과 발전 방안에 대한 생산적인 제안을 모색하고 협회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와 주요 현안을 처리하며 회원간의 의견과 정보교류를 위한
2. 대상 : 협회 회원시설(협회 임원)
3. 실행시기 : 정기총회(1회, 2월 이내), 임시총회(회장 및 임원 요청 시), 정기이사회(1회, 1월), 임시이사회(회장 및 임원 요청 시)
4. 담당자 : 기획실 총무회계
5. 세부진행내용
  - 1) 총회를 통해 사업계획 및 예·결산, 정관변경 또는 개폐, 법인 해산, 재산처분 등의 사항에 대해 의결함
  - 2) 이사회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 예·결산 심의, 총회 위임사항, 제규정 제정 또는 개폐, 회원 가입 탈퇴, 기본재산 유지, 고문 및 자문위원 추대, 지방협회 운영,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해 의결함

6. 소요예산 : 10,0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산출근거	소요예산			비고
		보조금	자부담	합계	
합계		-	10,000	10,000	
총회 및 이사회 운영	- 정기총회 진행경비	-	6,000	6,000	
	- 정기이사회 진행경비	-	4,000	4,000	

7-2. 사업명 : 사무국 운영 (■ 기존사업 □ 신규사업)

1. 목적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법인 및 사무국 운영을 통해 사무국 운영의 안정성 도모 및 시도협회와의 연대 강화, 회원의 체계적 지원 도모
2. 대상 : 협회 사무국, 시도협회, 회원시설
3. 실행시기 : 연중
4. 담당자 : 기획실 총무회계
5. 세부진행내용
  - 1) 회의 진행 : 사무국 회의, 인사위원회, 정책위원회, 법인감사, 결산 보고, 부회장단 정기회의
  - 2) 협회의 중·장기적 계획 및 세부 실행방안을 수립 : 예산수립 및 집행
  - 3) 법인관리 : 법인임원·시도협회 사무국·법인등기 관리, 직인 및 법인인감 관리
  - 4) 사무국 운영업무 : 인사 및 복무관리, 노무관리, 사무국 직원 교육연수 및 복리후생, 업무효율화 사업, 문서 및 서무관리, 자산관리, 회원시설 포상, 사무국 업무지원, 대외기관 협력사업
  - 5) 회계업무 : 예산수립 및 집행, 추가경정예산관리, 국고보조금 관리, 직원 퇴직금 관리, 예산집행 시제보고 및 관리, 직원 인건비 관리, 직원 사회보험 관리, 세무관리, 법인카드 관리, 결산 보고
6. 소요예산 : 예산서 참조

7-3. 사업명 : 회원관리사업 (■ 기존사업 □ 신규사업)

1. 목적 : 회원정보관리, 회비관리, 회원시설 행사지원을 통한 회원동향 파악 및 효율적인 회원지원체계 구축
2. 대상 : 협회 회원시설
3. 실행시기 : 연중
4. 담당자 : 기획실 총무회계
5. 세부진행내용
  - 1) 국내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파악 및 회원가입 안내
  - 2) 회원시설 행사 및 경조사 지원
  - 3) 회원수첩 제작을 통한 회원정보 제공 및 회원유대관계 구축
  - 4)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각종 지침 제작 총회 시 배포
  - 5) 전산시스템을 통한 명확한 회비관리
6. 소요예산 : 10,0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산출근거	소요예산			비고
		보조금	자부담	합계	
합계		-	10,000	10,000	
회원관리사업	- 회원관리비 (시설행사, 경조사 지원, 기타)	-	7,000	7,000	
	- 회원수첩 제작비	-	3,000	3,000	

7-4. 사업명 : 16개 시도협회 연계 강화 (□ 기존사업 ■ 신규사업)

1. 목적 : 시도협회 및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회와의 원활한 업무협력을 통한 회원시설 지원을 위한 다양한 문제해결 방안 모색
2. 대상 : 16개 시도협회
3. 실행시기 : 연중
4. 담당자 : 기획실 총무회계
5. 세부진행내용
  - 1) 시도협회 사무국 분기별 간담회(연수회) 진행
  - 2) 시도협회 운영비 지원
  - 3) 시도협회 행사 지원
6. 소요예산 : 14,0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산출근거	소요예산			비고
		보조금	자부담	합계	
합계		-	14,000	14,000	
16개 시도협회 연계 강화	- 시도협회 간담회 진행경비(3회)	-	5,000	5,000	
	- 시도협회 연수회(1회)	-	2,400	2,400	
	- 시도협회 운영지원비 (11개소×600천원)	-	6,600	6,600	



2014년도 예산(안)

## 2014년도 예산총칙

제1조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2014년도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이십삼억오천팔백만원( 2,358,000,000)으로 한다.

제2조 예산의 전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산회계규정에 의거 “관”간의 전용은 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내 “항”간의 전용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목 상호간의 전용은 기획실장이 협조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과목의 변경 및 추가에 관한 사항은 회장의 방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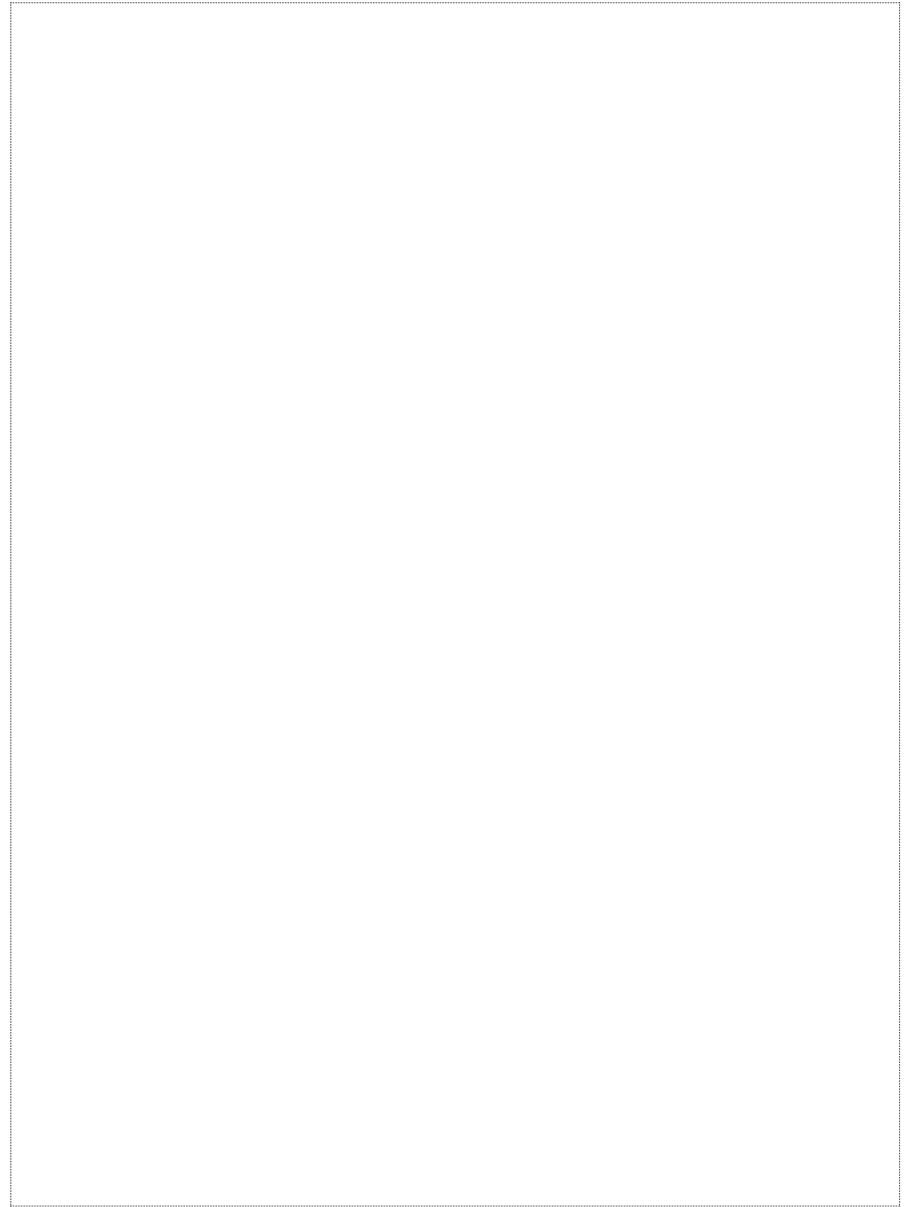
제3조 본 예산을 집행하는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변동이 필요한 경우의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에 그 의결권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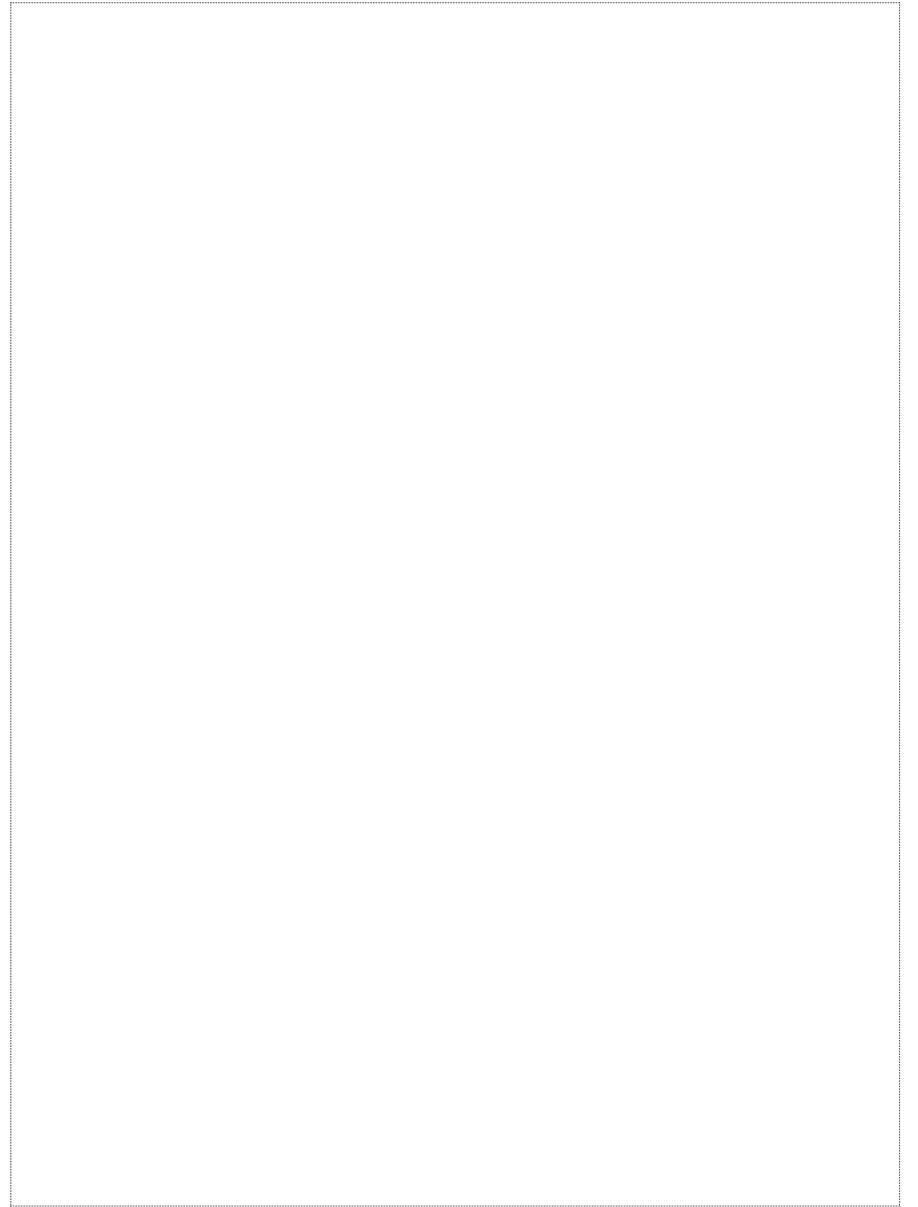
제4조 예산 집행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외부로부터의 차입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법인회계는 회장의 방침을 받아 일시차입 및 그 금액을 상환할 수 있으며, 결산시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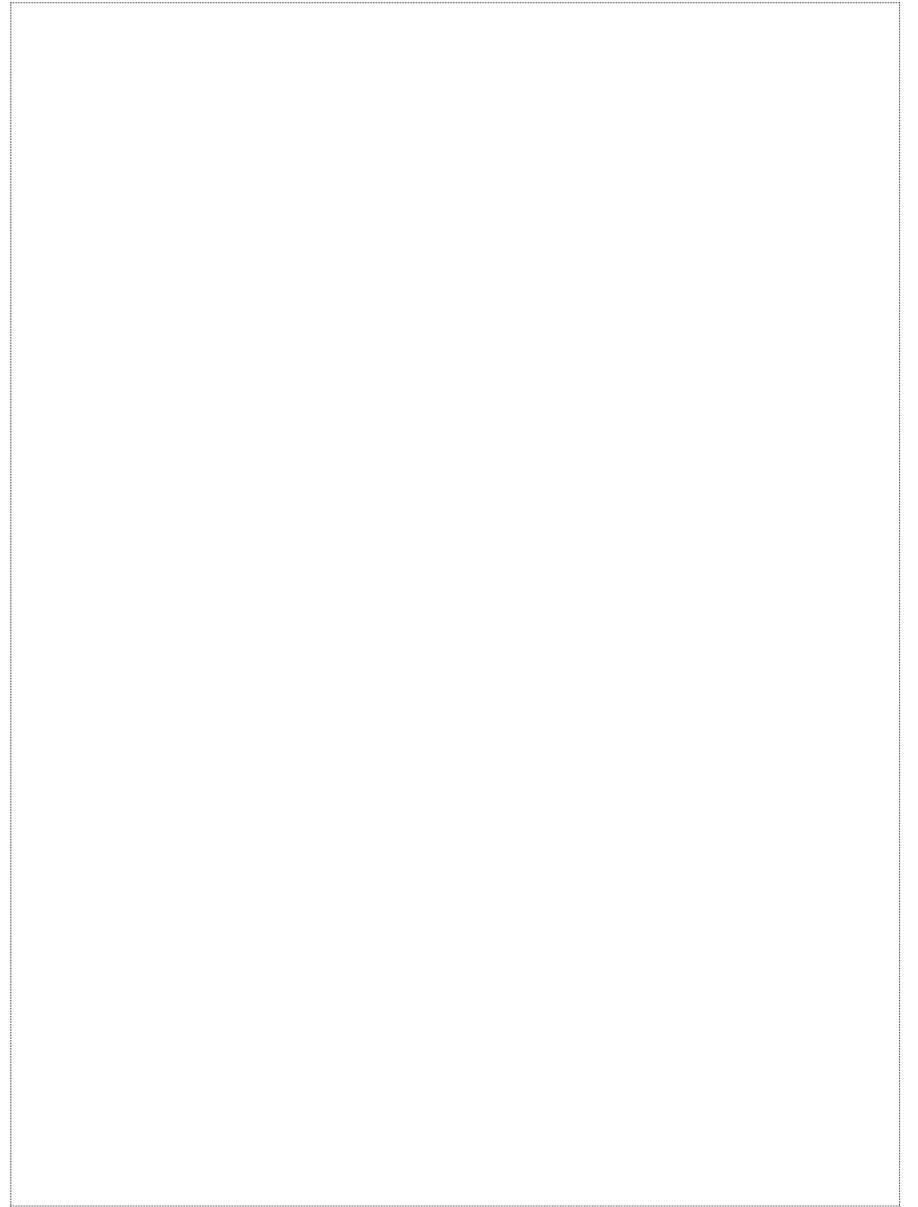
제5조 예산 성립후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수입되는 지원금, 목적지정, 기부금은 예산에 결정된 것으로 간주 처리되고, 이사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6조 기타 회계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연도 변경된 과목으로 승인된 것으로 하며, 그 외의 예산총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규정 및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 - 2014년 예산







의안번호	제 3 호	의 결 사 항
의결년월일	2014년도 정기총회 2012. 2. 27.	

제3호 의안 : 정관 개정(안)에 관한 사항

제출자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임 성 현
제출년월일	2012. 2. 27.

### 제 3 호 의안 :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 심의 의결 건

#### □ 의결주문

- 본회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정관 개정에 대한 심의·의결할 것을 주문함.

#### □ 제안이유

- 최근 장애인복지시설의 윤리적 운영과 이용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있어 본회 회원시설들의 자정기능 강화를 위한 윤리강령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게 됨.
- 또한 정관 및 제규정의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가 요구되는 규정 등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게 됨.

#### □ 주요내용

- 정관 개정안 : 제6조의2(회원의 의무), 제8조(회원자격의 정지 및 상실), 제11조(임원의 직무), 제12조(임원의 선출), 제14조(임원의 임기), 제15조의3(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제16조(명예회장·고문 및 자문위원),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제23조(이사회 심의·의결), 제28조의3(이사회회의록), 제29조의2(윤리인권위원회)

#### □ 의결사항

- 본회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정관 개정안에 대한 심의와 제규정에 관한 사항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붙임 : 정관 개정(안)

### 정관 개정(안)

#### 1. 개정 사유

- 1)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해지고,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윤리적 운영과 이용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 등에 대하여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 보다 강해지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해 인권지킴이단 조직에 대한 법적 의무화가 추진됨. 이에 정관 제6조의2 제3항에 본회는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관련내용이 없음. 따라서 회원시설에 대한 협회에서의 자정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에 협회 내 윤리강령과 윤리인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 2) 회장 유고시 업무대행자 관련 규정이 없어 업무대행자와 잔여임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회원자격의 정지 및 상실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기술하며, 이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정관과 제규정이 상호 일치되지 않은 조항에 대한 개정을 시행코자 함.
- 3) 또한 등기절차 변경에 따라 임원 및 분사무소 등기시 총회 참석인원의 과반수 인원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등이 필요한 것을 간소화하기 위해 임원 선출 및 지방협회 설치에 대한 의결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변경함.

#### 2. 개정안 내용

##### □ 제6조2(회원의 의무)

- 윤리강령을 별지와 같이 신설함.

##### □ 제8조(회원자격의 정지 및 상실)

- 회원자격의 정지 및 상실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기술함.

##### □ 제11조(임원의 직무)

- 변호사 의견을 받아 '궐위시'단어를 포함함.

##### □ 제12조(임원의 선출)

- 등기절차변경에 따라 법무사 의견에 따라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제42조(선출)의 내용을 정관에 삽입함.

- 제14조(임원의 임기)
  - 변호사 의견을 받아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하며, 임기는 회장의 잔여임기로 함.
- 제15조의3(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 변호사 의견에 따라 본문 조항이 변경되어 수정함.
- 제16조(명예회장·고문 및 자문위원)
  - 변호사 의견에 따라 임기기간을 명확히 수정함.
-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및 제23조 (이사회 심의·의결)
  - 등기절차변경에 따라 지방협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에서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이전함.
- 제28조의3(이사회회의록)
  - 법무사 의견에 따라 회의록 기명날인의 절차를 간소화함.
- 제29조의2(윤리인권위원회)
  - 윤리인권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붙임 정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정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회원의 의무) ① ~ ② 생략 ③ 회원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6조의2(회원의 의무) ① ~ ② 생략 ③ 회원은 <b>본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는 별지 2) 와 같다.</b> ④ 생략
제8조(회원자격의 정지 및 상실) ① 1~2 생략 3. 신설  4. 생략 ② 1~2 생략 3. 신설  4. 생략	제8조(회원자격의 정지 및 상실) ① 1~2 현행과 같음. 3. <b>제6조의2에 따른 회비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를 정지 또는 임시총회일 기준으로 5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단, 사무국은 회원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안을 해당 회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b> 4. 현행과 같음. ② 1~2 현행과 같음. 3. <b>제6조의2에 따른 회비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를 정지 또는 임시총회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단, 사무국은 회원자격상실에 해당하는 사안을 해당 회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b> 4. 현행과 같음.
제11조(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되, 부회장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b>유고 또는 결위시</b> 에는 수석부회장·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되, 부회장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① ~ ③ 생략 신설	제12조(임원의 선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b>제11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직무대행자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b> ⑤ <b>본회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임명한다.</b>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 ② 생략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생략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b>보선된 임원과 제11조 제2호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b> ④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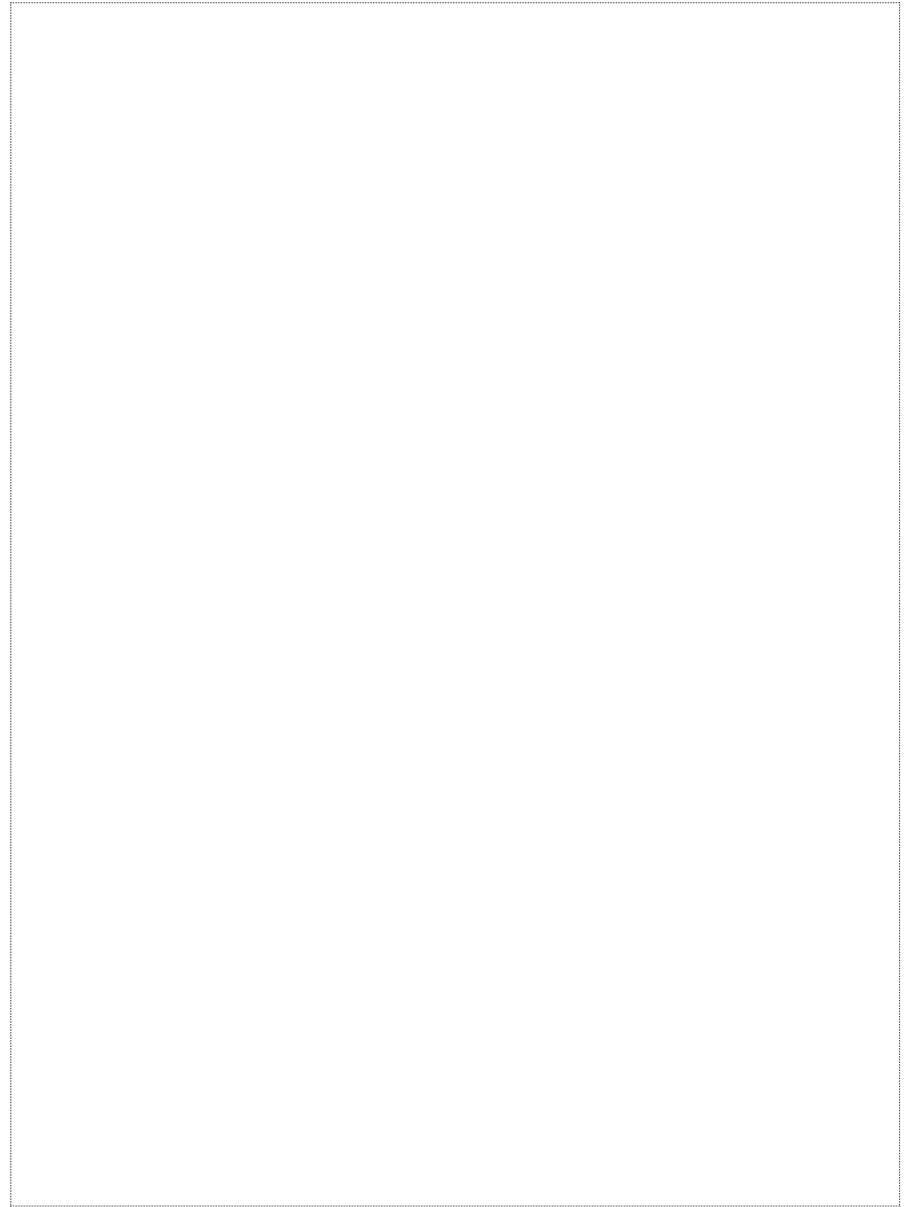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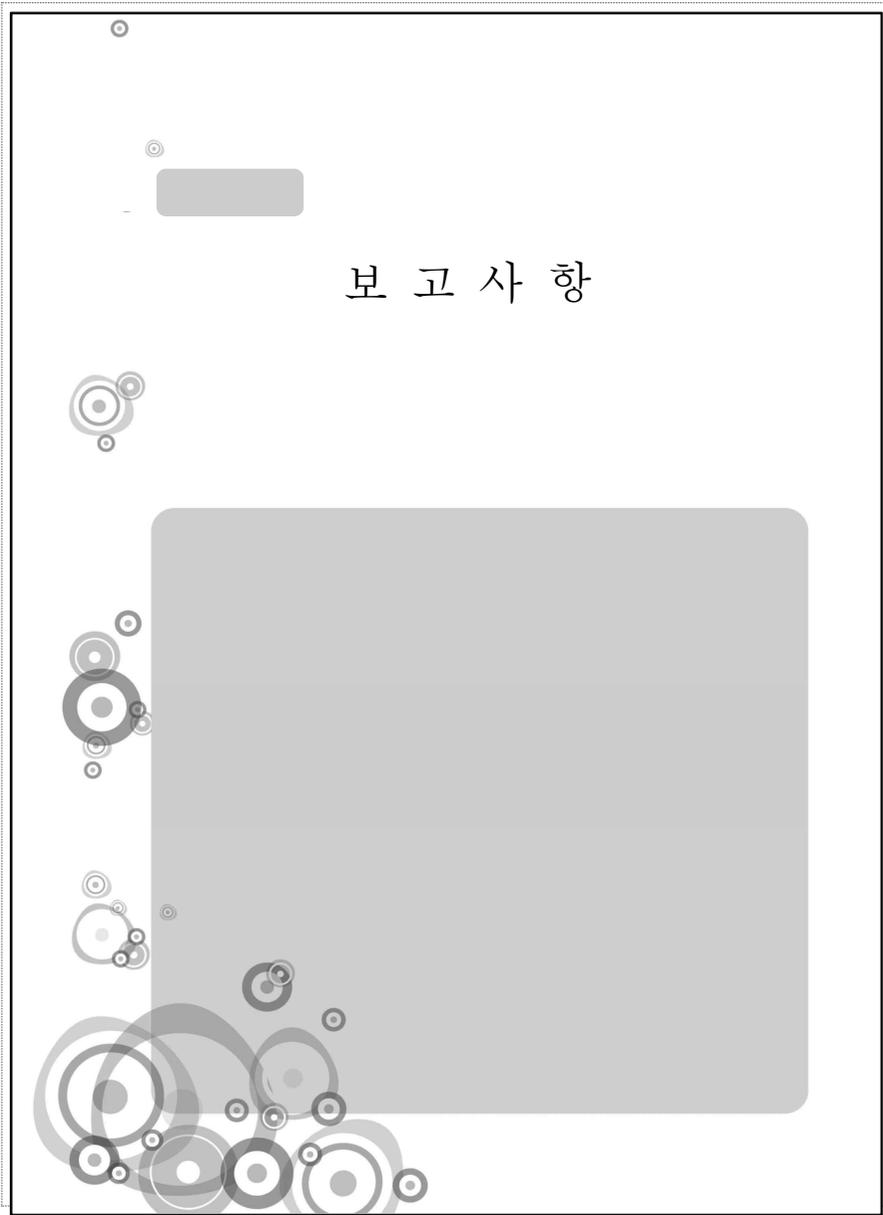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3(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① 생략 ② 본회의 임원이 제15조의1의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어 ~~	제15조의3(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① 생략 ② 본회의 임원이 <b>제15조의2</b> 의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어 ~~
제16조(명예회장·고문 및 자문위원) ① ~ ③ 생략 ④ 명예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 현 회장단 임기 만료와 같다.	제16조(명예회장·고문 및 자문위원) ① ~ ③ 생략 ④ 명예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 <b>회장의 임기와 같다.</b>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 생략 5의2. 지방협회 및 해외지회, 산하단체 등의 가입 또는 설치에 관한 사항 5의3~6. 생략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 생략 <b>5의2. 삭제</b> 5의3~6. 생략
제23조(이사회 심의·의결사항) 1~10. 생략 신설 11. 생략	제23조(이사회 심의·의결사항) 1~10. 생략 <b>10의2. 지방협회 및 해외지회, 산하단체 등의 가입 또는 설치에 관한 사항</b> 11. 생략
제28조의3(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한 후 본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의3(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과 <b>출석한 이사중 지명받은 5명의 이사가</b> 기명날인한 후 본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b>제29조의2(윤리인권위원회)</b> ① 회원시설의 윤리적 운영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거주장애인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하여 윤리인권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제6조의2 제3항의 윤리강령 위반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1. 시설 이용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반 사항 2. 시설직원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반 사항 3. 반윤리적, 반인권적 사례 및 비리사항 4. 위원회가 인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사건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9인 이내로 하며, 정책조정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위촉한다. ⑤ 정관 제7조 및 회원규정도도 불구하고 동 위원회의 벌칙 결정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즉시 효력을 가진다. ⑥ 위원회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둔다.

[별지 1]

**윤리강령**

- 회원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고, 이들이 삶의 주체로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회원은 장애인의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 연령, 학력, 성별, 성적 지향, 정치적 성향 등의 차이에 따른 하등의 차별없이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한다.
- 회원은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존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정치권, 법질차적 권리, 문화권, 연대권 등 모든 인권영역에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회원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제한할 시 인권적, 법적, 의료적인 타당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회원은 장애인이 시설 안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다양한 인적·물적 지원경로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회원은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시설내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야 한다.
- 회원은 장애인의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최대한의 지원 노력을 해야 한다.
- 회원은 장애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이 전문성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회원은 직원의 장애 유무, 연령, 학력, 성별, 성적 지향, 정치적 성향 등의 차이에 따른 차별없이 그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 회원은 직원의 인권감수성,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1. 회원은 직원의 업무 특성이 돌봄, 대인지원 임을 감안하여 이들이 소진되지 않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무지원을 해야 한다.
12. 회원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윤리적·사회적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하며, 사회정의 실현과 장애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
13. 회원은 장애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14. 회원은 윤리적·법적으로 타당한 방법으로 시설을 운영하며, 부정한 이득 도모, 부당한 영향력 행사,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15. 회원은 일체의 금품, 선물, 향응, 사례, 편의를 청하거나 받지 않으며, 반부패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한다.
16. 회원은 본회와 지방협회의 정관과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원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7. 협회는 회원이 인권적·윤리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윤리인권 위원회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며, 회원은 윤리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결정·권고사항을 존중하여 실행해야 한다.



## 제규정 변경사항 보고

### □ 제규정 변경 보고

- 제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의결은 본회 정관 제23조에 의거 이사회의 결정사항임.
- 이에 지난 '2014. 2. 11. 정기이사회'에서 관련 제규정의 개정내용이 가결되었으나, 전체 회원시설에게 본 내용을 보고하며 공지하고자 함.

### □ 진행경과

- 2013. 4. 11. 13-02 임시이사회에서 정관 및 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개진
- 2013. 9. 4. 정관개정소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 2013. 9. 25. 정관개정소위원회 2차 회의
- 2013.10. 8. 정관개정소위원회 3차 회의
- 2013.12. 18. 정관개정소위원회 4차 회의
- 2014. 2. 11. 정관개정소위원회 5차 회의
- 2014. 2. 11. 2014년 정기이사회
- 2014. 2. 18. 정책조정위원회의

### □ 개정안 내용

- 회원규정
  - 제5조(회원증의 반납) : 정관 제5조제4항에 따라 탈퇴 시에는 탈퇴원을 제출하여야 하나, 회원규정에 탈퇴원이 제시되지 않아 이를 별지에 삽입함.
  - 제7조(회원의 징계) : 회원의 징계의 사항과 방법 등의 내용이 없어 이를 신설하여 삽입함.
  - 제8조(회원의 포상 및 포상 추천) : 포상에 대한 대상선정과 선정절차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삽입함.

### ○ 회비규정

- 현재 협회비는 지난 2009년 12차 개정시 조정된 금액으로 5년간 변동이 없었음.
- 이에 별표 1에 제시된 회비를 장애인생활시설 15,000원 ~ 30,000원, 단기거주시설 10,000원, 공동생활가정 5,000원, 주간보호시설 10,000원, 개인신고시설 10,000원 ~20,000원 등으로 인상하고자 함.

### ○ 시도협회규정

- 제17조의2(지도감독) : 지방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에 대한 시정조치 조항을 삽입함.

- 붙임 1. 회원규정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및 탈퇴원  
2. 회비규정 개정 별표 1  
3. 시도협회규정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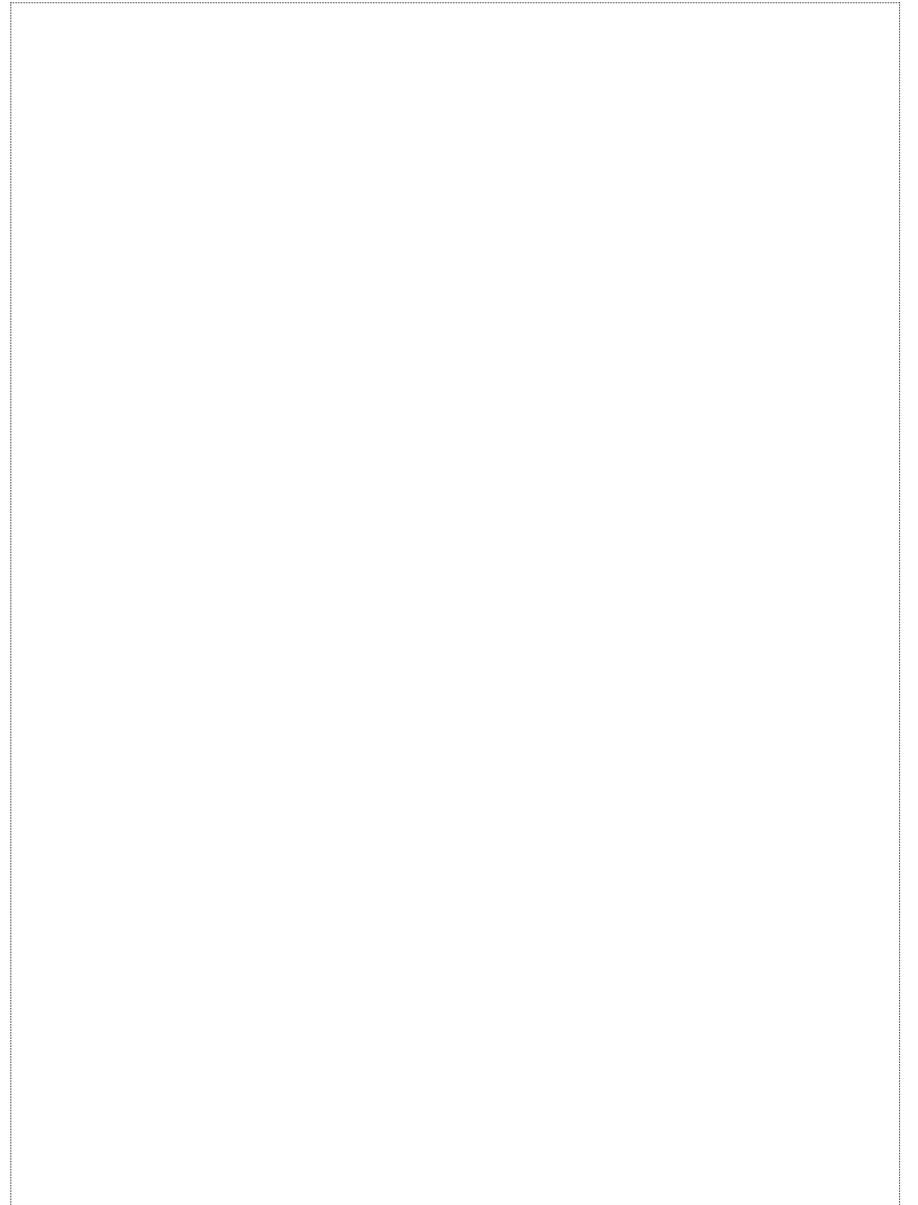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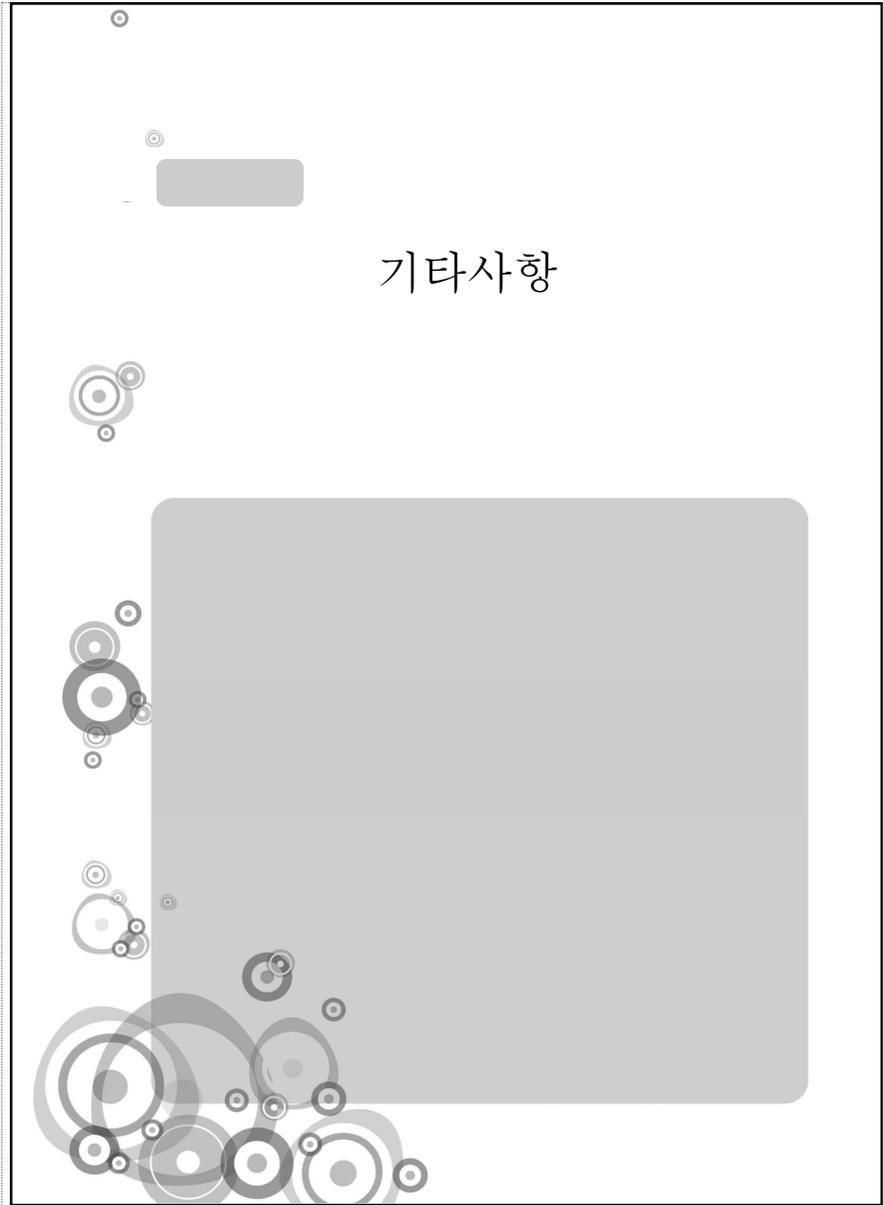
[별표1]

### 회비규정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규모	현행	개정후
이용인원 30인 이하	85,000원	100,000원
31 ~ 70인 이하	100,000원	120,000원
71~100인 이하	120,000원	140,000원
101~150인 이하	140,000원	160,000원
151인 이상	160,000원	190,000원
단기거주시설	20,000원	30,000원
공동생활가정	5,000원	10,000원
2. 지역사회재활시설		
시설유형	현행	개정후
주간보호시설	20,000	30,000원
4. 법인대표이사 (신규 가입시)		
시설장 겸임하지 않는 자	연 200,000원	
5. 개인신고시설(2008.4.1.신설)		
시설규모	현행	개정후
이용인원 30인 미만	10,000원	20,000원
31~50인 이하	20,000원	40,000원
공동생활가정(2010.1.20 신설)	5,000원	10,000원
6. 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2010.1.20.신설)		
시설유형	현행	개정후
모두	5,000원	10,000원

### 지방협회 규정 개정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7조의2(지도·감독)</p> <p>본회 이사회는 지방협회 운영상의 애로사항과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해 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지도·감독 시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p>	<p>제17조의2 (지도·감독)</p> <p>①본회 이사회는 지방협회 운영상의 애로사항과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해 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지도·감독을 실시한다.</p> <p>②정기지도·감독 시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p> <p>③지도·감독을 통해 문제가 발견된 지방협회에 대하여 중앙협회는 시정 명령의 권한을 가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협회의 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재할 수 있다.</p>



## 2014년도 정기총회

- 발행인 : 임 성 현
- 편집인 : 기 획 실
- 발행처 :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빌딩 903호
- 전 화 : 02) 718 - 9363 ~ 5
- 전 송 : 02) 718 - 9360 / 9366
- 홈페이지: [www.kawid.or.kr](http://www.kawid.or.kr)